

발 간 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는 국방 유관기관 및 방산업체의 계약 및 원가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산 계약·원가 실무에서 발생하였던 회계질의 및 회신 사례를 모아 『방산 계약·원가 회계질의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위산업 시장은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민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절감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지만 방산업체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요자로서의 정부와 공급자로서의 기업이 국방조달 환경을 이해하고 상호신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 및 원가계산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방위산업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회는 2001년 「방산 계약·원가 회계질의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관련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만,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방위산업 관련 각종 법규와 훈령이 제·개정되는 등 방산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사례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회는 과거의 사례와 함께 2001년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회계질의 및 회신 내용을 차례별, 분야별로 묶어 한권의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의 미흡한 부분이나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면 앞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계약 및 원가관련 실무자의 업무수행과 제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 7. 15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류 우 식

차 례 (연도별)

▲ '64 ~ '69

- 지체상금 징수 요령 • 21
- 입찰금액 착오기재시 입찰의 유효여부 • 21
-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 • 22
-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 • 22

▲ '70 ~ '79

- 비밀수의계약에 대한 확인서 첨부 • 23
- 사후원가계산제도 적용 • 24
- 수송운임단가 인상 • 25
- FMS 물자수송에 따른 보험료 구상액 • 26
- 주요부품 수입조립시의 제잡비율 • 26
- 연간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 27
- 방산화 비율을 매년 상승시키는 기자재의 개발시제품 간주여부 • 28

▲ '80 ~ '89

- 군수물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 29
- 대공표적기 불량률 적용 • 30
- 군수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30
- 정상원가계산시 일부 추정계산의 가능여부 • 31
- 개산원가계산시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32
- 관급품 수리수선비 인정여부 • 32
- 보조금으로 들어온 장비, 부대비용 인정여부 • 33
- 기술개발비 계상시 계약전 발생비용 인정여부 • 33

- 사전표준원가 작성시 재료비 산정방법 • 34
- 수입품부대비용 계산시 실발생 부대비용 원가인정 여부 • 34
- 사후원가계산시 비목추가 확정 가능여부 • 35
- 사후원가계산시 누락부분의 추가인정 가능여부 • 35
- 분할 수의계약시의 일반관리비 등 계산방법 • 36
- 군 특수포장비 등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 • 36
- 운반비 계상방법 • 37
- 감가상각비 계상시 작업부동시간 및 준비시간의 인정여부 • 37
- 이월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 38
- 개발장비의 원가정산 방법 • 39
- 직접노무비 계상방법 • 40
- 정상적인 재고감모비의 처리방법 • 41
- 기술개발비 준비금의 인정방법 • 41
- 수입부대비용 인정 한계 • 42
- 기타 직접경비의 인정범위 및 절차 • 43
- 기술개발비 및 시험연구비 계상방법 • 43
- 방산용 수입원자재의 단가적용 방법 • 44
- 사후원가관리시 임율적용 방법 • 45
- 연구개발비 인식범위 및 계산방법 • 46
- 확정원가계산시 전년도의 실적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47
- 사전원가와 사후원가 비목에 대한 질의 • 48
- 성실의무 불이행업체의 제재 • 48
- 정산원가계산시 규정 적용시점 • 49
- 구분회계의 판단기준 • 50
- 상여금 상한선에 관한 회계질의 • 50
- 수입물자 원가계산시 수입제세 원가산입 여부 • 51
- 잔업수당 계상(인정)방법 • 52

-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의 구분 • 53
- 직접노무비의 상여금 상한선 책정 • 53
- 이윤계산 방법 • 54
- 구입완성품과 구입부품의 구분 필요성과 용어정의 • 54
- 수입비축용 원자재 사용시 산정방법 • 55
- 간접재료비의 계산방법 • 56
- 기술개발비 계산시 발생비용 인정여부 • 56
- 군수물자 수출물량분을 동시 생산하는 경우의 전용기계장치 인정여부 • 57
- 발전기류 감손율 책정 시달 요청 • 57
- 수입완성품 및 수리부속품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방법 • 58
- 제비율 미책정 업체에 대한 추가시달 요청 • 58
- 원가산정상 불량률 인정에 관한 건의 • 59
- 관급부품의 감손분(손실율, 시료율 및 불량률)에 대한 원가산입 여부 • 60
- 운반 및 검사인원을 직접노무비 계상여부 • 61
- 상여금의 계상방법 • 62
- 대공표적기 불량률 적용에 대한 재질의 • 62
- 외화로 표시된 관급품(재료, 완성품)의 평가방법 • 63
- 국방부장관 긴급생산지시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 • 64
- 전용 기계장치 및 치공구의 적용구분 • 65
- 원가계산시 금형비 인정범위 • 66
- 재고(완성)품 원가계산에 관한 질의 • 67
- 교육훈련비의 직접경비 인정여부 • 67
- 사후원가관리시 수입품 환율적용 시점 • 68
- 사후원가관리시의 수입물자 환율적용 시점에 관한 문의 • 69
- 사후원가관리시 수입물자 환율적용 시점에 대한 재질의 • 70
- ○○○사업 정산적용 기준 • 70
- 분할납품의 경우 정산원가계산의 시기는 • 72

- 상여금 계산기준에 대한 질의 • 73
- 군수물자 원가계산시 기계장치의 직·간접경비 구분 • 74
- 국방부 직할 연구기관과의 물품계약시 원가계산 • 75
- 군수업체 통관료의 인정여부 • 75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76
- 군수물자 구입재료의 가격 적용 • 77
- 건설이자의 원가산입 여부 • 78
- 방산전용 금형과손에 의한 신금형제작비 원가인정 여부 • 79
- 방산업체 구분회계 실시여부 • 79
- 기업합병시 제비율적용 방법 • 80
-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위한 현물변제 가능여부 • 80
- 국고금 단수계산 방법 • 81
- 직접경비 계산에 대한 질의 • 82
- 실습생의 실습보조비 인식 • 82
- 중도확정계약에 의한 정산원가계산시점 및 환율적용 • 82
- 원가절감보상계약 체결 가능여부 • 84
- 하청업체의 국산화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 대상 • 84
- 방산·민수 병용기계 감가상각비 계산 • 85
-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보증을 위한 채권보전 • 85
- 복수업체와 계약체결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 86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87
- 일반수입물품의 원가계산시 통관료 계상여부 • 88
- 사후원가관리시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 및 요율 적용 • 89
- 복수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방산업체 지정이 변경된 경우 제비율 적용 • 90
-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92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 • 93

- 원가계산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 • 94
-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방법 • 95
- 거래실례가격 적용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등 계상 • 95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 96
- 특정비목확정계약 정산시 제비율 적용 • 97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 98
- 사후원가관리시 환율 적용 • 10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00
- 완성장비 유지부품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특례개정 건의 • 101
- 자원용역 원가계산 방법 • 102
- 외화표시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의 조정 • 103
- 방산구입완성품 이익률 적용기준 • 103
- 거래실례가격 각호간의 우선순위 • 105

▲ '90 ~ '99

- 방산물자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 • 105
- 계좌입금에 따른 입금표 징구 • 106
- 갱신공고 및 예정가격 변경 • 107
-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회계질의 • 107
- 개산계약 절차에 관한 질의 • 108
- 기술개발비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 110
- 유인부확정계약 정산시 제비율적용 방안 • 111
-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112
- 특정비목확정계약분 정산시 이윤율 적용기준 • 114
- 개산계약분 원가정산시 재고품 가격적용 시점 • 115
- 제비율 산정내역(직접노무비 및 감가상각비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 116
- 개산계약의 분할납품시 중도금의 지급한도 • 118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방법 • 119
- 생산공정도급비용의 회계처리 • 120
- 하기휴가비 등 적용기준 질의 • 121
- 공장이전에 따른 제비율 적용 • 123
- 일부 생산공정 도급비용에 대한 비목적용 • 123
- 방산물자의 수입관세 계상기준 • 124
- 관급재료의 감손분 원가인정 여부 • 124
- 원가계산시 적용할 거래실례환율 • 125
- 농어촌특별세 원가적용 방법 • 126
- 개산계약의 계약금액 결정 방법 • 127
- 방산물자의 수입관세 계상방법 • 128
- 관급재료의 감손분 원가인정 여부 • 129
- 착수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 129
- ○○함 자산재평가 관련 감가상각비 인정여부 • 131
- R.B.S 사업종료에 따른 미감가상각액 처리 방안 • 132
- 방산물자의 이윤율 산정기준 • 132
- 개산계약 정산시 제비율 적용 • 133
- 방산전용장비 및 개발비 미보상비용의 원가인정 • 133
- 일반개산계약 이행 중 개산계약 금액의 변경 • 134
- 방산전용자산 및 기술개발비의 상각방법 • 135
- 기술개발비 원가계산의 적용 • 136
- 직업훈련생 현장투입 비용의 회계처리 • 136
- 외주정비 원가정산시 제비율 적용 • 137
- 개산계약금액 초과분과 지체상금의 상계여부 • 138
- 수리분석비 원가인정 여부 • 138
- 계약의 범주 및 사후원가관리시의 임율적용 • 139
- 일반관리비 산출시 관급재료비 처리방법 • 140

- 노무비 단가의 원가 인정 • 141
-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시 제비율의 적용 • 142
- 관급재료비에 대한 운용지침 • 142
- 일반관리비율 산정시 관급재료비 제외가능 여부 • 143
- 업체부담 투자비의 사후보상 문제 • 144
- 제비율 적용기준 및 계약조건 해석 • 145
- 개산계약 정산시 적용할 환율 • 145
- 교육훈련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적용 • 146
- 유형자산 관련 투하자본 인정여부 • 147
- 착·중도금의 지급한도 • 148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방법 • 149
-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설정방법 • 149
- 행사관련비용의 원가보상 범위에 대한 질의 • 150
- 관급품 납품시점 관련 질의 • 151
- 감가상각비 특례적용 수출품의 범위 • 152
- 방산물자 정비계약시 하도급 관련 질의 • 153
- 불가항력적 사유와 계약자의 귀책사유 관련 지체상금 • 154
- 수출품의 정의 • 155
-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156
-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 157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57
- 중도확정계약의 체결 및 운영시 유의사항 • 158
- 사전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수입품원가계산시 환율적용 기준 • 159
- Banking charge 수입부대경비 인정여부 • 160
- 사업종료 후 잉여자재의 원가인정 여부 • 160
- 제조에 직접 투입된 실습생의 노무비 원가인식 방법 • 161
- KFP 2차 사업의 중도확정시 제비율 적용 • 162

- KFP 2차 사업수행에 따른 국내 기술개발비 및 시제개발비의 이윤산정 기준 • 163
- 중도확정계약시 제비율 적용방법 • 164
- 설치시운전비 및 시스템체계장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원가적용 • 165
- 퇴직금 계산대상 급여액의 범위 • 166
- 퇴직금 대상급여액 산정방법 • 167
- 수입품의 원가정산시 환율적용 및 계약금액조정 • 168
- 방산업체간 합병 및 인수에 따른 제비율 적용 및 산정방법 • 169
- 용역원가계산기준 적용가능 여부 • 172
- 환율변화에 따른 가격산정 방법 • 173
- 이윤 및 잉여자재 정산 • 174
- 파견인력의 잔업공수 인정기준 • 177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투하자본금액 인정여부 • 178

▲ '00 ~ '09

- 예산부족에 따른 개산계약 금액의 확정 • 179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80
- 방산물자 감가상각비 계산기준 • 183
- 생산공정 일부에 대한 외주처리 비용 • 184
- 개산계약정산시 상한가로 제한된 비용보상 • 185
- 완성품 이윤정산 및 조세공과금에 대한 질의 • 186
- S/W 교체작업과 시험국산화에 투입된 작업자의 원가계산 방법 • 188
- 유형고정자산 및 연구개발비의 투하자본 인정여부 • 188
- 부품국산화 개발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 189
-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대한 경비 인정 • 190
- 농특세 비과세 관련 계약금액 조정 • 190
- 폐기물 회수 · 처리비용의 예치금 원가인정 여부 • 192
- 함 건조 전용시설의 미감가상각액 계상 범위 • 193

- 계약보증금 면제 범위 • 194
- 노동조합 전임자 및 임시 상근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원가인정 여부 • 195
- 산재환자 및 불법파업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원가성 여부 • 196
- 착·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 범위에 대한 질의 • 198
- 일반개산계약 체결사업의 계약금액 정산 • 198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및 관련 법규 해석 질의 • 199
- 시제생산계약의 원가정산 범위 • 201
- 중고 관급재료 평가액의 산정 • 202
- 조립 · 시험비용의 원가계산기준 질의 • 203
-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된 성과급 등의 원가계산 적용기준 • 204
- 일반개산계약의 정산기준일 및 상여금의 원가인정 여부 • 205
- 계약체결전 교육경비의 원가인정 여부 • 207
- 민 · 방산공용 시설을 방산전용으로 사용시 감가상각비 계산 • 208
- 협력업체 원가산정 관련 노무비단가 적용기준 • 208
- 연구개발비 이연상각 관련 질의 • 209
- 학술연구 용역원가 기준 관련 질의 • 210
- 업체투자금 환급방안 질의 • 211
- 재료비 직, 간접 구분 회계처리 질의 • 212
- 직접경비 인정 여부 관련 질의 • 213
- 설물 폐기처리비용의 적용비목 질의 • 214
- 연구개발비의 원가 인정 질의 • 215
- 사업장간 자산이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대상금액 인정범위 • 216
- 국외원자재(M/P) 관련비용 및 신규지정업체의 원가계산 기준 • 218
- 제비율 자료 미제출 업체의 제비율 적용 방안 • 219
- 복수 방산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 220
- 직접노무비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 220
- 관급보험료의 직접경비 인정여부 • 221

- 파견비의 직접경비 인정여부 • 22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수입물품의 환율적용 시점 • 222
-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정산원가시 이윤적용 기준 • 223
- 복수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 224
- 방산업체 지주회사 분할시 공통원가 및 체비율 산정 • 225
- 공장통합에 따른 중도확정계약 정산원가의 체비율 적용 • 226
- 특정비목불확정계약 품목의 정산원가 산정 • 227
- 민군겸용 기술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원가반영 여부 • 228
- 과거 무형자산 등재 후 손실처리한 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배부 방법 • 229
- 중도확정계약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조정 환율적용 기준 • 230
- 착수금 미사용액 반환시 약정이자 상당액 징수에 대한 질의 • 232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및 환율적용 기준 • 232
- 도급장비의 비순환비용 상각방법 • 236

▲ '10 ~

- 착·중도금 지급 관련 질의 • 236
- 수입품 국산화 개발에 따른 수입가격 인정여부 • 237

차 례 (분야별)

▲ 계 약

- 지체상금 징수 요령 • 21
- 입찰금액 착오기재시 입찰의 유효여부 • 21
-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 • 22
-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 • 22
- 비밀수의계약에 대한 확인서 첨부 • 23
- 방산화비율을 매년 상승시키는 기자재의 개발시제품 간주여부 • 28
- 국방부장관 긴급생산지시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 • 64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76
- 원가절감보상계약 체결 가능여부 • 84
- 하청업체의 국산화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 대상 • 84
-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보증을 위한 채권보전 • 85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87
- 사후원가관리시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 및 요율적용 • 89
-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92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질의 • 93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 96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00
- 외화표시가격 변동시 계약금액 조정 • 103
- 거래실례가격 각호간의 우선순위 • 105
- 갱신공고 및 예정가격 변경 • 107
-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112
- 개산계약의 분할납품시 중도금의 지급한도 • 118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방법 • 119
- 개산계약의 계약금액 결정 방법 • 127
- 착수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 129
- 일반개산계약 이행 중 개산계약 금액의 변경 • 134
- 개산계약금액 초과분과 지체상금의 상계여부 • 138
- 계약의 범주 및 사후원가관리시의 임율적용 • 139
- 착·중도금의 지급한도 • 148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방법 • 149
-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설정방법 • 149
- 관급품 납품시점 관련 질의 • 151
- 방산물자 정비계약시 하도급 관련 질의 • 153
- 불가항력적 사유와 계약자의 귀책사유관련 지체상금 • 154
-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156
-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 157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57
- 중도확정계약의 체결 및 운영시 유의사항 • 158
- 환율변화에 따른 가격산정 방법 • 173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80
- 계약보증금 면제 범위 • 194
- 착·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 범위에 대한 질의 • 198
- 일반개산계약 체결사업의 계약금액 정산 • 198
- 일반개산계약의 정산기준일 및 상여금의 원가인정 여부 • 205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수입물품의 환율적용 시점 • 222
- 중도확정계약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조정 환율적용 기준 • 230
- 착수금 미사용액 반환시 약정이자 상당액 징수에 대한 질의 • 232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및 환율적용 기준 • 232
- 착·중도금 지급 관련 질의 • 236

▲ 원 가

- 사후원가계산제도 적용 • 24
- 수송운임단가 인상 • 25
- FMS 물자수송에 따른 보험료 구상액 • 26
- 군수물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 29
- 군수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30
- 정산원가계산시 일부 추정계산의 가능여부 • 31
- 개산원가계산시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32
- 관급품 수리수선비 인정여부 • 32
- 사후원가계산시 비목추가 확정 가능여부 • 35
- 사후원가계산시 누락부분의 추가인정 가능여부 • 35
- 개발장비의 원가정산 방법 • 39
- 확정원가계산시 전년도의 실적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47
- 사전원가와 사후 원가비목에 대한 질의 • 48
- 정산원가계산시 규정 적용시점 • 49
- 구분회계의 판단기준 • 50
- 이윤계산 방법 • 54
- 군수물자 수출물량분을 동시 생산하는 경우의 전용기계장치 인정여부 • 57
- 발전기류 감손율 책정 시달 요청 • 57
- 수입완성품 및 수리부속품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방법 • 58
- 외화로 표시된 관급품(재료, 완성품)의 평가방법 • 63
- 전용기계장치 및 치공구의 적용구분 • 65
- 재고(완성)품 원가계산에 관한 질의 • 67
- 사후원가관리시 수입품 환율적용 시점 • 68
- 사후원가관리시의 수입물자 환율적용 시점에 관한 문의 • 69
- 사후원가관리시 수입물자 환율적용 시점에 대한 재질의 • 70
- ○○○사업 정산적용 기준 • 70

- 분할 납품의 경우 정산원가계산 시기는 • 72
- 국방부 직할 연구기관과의 물품계약시 원가계산 • 75
- 군수업체 통관료의 인정여부 • 75
- 건설이자의 원가산입 여부 • 78
- 중도확정계약에 의한 정산원가계산시점 및 환율적용 • 82
- 복수업체와 계약체결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 86
- 복수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방산업체 지정이 변경된 경우 제비율 적용 • 90
- 원가계산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 • 94
- 거래실례가격 적용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등 계상 • 95
- 사후원가관리시 환율 적용 • 100
- 완성장비 유지부품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특례개정 건의 • 101
- 자원용역 원가계산 방법 • 102
- 방산구입완성품 이익률 적용기준 • 103
-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회계질의 • 107
- 개산계약 절차에 관한 질의 • 108
- 특정비목확정계약분 정산시 이윤율 적용기준 • 114
- 개산계약분 원가정산시 재고품 가격적용 시점 • 115
- 방산물자의 수입관세 계상 기준 • 124
- 농어촌특별세 원가적용 방법 • 126
- 방산물자의 수입관세 계상방법 • 128
- 방산물자의 이윤율 산정기준 • 132
- 기술개발비 원가계산의 적용 • 136
- 일반관리비 산출시 관급재료비 처리방법 • 140
- 개산계약 정산시 적용할 환율 • 145
- 교육훈련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적용 • 146
- 유형자산 관련 투하자본 인정여부 • 147

- 사전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수입품원가계산시 환율적용 기준 • 159
- 사업종료 후 잉여자재의 원가인정 여부 • 160
- 수입품의 원가정산시 환율적용 및 계약금액 조정 • 168
- 용역원가계산기준 적용가능 여부 • 172
- 이윤 및 잉여자재 정산 • 174
- 파견인력의 잔업공수 인정기준 • 177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투하자본금액 인정여부 • 178
- 예산부족에 따른 개산계약 금액의 확정 • 179
- 개산계약정산시 상한가로 제한된 비용보상 • 185
- 완성품 이윤정산 및 조세공과금에 대한 질의 • 186
- S/W 교체작업과 시험국산화에 투입된 작업자의 원가계산 방법 • 188
- 유형고정자산 및 연구개발비의 투하자본 인정여부 • 188
- 부품국산화 개발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 189
- 농특세 비과세 관련 계약금액 조정 • 190
-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의 예치금 원가인정 여부 • 192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및 관련 법규 해석 질의 • 199
- 시제생산계약의 원가정산 범위 • 201
- 조립·시험비용의 원가계산기준 질의 • 203
- 학술연구 용역원가 기준 관련 질의 • 210
- 국외원자재(M/P) 관련비용 및 신규지정업체의 원가계산 기준 • 218
- 복수 방산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 220
- 복수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 224
- 방산업체 지주회사 분할시 공통원가 및 체비율 산정 • 225
- 특정비목불확정계약 품목의 정산원가 산정 • 227
- 수입품 국산화 개발에 따른 수입가격 인정여부 • 237

▲ 재 료 비

- 대공표적기 불량률 적용 • 30
- 사전표준원가 작성시 재료비 산정방법 • 34
- 수입품부대비용 계산시 실발생 부대비용 원가인정 여부 • 34
- 정상적인 재고감모비의 처리방법 • 41
- 방산용 수입원자재의 단가적용 방법 • 44
- 수입물자 원가계산시 수입제세 원가산입 여부 • 51
- 구입완성품과 구입부품의 구분 필요성과 용어정의 • 54
- 수입비축용 원자재 사용시 산정방법 • 55
- 간접재료비의 계산방법 • 56
- 원가산정상 불량률 인정에 관한 건의 • 59
- 관급부품의 감손분(손실율, 시료율 및 불량률)에 대한 원가산입 여부 • 60
- 대공표적기 불량률 적용에 대한 재질의 • 62
- 군수물자 구입재료의 가격 적용 • 77
- 일반수입물품의 원가계산시 통관료 계상여부 • 88
- 관급재료의 감손분 원가인정 여부 • 124
- 원가계산시 적용할 거래실례환율 • 125
- 관급재료의 감손분 원가인정 여부 • 129
- 관급재료비에 대한 운용지침 • 142
- 일반관리비율 산정시 관급재료비 제외가능 여부 • 143
- 중고 관급재료 평가액의 산정 • 202
- 재료비 직, 간접 구분 회계처리 질의 • 212

▲ 노 무 비

- 연간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 27
- 직접노무비 계상방법 • 40

- 사후원가관리시 임율적용 방법 • 45
- 상여금 상한선에 관한 회계질의 • 50
- 잔업수당 계상(인정)방법 • 52
-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의 구분 • 53
- 직접노무비의 상여금 상한선 책정 • 53
- 운반 및 검사인원을 직접노무비 계상여부 • 61
- 상여금의 계상방법 • 62
- 상여금 계산기준에 대한 질의 • 73
- 하기휴가비 등 적용기준 질의 • 121
- 노무비 단가의 원가인정 • 141
- 제조에 직접 투입된 실습생의 노무비 원가인식 방법 • 161
- 퇴직금 계산대상 급여액의 범위 • 166
- 퇴직금 대상급여액 산정방법 • 167
- 생산공정 일부에 대한 외주처리 비용 • 184
- 노동조합 전임자 및 임시 상근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원가인정 여부 • 195
- 산재환자 및 불법파업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원가성 여부 • 196
-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된 성과급 등의 원가계산 적용기준 • 204
- 협력업체 원가산정 관련 노무비단가 적용기준 • 208
- 직접노무비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 220

▲ 경 비

- 보조금으로 들어온 장비, 부대비용 인정여부 • 33
- 기술개발비 계상시 계약전 발생비용 인정여부 • 33
- 운반비 계상방법 • 37
- 감가상각비 계상시 작업부동시간 및 준비시간의 인정여부 • 37
- 기술개발비 준비금의 인정방법 • 41

- 수입부대비용 인정 한계 • 42
- 기타 직접경비의 인정범위 및 절차 • 43
- 기술개발비 및 시험연구비 계상방법 • 43
- 연구개발비 인식범위 및 계산방법 • 46
- 기술개발비 계산시 발생비용 인정여부 • 56
- 원가계산시 금형비 인정범위 • 66
- 교육훈련비의 직접경비 인정여부 • 67
- 군수물자 원가계산시 기계장치 직·간접경비 구분 • 74
- 방산전용 금형파손에 의한 신금형제작비 원가인정 여부 • 79
- 직접경비 계산에 대한 질의 • 82
- 실습생의 실습보조비 인식 • 82
- 방산·민수 병용기계 감가상각비 계산 • 85
-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방법 • 95
- 기술개발비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 110
- 생산공정도급비용의 회계처리 • 120
- 일부 생산공정 도급비용에 대한 비목적용 • 123
- ○○함 자산재평가 관련 감가상각비 인정여부 • 131
- R.B.S 사업종료에 따른 미감가상각액 처리 방안 • 132
- 방산전용장비 및 개발비 미보상비용의 원가인정 • 133
- 방산전용자산 및 기술개발비의 상각방법 • 135
- 직업훈련생 현장투입 비용의 회계처리 • 136
- 수리분석비 원가인정 여부 • 138
- 업체부담 투자비의 사후보상 문제 • 144
- 행사관련비용의 원가보상 범위에 대한 질의 • 150
- 감가상각비 특례적용 수출품의 범위 • 152
- Banking Charge 수입부대경비 인정여부 • 160
- KFP 2차 사업수행에 따른 국내 기술개발비 및 시제개발비의 이윤산정 기준 • 163

- 설치시운전비 및 시스템체계장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원가적용 • 165
- 방산물자 감가상각비 계산기준 • 183
-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대한 경비 인정 • 190
- 함 건조 전용시설의 미감가상각액 계상 범위 • 193
- 계약체결전 교육경비의 원가인정 여부 • 207
- 민·방산공용 시설을 방산전용으로 사용시 감가상각비 계산 • 208
- 연구개발비 이연상각 관련 질의 • 209
- 업체투자금 환급방안 질의 • 211
- 직접경비 인정 여부 관련 질의 • 213
- 설물 폐기처리비용의 적용비목 질의 • 214
- 연구개발비의 원가 인정 질의 • 215
- 사업장간 자산이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대상금액 인정범위 • 216
- 관급보험료의 직접경비 인정여부 • 221
- 파견비의 직접경비 인정여부 • 221
- 민군겸용 기술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원가반영 여부 • 228
- 과거 무형자산 등재 후 손실처리한 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배부 방법 • 229
- 도급장비의 비순환비용 상각방법 • 236

▲ 제 비 율

- 주요부품 수입조립시 제잡비율 • 26
- 분할 수의계약시 일반관리비 등 계산방법 • 36
- 군 특수포장비 등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 • 36
- 제비율 미책정 업체에 대한 추가시달 요청 • 58
- 방산업체 구분회계 실시여부 • 79
- 기업합병시 제비율적용 방법 • 80
- 특정비목확정계약 정산시 제비율 적용 • 97

- 유인부확정계약 정산시 제비율적용 방안 • 111
- 제비율 산정내역(직접노무비 및 감가상각비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 116
- 공장이전에 따른 제비율 적용 • 123
- 개산계약 정산시 제비율 적용 • 133
- 외주정비 원가정산시 제비율 적용 • 137
-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시 제비율의 적용 • 142
- 제비율 적용기준 및 계약조건 해석 • 145
- KFP 2차 사업의 중도확정시 제비율 적용 • 162
- 중도확정계약시 제비율 적용방법 • 164
- 방산업체간 합병 및 인수에 따른 제비율 적용 및 산정방법 • 169
- 제비율 자료 미제출 업체의 제비율 적용 방안 • 219
- 특정비목불확정계약 품목의 정산원가시 이윤적용 기준 • 223
- 공장통합에 따른 중도확정계약 정산원가의 제비율 적용 • 226

▲ 기 타

- 이월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 38
- 성실의무 불이행업체의 제재 • 48
-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위한 현물변제 가능여부 • 80
- 국고금 단수계산 방법 • 81
- 방산물자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 • 105
- 계좌입금에 따른 입금표 징구 • 106
- 수출품의 정의 • 155

지체상금 징수 요령

질 의 : 육군본부 회감 제399호('64.5.20)

- 지체상금 징수는 국채로도 할 수 있는지, 현금에 한에서 징수하여야 하는지
- 지체상금의 징수요율은 재무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 신 : 국방부 이재 1210.5-1733('64.5.27)

- 지체상금은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 지체상금 징수요율은 재무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입찰금액 착오기재시 입찰의 유효여부

질 의 : 국방부 국제이 1210.5-1648('66.6.11)

- 응찰자가 입찰서상의 입찰자격 기입시 萬자를 누락 기입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재무부 재국회 1210.3-3217('66.6.18)

- 입찰집행 전에 입찰 유의사항으로서 입찰서에 기재한 문자 중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되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는 것을 입찰자에게 주지시킨 경우에는 본건과 같이 입찰자격 기입시 萬자를 누락하였다면 본 입찰은 무효로 함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입찰집행 전에 입찰 유의사항으로서 발주자는 발주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접수된 입찰서상의 어떠한 결함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찰자에게 주지시켰다면 본건과 같은 입찰을 입찰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로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오니 본건의 처리는 입찰집행관이 판단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

질 의 : 국방부 건설본부 국건경 1218.2-1119('64.6.23)

-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국고 수입으로 불입함에 있어 국고에 귀속되기 전의 이자도 포함하여 수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고에 귀속된 일자부터 계산하여 국고 수입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회 신 : 국방부 국재이 1210.5-2157('64.6.26)

-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보증금(유가증권)에 대한 이자는 계약보증금 몰수일자부터 계산하여 국고수입으로 함이 타당할 것임.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

질 의 : 국방부 이재 1210.5-857('69.3.24)

-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7조(일반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지명경쟁계약에 준용할 일반경쟁계약에 관한 규정 중에는 동령 제85조(일반경쟁계약 입찰참가자의 자격)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동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지명할 수 있는 것인지

나. 또는 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상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계약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 예외적인 지명경쟁계약을 허용

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일반경쟁 참가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지명경쟁입찰에도 참가시킬 수 없는 것인지

회 신 : 재무부 회계 1210-1224('69.3.31)

- 현행 규정상 지명경쟁시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동령 제105조(지명경쟁에 의한 경우)에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자를 지명하여야 할 것임.

비밀수의계약에 대한 확인서 첨부

질 의 : 조달본부 물관 1210-1947('71.5.18), 이재 1210-622('71.5.4)

- 국방부 장관이 비밀로 분류하여 조변 지시된 품목을 조변과정에서 평문으로 취급 공개 집행할 수 없으므로(보안업무규정 제2조 참조) 조변 지시 전에 국방부에서 검토되어 분류 하달하여 주시기 바람
- 계획전체는 비밀이나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집행시에는 비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예고문에 해당품목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 위 2, 3항이 조치되면 예회령 제112조1항3조에 의한 수의계약 승인상신시에 비밀계약확인서 첨부를 생략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승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 국방부 이재 1210-735('71.5.24)

- 비밀수의계약확인서 첨부지시는 집행재무관이 조변지시서(일반적 사항 기재, 품목, 수량, 단가 등)가 비밀로 분류되었음을 이유로 관계법령(예회령 112조1항3조)을 확대 해석 또는 남용하여 부당한 계약(전화기 및 오토바이 구매의 주의지시 참조)을 체결하는 등, 계약행정을 문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확인서를 첨부토록 지시

- 한 것이니 이점 유의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 또한 조변지시서는 물품조변에 관한 일반적 행정지시인데 반해 계약체결은 법령으로 규제된 사항이니 재무관은 법규준수에 충실하여야 하므로 조변지시서의 비밀구분에 대한 과도분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과도분류는 재분류요청, 보안업무시행규정 제16조 참조) 계약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

사후원가계산제도 적용

질 의 : 조달본부 기획 924-987('74.3.14)

- 물품의 제조 또는 구입시에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료비의 경우는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조1항에 규제된 바에 따라 소정 규격에 필요한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1항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한 가격을 적용하거나 재무부장관이 정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과 회계예규 1210.04-4('70.4.1)에 의거 규제한 공장도 가격을 적용함으로서 현행 법령 또는 규칙에 의거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연이나 감사 또는 검열시에 업체의 세무보고서에 나타난 재료비 구입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법령 해석상 차이가 발생되고 있음.
- 업체의 세무보고서에 의한 재료비의 구입가격을 적용할 경우는 사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여야만 하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제된 바로는 사전원가계산제도로 되어 있어 법령 개정 이전에 사후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후원가계산을 적용시 최초 계약당시의 가격보다 고가인 경우는 업체로부터 초과금액을 회수, 국고에 불입하고 최초 계약가격보다 미달시는 세무보고서에 나타난 인상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이재 1210-348(74.4.1)

-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회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에 부친 사항의 가격을 예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봉서로 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사후원가계산은 할 수 없을 것임.
- 감사나 검열시에 업체의 세무보고서에 재료구입가격을 거래실레가격이라고 한 것은 업체에서 재료를 구입한 가격이 거래실레가격이라고 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업체의 세무보고서 가격으로 사후원가계산은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임.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실레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거래실레가격이란 회계예규 1201.04-4(70.4.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장도 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도매물가 중 최저가격을 말하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단지 공신기관이 조사한 가격만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준거하여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실하게 그 직분에 상응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수송운임단가 인상

질 의 : 육군본부 기관예 제241호(74.7.18)

- 당군 관하 사단에서 체결한 육로수송용역계약에 있어 정부고시가격인 자동차운임 및 유류대 인상으로 회계예규 1210.04-55 및 시설공사 일반 조건 제33조 1항을 준용하여 계약단가를 인상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이재 1210.5-917("74.7.26)

- 계약단가 인상근거로 제시한 회계예규 1201.04-08("72.2.1) 공사도급계약금액 변경에 관한 지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물가변동과 도급금액의 조정의 규정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송계약의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또한 시설공사계약을 제외한 국고부담이 되는 일반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예회령 제101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교통부인가 단가를 기준하여 작성한 예정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동 인가단가가 인상되었음을 이유로 계약단가를 인상 조정할 수 없음.

FMS 물자수송에 따른 보험료 구상액

질 의 : 조달본부 외일 942-7327("77.8.9)

- 당본부는 FMS 물자수송에 따른 보험료 구상액을 부보물자의 구매에 재사용하고자 하니 이의 적정여부는?

회 신 : 국방부 예산 1210.5-530("77.8.22)

- 본건 구상보험금은 예산회계법 제9조(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의 규정에서 수입금의 직접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국고에 납입함이 타당할 것임.

주요부품 수입조립시의 제잡비율

질 의 : 국방부 예산 1210-5-592("77.10.5)

-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군사장비를 획득함에 있어 군수업체로 하여금 주요

부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조립 납품케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제잡비율 적용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 가. 조립 납품되는 군사장비의 예정가격 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역무
비 전체에 대하여 물품제조 가공시 제잡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혹은 군사장비의 예정가격 내역 중 수입되는 부분품을 별도로 분리
하여 이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구입시의 제잡비율을 적용하고 기타
국내 생산 및 조립부분에 대하여는 물품제조 가공시의 제잡비율을
구분 적용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재무부 회계 1210-2403('77.10.21)

- 귀 질의 조립 납품되는 군사장비의 예정가격 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역무비 전체에 대하여 물품제조 가공시 제잡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로
처리

연간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질 의 : 전매청 ('78.3.17)

- 재무부 회계 1210-422('78.3.6)로 통보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에 의한 원가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직접노무비 중 상여금 산정에 있어 전년도 지급실적은 100%이나 당년도
는 노사협약에 의거 400% 지급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년도 지급율을 원가계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사업
자가 300%밖에 지급치 않을 경우 여하히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노무비는 제수당(시간, 휴일, 야근) 산정에 있어 특용제품으로 수요자의
수주량에 의존 가동되는 생산업체에서 연평균 적정인원만을 확보하여
생산능력 이후의 조업시에는 기본급만을 지급하고 생산능력 이상의 조
업시에는 신규인력 증원이 유리하나 기술인력 확보책으로 상근로자로

하여금 고임율의 연장작업에 조업토록 하여 1인당 소득 수령액의 인상을 기하고 있을 경우에

가. 연간 생산능력에 의한 노무비 계산시에는 특근수당을 인정하기 곤란하나 지급실적에 의한 계산시에는 특근수당이 당연히 인정되는바 귀견 여하

나. 인력관리상 8시간 작업이외에 연장시간에 종사케 하므로 특근수당이 신규인원 기본급보다 임율이 높은 때도 업체 실지급을 인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와 제49조에 의한 산식에 의거 산정된 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과소 상각하였을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상각액을 원가계산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재무부 회계 1210-833('78.5.6)

- 회계예규 1201.04-82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은 연 400%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지급실적, 계약이행기간 등으로 참작하여야 하며
- 동 예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수당은 소요 노무량, 단위당 기준노임, 상시종업원 및 계약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방산화비율을 매년 상승시키는 기자재의 개발시제품 간주여부

질 의 : 체경주 1210-14241('78.5.27)

-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개산계약) 관련
- 통신자재의 조달에 있어 내외자를 합하여 구매하는 자동교환기(E.M.D), 장거리자동전화시설(D.D.D), 초단파(M/W), 반송시설(P.C.M 동축케이블) 등은 국산화비율이 매년 상승하게 되는바, 이 국산화비율이 상승하는 부

문은 신규개발분야에 속하게 됨.

- 이러한 경우 예정가격의 산출은 외자부문의 수입가격과 내자부문의 원가계산을 사실상 사전에 할 수 없는 사정임.
- 따라서 국산화비율을 매년 상승시키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개발시제품으로 간주하여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 바람.

회 신 : 회계 1210-1304('78.7.14)

- 부품을 국산품으로 개발하더라도 시제품이 아니고 양산할 경우에는 개발시제품으로 볼 수 없음.

군수물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질 의 : 감사 953-5474('81.5.12)

- 군수조달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의 제조 구매와 병행하여 장비의 설치 및 부대공사 기술용역 계약을 당해 군수물자 제조업체와 일괄도급계약토록 되어 있는바, 상기 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국세청 부가 1265.1-1487('81.6.11)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됨.

대공표적기 불량률 적용

질 의 : 장2원 951-7539('81.6.23)

- 군수물자 이외의 일반품목은 회계예규 1201.04-105-1('80.10.1)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는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률 및 제품 납품비행(시험비행 포함) 불량률에 대한 부품이 명시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질의함.
 - 가. 불량률 적용 기준을 제품 과정별로 산정 적용할 것인지 또는 제품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에 적용할 것인지
 - 나. 최초 확정계약시 불량률을 적용하였을 경우 사후관리 결과 최저계약보다 불량률이 초과발생하였을 때 실발생 불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204('81.7.6)

- 귀부에서 질의한 대공표적기 불량률 적용에 대하여는
 - 가. 불량률 적용 기준은 제품 과정별로 산정 적용할 것이며,
 - 나. 최초 확정계약시 적용할 불량률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을 것임.

군수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질 의 : 국방부 예산 1210.5-314('81.7.1)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부가가치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 가. 동 규정은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업체가 군수물자를 정부가 아닌 타 업체에 공급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또한 동 규정은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업체가 타 군수업체를 지정 군수물자를 정부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 재무부 간세 1235-2016('78.7.8)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상원가계산시 일부 추정계산의 가능여부

질 의 : 기획 1210-8782('81.7.16)

- 항공기 창정비 사업은 개산계약으로서 납품 전 정산을 하여야 하나, 납기가 12월 10일로 되어 있어 정산원가자료는 10월말 기준하여 10월 이전분은 실발생가, 이후분은 조정하여 원가정산을 하여야 하는바, 정산원가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정정산이 가능하다면 추정정산분은 사후관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 개산계약에 대한 정산은 군수물자 원가계산기준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납기이전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7조 제1항에 열거한 증빙자료를 제품생산 완료 20일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열거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산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원가는 원가를 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

시점 이전은 실발생비율을 계상하고, 정산시점 이후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원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정산원가를 일부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추정 계산분에 대한 사후 관리 여부는 계약서상에 특수조건으로 附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개산원가계산시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기획 1210-8782('81.7.16)

○ 개산원가계산시

- 가. 전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항공기 창정비) 실적을 근거로 금년도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 나. 연구개발, 시험생산 등 업체견적에 의한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 개산계약은 일반물자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 군수물자의 경우에는 특조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계약으로 하여야 하며, 개산원가 계산시에는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급품 수리수선비 인정여부

질 의 : 기획 1210-8782('81.7.16)

○ 자재 및 금형 치공구 장비 등을 관급하는 경우, 관급품의 유지 및 사용에 따른 보수, 유지비 등을 수리수선비로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 관급된 자재 및 금형, 치공구 장비 등에 대한 유지 및 사용에 따른 보수비 등은 수리수선비로 원가에 반영할 수 있음.

보조금으로 들어온 장비, 부대비용 인정여부

질 의 : 기획 1210-8782('81.7.16)

- 특수사업에 필요한 장비 중 일부가 국가 보조금으로 들어오는바, 이 때 부대비용은 업체가 부담할 경우,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원가반영이 가능하다면 장기 사업일 때 이연상각하여야 하는지, 당해 연도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장비에 대해 그 부대비용을 업체가 부담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원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생산기간 또는 생산계획량으로 이연상각하여 원가로 계상

기술개발비 계상시 계약전 발생비용 인정여부

질 의 : 기획 1210-8782('81.7.16)

- 특수사업 추진 및 기술도입을 위하여 계약 이전부터 전담반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는바, 계약이전 발생비용을 개발비로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 기술개발비는 현행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14조 제11항에서 민수와 구분된 회계 결과에 따라 군수전용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제품생산에 직접 투입되고, 그 지출 근거가 명확할 경우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이전에 발생된 기술개발비라 할지라도 당해 계약만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로 인정 원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사전표준원가 작성시 재료비 산정방법

질 의 : 기획 1210-8782('81.7.16)

- 사전표준원가 작성의 경우, 재료비 산정에 있어 제조업체에서 당해 연도 제품에 투입할 원료가 재고품(수입품, 국내구입)일 경우, 그 적용단가를 현시가적용 또는 재고품 단가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및 동품목을 사후 원가 관리할 경우 제품제조에 재고품만 사용했다면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357('81.10.5)

- 정부 원가계산의 주요목적이 원가계산시점(계약시점)에서의 적정 구입 가격 책정에 있으므로 원가계산시점에서의 재료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동 품목을 사후관리 할 경우 사후관리는 비용발생 여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므로 실발생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수입품 부대비용 계산시 실발생 부대비용 원가인정 여부

질 의 : 기획 1210-8782('81.7.16)

- 수입품 부대비용 계산시 군수물자는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10조

제4항, 일반물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 3항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상기 규정에 명시된 비용 이외의 수입대행수수료 Amend Charge, Term Charge, 파출검사료 등 실발생 부대비용을 원가에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 수입품 부대비용 계산시 현행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10조 제4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 제3항에서는 업체에서 실발생된 비용이라 할 지라도 수입대행수수료 Amend Charge, Term Charge, 파출검사료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가에 반영할 수 없음.

사후원가계산시 비목추가 확정 가능여부

질 의 : 기획 1210-8782('81.7.16)

- 확정계약 원가계산시 빠진 원가비목을 사후 원가계산시 비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 “확정계약시 누락된 부분을 사후 원가계산시 별도로 추가하여 계산할 수 없음”의 회계 질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토록 할 것.

사후원가계산시 누락부분의 추가인정 가능여부

질 의 : 기획 1210-8782('81.7.16)

- 동일 비목 중 확정계약시 누락된 부분을 사후원가계산시 누락부분을 추가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확정계약시 수입부품이 10종이었는데

사후원가계산시 12종으로 된 경우)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 확정계약은 계약체결시에 그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짓는 것을 말하므로 계약이행을 위하여 특정부분을 추가하였다 할지라도 별도로 추가하여 계산할 수 없을 것임.

분할 수의계약시의 일반관리비 등 계산방법

질 의 : 조달본부 기획 1210-8782('81.7.16)

- 예회령 제115조에 의한 분할수의계약 업체별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상이할 때 원가계산에 적용할 적용율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분할수의계약시 업종별로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상이한 제비율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

군 특수포장비 등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

질 의 : 조달본부 기획 1210-8782('81.7.16)

-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자를 조변함에 있어 군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군 규격 포장비 및 군납지(보급창)까지의 운반비가 부가 발생하는 경우
가. 예정가격 작성시 부가 발생하는 비용(군 규격 포장비 및 운반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할 수 있는지

나. 위 '가'가 타당할 경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계상방법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 거래실례가격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군 작전상 필요한 군규격 사용에 추가되는 특수 포장비와 운반비는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할 수 있으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의 계상방법은 추가되는 비용에 한하여 동 제품에 해당되는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운반비 계상방법

질 의 : 조달본부 기획 1210-8782('81.7.16)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운반비 계산시, 일반경쟁의 경우에는 각 참가(입찰 등록) 업체의 위치가 상이하어 운반거리(납지와 업체간의 거리)기준 적용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가. 납지와 최근거리에 위치한 참가업체를 기준으로,

나. 또는 납지와 참가업체와의 평균거리를 기준으로 운반거리를 적용, 운반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운반비 계산시, 일반경쟁의 경우에는 납지와 최근 거리에 위치한 참가업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감가상각비 계상시 작업부동시간 및 준비시간의 인정여부

질 의 : 기획 1210-10528('81.8.25)

- 원가계산시 기계공수에 일상각비(日償却費)를 승(乘)하여 계산할 때 작업 부동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
예) 특검 감사시 작업부동시간 및 준비시간을 원가계산에 산입하지 않도록 지적되었음.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56('81.10.5)

- 기계 감가상각비를 기계공수에 일상각비를 곱하여 계산할 때, 기계공수 (MACHINE HOUR)란 직접 작업시간을 기계운전시간으로 표현한 것으로 직접 작업시간은 在勤(재근)시간에서 휴식시간 및 간접작업시간을 차감한 시간이므로 작업부동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은 기계공수에서 차감하여야 함.

이월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질 의 : 국방부 회계 1210-316('81.8.26)

- 예산회계법 제27조, 제57조에 관한 사항
재무관이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물품제조기간의 장기소요 및 업체의 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당해 연도 내에 납품 및 지출을 필하지 못 할 것이 예측되어, 기 배정된 예산을 명시이월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경우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 아래 '가', '나'항 중 어느 것이 적법한 집행방법 인지의 여부를 질의
가.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필하고, 다음 연도에 납품 및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는지?
나. 다음 연도에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지

회 신 : 재무부 회계 1210-1829('81.9.24)

- 예산회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의 경우 귀 질의 '가' 또는

‘나’ 모두 가능함. 다만 귀 질의 ‘가’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개발장비의 원가정산 방법

질 의 : ○○전기(주), ○○기영 4-81-299호('81.9.29)

- 폐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장비에 대한 시제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정산중에 있으나 정산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질의함.
- 모든 개발장비와 마찬가지로 본 ○○장비도 계약시점에서는 대략적인 Lay out과 일반적인 규격밖에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 졌으며 개발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납품시점에서 구체적인 도면과 이에 따른 소요소재(수입부품을 포함한 원재료)가 결정되며 계약시점으로부터 납품시기까지는 소재의 품목 및 수량이 많이 변화되는 것이 개발장비의 특징임.
-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되는 장비에 대해 ○○측과 계약시 장비 전체금액을 확정계약을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토록 계약되었는바, 폐사로서는 그간의 소재가 변경(품목, 수량, 단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에 소요된 품목, 수량을 ○○창 측에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확실치 않아 현재까지 정산을 못하였음.
- 폐사는 방산원가 조정부서인 귀부에 질의, 개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편타당한 귀부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본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회신 요망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64('81.10.12)

-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는 당초 개산계약을 체결, 사후 정확한 도면과 이에 따른 소요소재를 확정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 본 시제 개발품에 대하여는 귀사와 ○○창과 계약시 당초 장비 전체금액

을 확정계약하고 개발과정에서의 수입품 규격의 빈번한 변경을 예상, 수입품에 대하여는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토록 하였을 경우, 당초 확정계약시의 규격(소재)과 개발과정에서 변경된 규격(소재)을 비교 검토하여 변경된 규격(소재)에 따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직접 연구개발부서의 확인과 실제 도입에 따른 수입면장을 검토,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장비에 대한 원가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임.

직접노무비 계상방법

질 의 : ○○정밀(주), 정해 제81-41호('81.10.5)

- 직접노무비 계상방법은 “공수×임율”로 할 경우 다음 계산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질의함.

《갑설》

- 가. 임 율 : 실지급 노무비 ÷ 총 출근공수(월 300MH/인당)
- 나. 공 수 : 실동공수(實動工數) (예) 월 140MH/인당
- 다. 노무비 : 임율×실동공수(實動工數) (실지급 노무비의 70%회수)

《을설》

가. 임 율 : 실지급노무비 ÷ $\left(\text{총출근공수} \times \frac{\text{실동률}}{\text{총출근공수}} \right)$

- 나. 공 수 : 실동공수(實動工數)
- 다. 노무비 : 임율×실동공수(실지급 노무비 회수)

- 작업성격상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무(경비, 공무 등)도 야간 철야근무를 잔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계약물량을 입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무작업 공수{작업특기, 물량특기(特技)}는 직접공수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95('81.10.30)

- 직접노무비 계상방법을 “공수×임율”로 한 것 중 공수는 직접 노무인원

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공의 직접 및 간접 작업시간을 포함(별도 여유
을 결정시까지)하는 것이며,

- 작업성격상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비, 공무 등 부문에 대하여는 간접
노무비에 포함, 간접가공비율로서 계산되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되고,
- 계약물량을 입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무작업공수, (작업특기,
물량특기)는 직접공수로 처리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정상적인 재고감모비의 처리방법

질 의 : ○○정밀(주), 정해 제81-41호('81.10.5)

-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4조 제2항 “가”목에 부주의 또는 기술적
결함에 의한 재고 감모비는 비원가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정상적인
재고 감모비는 감손율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감손율에 반영될
수 없게 될 경우에 보조 재료비나 기타 회계처리하면 원가계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95('81.10.30)

- 규정 제4조 제2항 “가”(비원가항목)에 대하여 정상적인 재고감모품은
언급이 없는바, 이는 원가성을 인정하고 있어, 감손율에 반영할 수 있으
며, 감손율에 반영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보조 재료비 등으로 정상적
인 부문에 대해서만 원가에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기술개발비 준비금의 인정방법

질 의 : ○○정밀(주), 정해 제81-41호('81.10.5)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및 동시행령 제23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동 준비금의 설정 및 사용기준이 군수물자 원가계산기준의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해당한다면 동 준비금은 어느 시점에서 원가로서 인식되는지 하교 바라오며, 원가인식 후의 구체적인 원가산입방식에 관하여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95('81.10.30)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및 동시행령 제23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준비금을 인정할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점에서 당해 계약이행을 위하여서만 사용된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술개발비로서 원가에 산입이 가능함.

수입부대비용 인정 한계

질 의 : ○○정밀(주), 정해 제81-41호('81.10.5)

- 현재 군수업체로서 수입(출)업의 허가를 받을 조건이 안되어 필연적으로 수입 대행료가 발생되나, 수입부대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조항 문구의 “.... 등 공장까지의 반입에 부수되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포괄될 수 있어 “기타 수입부대경비”로 원가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1장 제1조 참조)
- “기타 수입부대경비” 중 수입어음결제수수료란 수입어음 결제율과 외국환대 고객 매도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물자대로 처리 않고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실제 은행계정 중에는 수입어음 결제수수료란 계정을 사용하지 않음)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95('81.10.30)

- 「규정」 제12조 제4항(수입부대경비)에 대하여,

- 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아 필연적으로 수입대행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기타 수입부대경비로 계상이 가능하며,
- 나. “기타 수입부대경비” 중 수입어음 결제수수료란 수입어음 결제율과 외국환대 고객매도율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물자대로 처리하지 않고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을 의미함.

기타 직접경비의 인정범위 및 절차

질 의 : ○○정밀(주), 정해 제81-41호(‘81.10.5)

- 기타 직접 경비로서 군수전용인 경우에
 - 가. 환율 차손
 - 나. 기술개발준비금
 - 다. 방산 전용건물, 구축물,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방법과 절차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95(‘81.10.30)

- 규정 제20조 제9항(기타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군수전용이라 할지라도 규정된 비목이외에는 직접경비로 계상이 불가하며, 별도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계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

기술개발비 및 시험연구비 계상방법

질 의 : ○○정밀(주), 정해 제81-41호(‘81.10.5)

- 기술개발비 중 연구개발비란 비목이 있는데 이 비목이 연구개발에 관련된 해당 제조원가 상당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내용들인지 여부

- 시험연구비는 기업회계에서는 이연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연처리하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어 균원가 비목 상 제조간접가공비로 처리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제비율 산정시나 원가계산시 제조경비 간접비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95('81.10.30)

- 기술개발비 중 연구개발비는 당해계약 목적물만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비목에 한하여 해당 제조원가 상당액으로 처리 가능하며
- 시험연구비는 기업회계에서는 이연자산으로 인정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에서는 간접경비로 조정 제비율 산정시나 원가계산시 제조간접비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방산용 수입원자재의 단가적용 방법

질 의 : 국방부 회계 1210.5-362('81.10.12)

- 당 부에서 계약예정인 35mm탄에 있어 그 수입원자재를 '79, '80년에 걸쳐 수입 비축하였는바, 현 회계규정상 단가적용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 재료비 단가적용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질의하고자 함.
 - 가. 비축 수입원자재 단가 산정시 비축시점을 기준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시점을 기준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나. 계약시점을 기준할 경우
 - 1) 계약시점에서 국제가격을 조사 계약시점의 환율을 적용 수입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는지(계약시점의 국제가격을 조사할 경우)
 - 2) 국제가격을 파악 불가능할 경우와 국제가격 파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재료가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곤란할 경우의 기준으로 하여야 할 국제가격은?
- 비축시점의 재료단가에 일정 금리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재무부 회계 1210-2068('81.10.26)

- 물품의 제조, 구매 등을 위하여 원가계산을 할 경우 재료비의 단가는 다른 법령(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가계산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가격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 귀부에서 적선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96('81.10.30)

- 수입재료의 가격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 가. 군수물자 원가계산의 주요 목적이 계약시점에서의 적정 수입가격 산정에 있으므로 원가계산 시점에서의 재료 수입가격에 원가계산시점의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 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나. 다만, 기 도입된 수입재료로서 원가계산시점의 적정재료 가격과약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원가계산시점의 적정재료 가격과약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재료가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의 기준정신(실발생비용 보상주의)에 비추어 재료구입에 따른 실지급 비용을 기준으로 재료 가격을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임.

사후원가관리시 임율적용 방법

질 의 : 조달본부 기획 1210-12854('81.10.17)

- 원가계산에 관련한 문제로서 당본부 조변품목 중 계약특수조건상 원가사후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여 원가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노무비 적용 임율이 정부노임단가인지 또는 업체 실지불 노임인지의 여부와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기준이 거래실레가격(가격조사) 또는 제조원가계산을 했을 경우를 구분하여 유권해석을 바람.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378('81.10.22)

- 원가사후관리(제조원가계산의 경우)를 할 경우의 노무비 적용임율에 대하여는 원가관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업체가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군특조법 제2조에 규정) 업체의 실지불노임을, 정부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1210-04-105-1.80.10.1)의 적용을 받을 경우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 관리하여야 할 것임.

연구개발비 인식범위 및 계산방법

질 의 : ○○(주), ○○ 제81-10-9('81.10.26)

- 당사의 연구개발실은 군용차량의 특수성을 감안, 군용차량에 대한 시험연구, 개발을 전담한 부서로서 군용차량의 시제생산과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는바, 당 연구개발실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답설 : 연구개발실의 발생비용은 전액(노무비, 경비, 시험부품비) 원가계산 기준규정 제15조 제12항 및 제20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을설 : 연구개발실의 발생비용을 원가요소별로 구분하여 노무비는 노무비로 처리하고 기타 비용만 규정 제15조 제12항 및 제20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개정 재무제표규칙 제31조의 이연(移延)자산 과목 중 개정 전의 개발비 계정이 시험연구비로 변경되었는바, 본 원가계산기준규정 제15조의 직접 경비 중 기술개발 시험연구비와의 구체적인 한계와 처리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410('81.11.12)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인식문제는 연구개발실에서 발생한 제반비용을 전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연구개발비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이를 발생원가 요소별로 구분하여 노무비는 노무비로서 처리하고, 기타 비용만을 연

구개발비로서 처리하여도 가능할 것이며, 이는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상이할 것임.

- 기술개발비와 시험연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인식방법은 기술개발비에 대하여는 규정 제20조 제6호에 의거 인식할 것이며, 그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시험연구비로서 처리해야 할 것임.

확정원가계산시 전년도 실적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기획 953-14478('81.11.26)

- 군수물자 및 일반물자 원가계산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회계질의하오니 하고자 함.

- 아 래 -

회계예규 1201.04-108('80.3.10)에서 수입품 원가계산시 현재 환율을 기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 본부에서 집행 예정인 「○○개량사업」의 경우는 '79년도 확정계약 후 '81년 6월까지의 발생실적에 대하여 사후관리한 결과를 기준으로 '82년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410('81.12.4)

- 귀부에서 질의한 원가문제에 대하여는 '82년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사전원가와 사후원가 비목에 대한 질의

질 의 : 기획 1210-14877('81.12.3)

- 사전원가계산시 누락되었던 비목을 사후원가계산시 추가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
가. 사전원가계산시 계상된 비목 수 자체가 절대적이 될 수 없는데도 사후원가 비목수가 사전원가 비목수와 일치해야 한다고 하는 고정 개념으로 정해 질 경우에는 사전원가의 의의가 상실될 경우가 있으며,
나. 사후원가계산시 당연히 발생되었고 인정될 수 있는 비목인데도 계상치 않는다면 이론상 설득력이 미약하여 조변이 곤란해 질 것으로 사료됨.

회 신 : 국방부 이재 1210-5('82.1.5)

-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참조

성실의무 불이행업체의 제재

질 의 : 장2원 953-324('82.1.2)

-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35조에서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율이라 함은 아래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가. 제조간접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나. 상기 “가”에 재료비 감손율 추가
- 군수업체가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등 4가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율의 10%를 차감토록 되어 있는바,
가. 1개 조항만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2.5%만 차액하는지
나. 4개 조항 중 단 1개 조항이라도 준수치 않을 경우에 10%를 차감하는 것인지

- 기본규정 제35조에 의한 성실의무 불이행업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도 국방부장관이 제재명령을 받은 후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율의 10%를 감하여 적용하는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29('82.2.15)

- 가. 규정 제35조에서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율이라 함은 간접가공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을 의미함.
- 나. 성실의무 불이행업체의 제재에 대한 규정은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4개 조항 중, 단 1개 조항이라도 준수치 않을 경우는 10%를 차감하는 것을 의미함.
- 다. 성실의무 불이행업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다만 타 기관(각 군 및 기타 조달부서)과 관련되거나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재를 명할 수 있음.

정산원가계산시 규정 적용시점

질 의 : 장2원 953-324('82.1.12)

- '80년도에 장기 개산계약을 결정하고 '81.12.31일 이전에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건에 대한 정산원가계산시 기준 적용을
 - 가. 구규정(군수심의안건 제63호)에 의하여야 하는지
 - 나. 신규정(군수심의안건 제107호)에 의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29('82.2.15)

-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의 정신에 의거 정산개시 시점을 기준하여 정산시점을 판단, 신·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구분회계의 판단기준

질 의 : 장2원 953-324('82.1.12)

- 민수와 구분회계를 실시하지 않는 군수업체가 방산전용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구분회계 실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당 본부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 군수업체에 대한 구분회계 실시여부를 판단하여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29('82.2.15)

- 종전까지는 구분회계 실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였으나 개정 규정에서의 구분회계 판단기준은 제30조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

상여금 상한선에 관한 회계질의

질 의 : 장2원 953-324('82.1.13)

- 군수물자 원가계산기준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노임단가 계산시 상여금을 400% 계산토록 되어있는바, 군수업체에 실지급 상여금이가. 여하한 경우라도 400% 계상하는지, 아니면나. 400%를 상한선으로 하여 실지급 상여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29('82.2.15)

-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상여금 400%에 대하여는, 400%를 상한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기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

수입물자 원가계산시 수입제세 원가산입 여부

질 의 : 한종특 제290호('82.2.8)

- 당사는 원재료인 고철과 부재료인 합금철을 CIF, FOB C & F 등의 조건으로 수입하여 이를 용해제강하여 다시 일정형태의 제품으로 가공하여 방산소재를 생산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입된 고철과 합금철의 수입원가계산 시 본 규정 제12조에서 (2)항과 물자대 (3)항의 관세 및 방산세 (4)항에 열거되어 있는 비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직접 수입부대비용으로 인정 지급된 금액을 전액 합산하여 수입원가를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 관세 원가산입 문제

갑설 : 실 지급된 관세는 방위세와 같은 수입제세이며 간접가공비율 계산시 직접재료비에 가산된 직접비이므로 당연히 직접재료에 포함되도록 수입 원가계산에서 합산 계산함.

을설 : 간접가공비율이 적용 안되도록 별도 구분회계 제조원가에 합산함.

병설 : 관세는 수입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합산하면 안됨.

나. 수입부대비 인정 문제

갑설 : 수입계약 및 수입조건에 따라 수입항구가 부산, 마산, 창원 등으로 수입될 때 수입항구별로 부대비요율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case by case로 요율을 적용하여 발행된 증빙서에 의거 지급된 본 규정 12조에 열거된 필요 최소한의 수입 부대비율은 계상된 대로 합산원가계산을 할 수 있음.

을설 : 수입항구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요율을 적용계산하여 산출된 비용만으로 수입부대비를 계산 수입원가를 산출하여야 함.

객관적으로 볼 때 일정기준 요율로 계산한다는 것은 본 원가계산 규정과 상반된 의견이고 회계원칙상에도 모순이 되며 견적원가가 아니고 실제 수입원가계산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고 사료됨.

다. CIF, FOB, C & F 등으로 수입될 때

갑설 : CIF, FOB, C & F 실제 그대로 계산하여야 함.

을설 : CIF, FOB, C & F 조건일 경우 CIF로 환산 계산하여야 함.

FOB, C & F 일 경우 실제로 도착지에 따라 CIF 환산방식이 달라져야 하므로 환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7('82.3.8)

○ 원가계산기준규정 제12조의 수입물자 수입가격 계산 중

가. 관세의 원가산입 문제에 대하여는 원가계산기준규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관세는 수입제세에 포함되는바, 실지급된 관세는 수입품의 수입가격에 포함 계산되어야 함.

다만, 일반관리비나 이윤계산시는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별도 구분 계산해야 할 것임.

잔업수당 계상(인정) 방법

질 의 : 표원 964.4-1822('82.2.16)

○ 현재 당 본부에서는 노무비 계산시 잔업시간에 대한 잔업수당(기준급+할증금) 중 기본급은 인정하고 할증금(50%)만을 부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잔업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인정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잔업수당의 인정한계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49('82.3.8)

○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잔업수당으로 전반적으로 부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가. 계약기간 중의 인정 가능한 정상공수(1일 8시간, 1개월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하의 잔업공수에 대한 전업수당은 잔업기본급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 나. 국방부 장관이 긴급 생산지시(계약조건에 명시된 경우도 포함)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잔업기본급 및 잔업할증급 모두 인정할 수 있고,
- 다. 정상공수를 초과하는 전업공수의 잔업수당에 대하여는 잔업기본급 및 잔업할증급 모두 부인되는 것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의 구분

질 의 : 표원 964.4-1822('82.2.16)

- 노무비 계산시 운반공, 검사공, 시험분석공, 직장(職長), 반장(班長), 소모성 치공수, 게이지 금형제작공을 직접노무비로 할 것인지 또는 간접노무비로 할 것인지의 구분 한계는?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49('82.3.8)

- 일반적으로 운반공, 검사공, 시험분석공, 소모공구·게이지 제작공은 간접노무비로 직장, 반장, 금형제작공은 직접노무비로 인식이 가능함. 직접생산공정에 비치되어 작업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운반 및 검사 인원에 대하여는 직접노무비로 계상이 가능함. 다만 제조현장에 있지 아니한 인원(표본검사요원 및 별도 검사부처 인원 등) 및 보조 또는 지원부서의 운반공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로 인식함이 타당함.

직접노무비의 상여금 상한선 책정

질 의 : 표원 964.4-1822('82.2.16)

- 상여금 계산시 400%를 인정토록 되어 있는바, 400%가 고정율인지 상한

선인지의 여부 및 400%가 상한선일 경우 사전 확정 원가계산시 어떠한 방법으로 상한선을 책정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49(82.3.8)

-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다”의 상여금에 대하여는 400%를 상한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기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이윤계산 방법

질 의 : 표원 964.4-1822(82.2.16)

- 이윤 계산시 재료비를 제외한 총원가에 이윤을 부과하는 경우와 전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에 이윤을 부과토록 2개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부적정 판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49(82.3.8)

- 규정상 부가원가(재료비를 제외한 총원가)법을 원칙으로 하며, 이 원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원가법을 인정하고 있는바, 82년도에는 부가원가에 대한 개념 미 정립과 자료의 불충분으로 총원가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구입완성품과 구입부품의 구분 필요성과 용어 정의

질 의 : 표원 964.4-1822(82.2.16)

- 현 원가계산규정상 구입완성품과 구입부품 구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 및 구분 필요성이 있다면 구입완성품과

구입부품을 구분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는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49('82.3.8)

- 주요 재료를 구입완성품과 구입부품으로 구분한 이유는 직접재료비의 계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입완성품은 한 개의 부품이 독자적으로 제조 목적 달성을 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며, 구입부품은 한 개의 부품으로는 그 제조목적 달성을 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부품으로 연결 관련되었을 때, 비로소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개정된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에 있어서는 구분의 필요성이 없음.

수입비축용 원자재 사용시 산정방법

질 의 : 표원 964.4-1822('82.2.16)

- 수입비축용 원자재 사용시 재료비 산정방법은 사용시점의 가격을 기준 하도록 되어있는바, 사용시점의 가격(F.O.B단가) 책정시 무엇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상기 사항에 관련된 수입부대비용(보험료, 운송료, 기타 부대비용) 책정시 무엇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49('82.3.8)

- 수입비축 원자재의 사용시점(계약시점)에 대한 재료비 인식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용시점의 「오파가격」에 의하고, 「오파가격」인식 불가능시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수입부대비용은 「오파가격」(또는 구입가격)에 법령에서 정한 수입부대비용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

간접재료비의 계산방법

질 의 : 표원 964.4-1822('82.2.16)

- 간접재료비 계산시 정확한 소요 원단위 산정이 불가하여 실적자료를 근거로 적정 배부율 기준에 의한 배부계산이 합리적인 계산으로 사료되어, 현재 시행 중 인바, 국방부로서의 통일된 배부기준 설정에 관한 지침시달 요망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49('82.3.8)

- 현재 귀 부서에서 시행 중인 실적자료를 근거로 적정 배부율 기준에 의한 배부계산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간접재료비의 특성상 통일된 배부기준을 설정하기는 곤란함.

기술개발비 계산시 발생비용 인정여부

질 의 : 표원 964.4-1822('82.2.16)

- 직접경비(제20조 6항) 중 기술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 계산시 발생비용 전액을 인정하는지, 일부 제한하여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일부 제한하여 인정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인정 한계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49('82.3.8)

- 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는 규정 제20조 6호에 의하여 처리

군수물자 수출물량분을 동시 생산하는 경우의 전용기계장치 인정여부

질 의 : 표원 964.4-1822('82.2.16)

- 전용기계장치로서 군수물자 및 군수물자 수출물량을 동시에 생산할 경우 전용기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49('82.3.8)

- 군수물자 및 군수물자 수출물량을 동시에 생산할 경우의 기계장치는 전용기계장치로 인정 가능하며, 다만 원가계산시 수출물량분에 대한 제비용을 배부하여 공제 계산해야 할 것임.

발전기류 감손율 책정 시달 요청

질 의 : 표원 953-3048('82.3.16)

- '82년도 감손율 책정 시달(통보)된 발전기류의 감손율 책정은 1.5Kw, 5Kw의 2개 품목만 명시되어 있어 동 품목은 원가계산상 적용 가능하나 별첨과 같은 21개 품목에 대하여는 감손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가계산이 불가능한 실정임. 동 21개 발전기는 각 제품과 특수성에 따라 규격별 부품의 명칭 재질, 규격이 서로 상이함으로써 적용상 유이 품목도 없으며 당해 품목 평균율의 적용도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전 품목에 대한 감손율을 조속히 책정 시달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 국방부 원가 953-60('82.3.24)

- ○○기계(주) 감손율 미책정 품목 21개 발전기에 대한 감손율은 '82년도 감손율 책정시달의 시행지침에 의거 소관 재무관 책임 하에 유이품목의 감손율을 적용토록 할 것.

수입완성품 및 수리부속품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방법

질 의 : 장2원 953-324('82.3.16)

- 수입완성품(군수물자) 또는 주장비(군수물자)의 수리부속품(구입)을 주장비 지정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시
가. 군수물자원가계산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과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윤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불가하다면 그 계산방법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29('82.2.15)

- 군수물자의 구입완성품 또는 주장비의 수리부속품을 주장비 지정업체와 계약시 군수물자원가계산규정 제23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과 제25조에 의한 이익률을 계상할 수 있음.

제비율 미책정 업체에 대한 추가시달 요청

질 의 : 표원 953-3048('82.3.16)

- '82년도 적용 군수물자 제비율 결정하달(통보)된 내용 중 제비율이 된 업체는 동종 업종의 평균수집율을 적용토록 제시된 바 있으나 아래 품목은 동종 유사품목 생산업체가 없으므로 원가계산을 위한 적용 제비율을 책정 시달하여 주시기 바람.

생 산 업 체	대 상 품 목	비 고
○ ○ 기 계 (주)	정수 기구 세트	생산 단일 업체

회 신 : 국방부 원가 953-60('82.3.24)

- 「○○기계」의 제비율 책정에 대하여는 '82년도 책정된 제비율은 품목별

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책정된 것이므로 당해업체에서 제조 생산하는 제품에 관련 없이 정하여진 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 “나”항 관련근거(시행지침 : 총포부문에 해당) 적용토록 할 것.

원가산정상 불량을 인정에 관한 건의

질 의 : 장원 953.2-50(‘82.3.17)

○ 관련근거 :

가.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10조 5호

(군수심의건 제107호 : ‘81.6.13)

나. ○○(주) 제08호(‘82.2.10)불량을 인정에 관한 건의

다. 국방부 원가 964.4-56(‘82.2.10) 발전기 감손율 인정 건의에 대한 이첩 하달

○ 위 근거 “가”항에 의거 “군수물자 재료비 계산시 구입부품의 원단위에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일정률을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 당국은 침부계약 및 정산현황 중 2차분 즉 150대에 대하여 수입부품에 대한 사후관리조건부 확정계약을 장비2국에서 이관 받아 정산함에 있어, 위 “가”에 의한 감손율이 미 책정되어 있고 불량내용이 대부분 업체귀책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인처리 정산하였는바, 계약업체가 상시 “나”로 국방부에 민원제기하고, 상기 “다”로 국방부에서 다시 당 본부에 이첩지시 되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처리지침을 조속히 회신 바람.

○ 질의요지

업체 요구대로 1, 2차 계약분 500대에 대한 감손율을 소급 인정할 수 있는지

- 인정가할시 인정범위 및 근거(회계적, 법적)

- 감손율 인정 방안

회 신 : 표원 953.2-40(‘82.3.24)

- 수입품 불량률 소급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가. 계약이행 완료분에 대하여는 감손율 소급인정에 관한 별도의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소급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 나. 사후원가관리조건부 확정계약분의 사후정산에 관해서는 감손율 적용에 관한 별첨 회계질의 공문을 참조 처리바람.
- 별첨 : 국방부 회계 964.4-204(‘81.7.6) 및 국방부 회계 964.4-357(‘81.10.5)

관급부품의 감손분(손실율, 시료율 및 불량률)에 대한 원가산입 여부

질 의 : 표원 964-5034(‘82.4.26)

- 「수류탄과 40mm유탄」의 제조 납품을 위하여 부품을 관급업체로부터 정량(定量) 지급받아 생산하고 있으나 감손분이 발생하므로 이를 관급업체에서 사급으로 구입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감손분(손실율, 시료율 및 불량률)에 대한 원가산입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02(‘82.5.18)

- 관급부품의 감손분 원가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 가. 부품을 특정업체로 하여금 정량(定量)지급(관급)케 하여 생산납품하게 하는 업체의 경우, 공정상 필수적으로 필해야 하는 시험과 조립, 기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관급품의 감손분에 대하여는 계약시 그 감손분을 고려한 적절한 소비량을 재료량(비)으로 인정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타당할 것이나,
 - 나. 계약시 재료의 감손분을 고려한 적절한 소비량을 재료량(비)으로서 인정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서 사급으로 감손분을 보전하였을 경우에는 관급부품의 감손분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임.

운반 및 검사인원 직접노무비 계상여부

질 의 : 표원 964.4-5035('82.4.26)

- 운반공에 대하여
 - 가. ○○화약(주)의 경우에 원료의 주입, 공정간의 이동, 연결 및 완성공실까지의 이동과
 - 나. ○○금속(주)의 경우에 제조현장에서 공정간의 공정품 운반인원 등을 직접노무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검사공에 대하여
 - 가. ○○화약(주)의 경우에 공정상의 조립전약상태 및 부품검사, 조립 후 상태검사, 게이지 등에 의한 조립 전 치수검사 등과
 - 나. ○○금속(주)의 경우에 제품생산공정의 직접기계에 의한 100% 검사, 생산공정에 고정 배치되어 게이지로 검사하는 공정, 최종검사, 부품 공정품 및 완성품의 검사, 탄도검사공(정확도, 속도, 압력) 등을 직접 노무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98('82.5.11)

- 직접노무비 인식방법에 대하여는 “원가 964.4-49('82.3.8) 원가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거 1차 회신 하였는바, 회신내용 중의 “구체적인 경우”란 운반공, 검사공이라 할지라도 제조공정상에서 직접 당해 제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공일 때에는 직접노무비로 인식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따라서 직접 생산공정에 배치되어 작업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운반 및 검사인원에 대하여는 직접노무비로 계상 가능함.
다만, 제조현장에 있지 아니한 인원(표본 검사요원 및 별도 검사부서 인원 등) 및 보조 또는 지원부서의 운반공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로 인식함이 타당할 것임.

상여금의 계상 방법

질 의 : 표원 953-5681('82.5.10)

- 「규정」 제14조 1호 “다”(상여금은 년 400%)의 상여금 계상에 대하여 원가 964.4-29('82.2.15)의 질의회신에 의거하면 과거 3년간의 기업실적을 기준 년 400%를 상한으로 하여 계산토록 되어 있는바,
 - 가. 상여금 계산시 기본급여금에만 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 나. 기본급여금에 “잔업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연장수당, 공휴수당, 휴일수당, 직책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불실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다. 전 “나”항의 제수당을 인정할 수 없을시 기본급여금의 한계는?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06('82.5.20)

- 상여금의 대상은 기본급여금에 한하여 계산해야 할 것이며 다만, 기업의 임금체계의 특성에 따른 기본급여금의 한계에 대하여는 기업 실지급 노무비를 기준 귀 본부에서 적의 판단 처리할 것.

대공표적기 불량률 적용에 대한 재질의

질 의 : 표원 953-5680('82.5.10)

- 대공표적이 불량률 적용은 제품과정별로 산정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납품 시험비행에 따른 불량률은 완성품에 대한 불량률이므로 총원가 불량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 가. 이 경우 총원가에 불량률(시험비행 불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위 “가”항이 적용 가능하다면 연간 시험비행대수에 대한 완파, 부분품 파손(시험비행시 소요군 확인)을 집계하여 평균 불량률을 산정,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12('82.5.28)

- 원가계산 기준상 규정하고 있는 감손율(불량률 등)은 재료 표준소비량 책정의 합리적 계산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원가계산상의 불량률은 원칙적으로 재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할 것임. 따라서 납품시험 비행에 따른 완성품 불량률은 원칙적으로 원가계산상으로는 부인되어야 할 것임.
-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의 추가부담이 예견될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명기하여 추가 발생비용에 대한 한계(정부 및 기업부담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총원가 적용은 불합리하며, 제조원가에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 범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임.

외화로 표시된 관급품(재료, 완성품)의 평가방법

질 의 : 표원 953-5681('82.5.10)

- 관급품(재료 및 완성품)의 가격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의 환율적용에 대하여
 - 가. 사전 확정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시 어느 시점을 기준하여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나. 사후 정산원가계산시 어느 시점을 기준하여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06('82.5.20)

- 관급품(재료, 완성품)의 가격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환율적용에 대하여는 사전 확정 또는 사후 정산계약에 관계없이
 - 가.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21조 간접가공비 계산을 위한 관급전용기계장치 등 인식 문제일 경우에는 관급시점 기준 환율을,

나. 기타 제비용 계산을 위한 관급품(재료 및 완성품)원화 가격 인식 문제일 경우에는 계약시점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할 것임.

“국방부장관 긴급생산지시” 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

질 의 : 표원 953-5681('82.5.10)

- 「규정」 제14조 1항 제1호 “나”의 “국방부장관이 긴급 생산지시”에 대한 질의·회신(원가 964.4-49 : '82.3.8)에 의하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 경우는 국방부장관의 긴급생산지시로 가름할 수 있는 바,
가. 별첨내용과 같이 생산감독관을 파견하여 소요 인시수를 확인토록 계약특수조건상 설정된 경우, 생산감독관으로 하여금 인정된 소요 인시수를 긴급생산지시로 가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자 할 경우의 구체적인 명시 방법 및 내용을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06('82.5.20)

- “국방부장관의 긴급생산지시”에 대하여는 계약특수조건상 생산감독관을 파견 소요인시수를 확인토록 하는 것만으로는 “국방부장관의 긴급생산지시”로 갈음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의 정상작업시간 내에 계약 목적물의 완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특수조건상에 “긴급생산지시 또는 긴급조변지시”라고 하는 문구가 삽입되므로써 비로소 “국방부장관의 긴급생산지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는 귀 본부에서 적의 처리할 것.

전용 기계장치 및 치공구의 적용 구분

질 의 : 표원 953-5681('82.5.10)

- 관련근거 제20조 7호의 전용 기계장치 및 치공구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

- 다 음 -

구 분	사 업 명	실 적
제 1 공 장	○ 3252 사업	과거 일부 민수기(民需機) 조립생산 및 정비 실적이 있음
제 2 공 장	○ 창 정 비 ○ 707 사업	"
제 3 공 장	○ 미군기 정비	
제 4 공 장	○ 1, 2, 3 공장지원	

- 가. 위 제 1, 2공장이 과거 일부 민수기 조립생산 및 정비실적이 있는바, 제 1, 2공장의 기계시설 및 치공구의 군수전용 인정 여부
- 나. 제4공장이 제1, 2공장의 제3공장을 지원하는 경우 제4공장의 기계시설 및 치공구의 군수전용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06('82.5.20)

- 전용 기계장치 및 치공구에 대하여는 군수공장에 민수실적이 비경제적 감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지원공장 군수공장 전반을 지원하되 일부 군수물자 또는 용역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군수전용공장으로 인정하되, 민수 또는 수출 실적부분의 비용 배분을 정확히 해야 할 것임.

원가계산시 금형비 인정범위

질 의 : 표원 964.4-8847('82.7.15)

○ 원가계산시 금형비 인정범위에 관하여

가. 업체의 자산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원가산입 인정 여부

나. 자산대장에는 미등재되어 있느냐 실제로는 금형비가 발생되어 확인되는 금형현품이 있을 경우의 원가산정 인정여부 및 범위

1) 자체 금형이력카드를 유지할 경우

2) 자체 금형이력카드 전무한 경우

다. 기타 인정범위 및 기준?

회 신 : 국방부 회계 964.4-156('82.8.4)

○ 금형이 자산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원가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금형이력카드의 유지여부에 관계없이

가. 기존금형에 대하여 금형이 자산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1)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부외자산으로 남아있을 경우

2) 회계처리 미달에 따른 장부기재 누락

3) 당기(당해계약) 비용(원가)으로 처리하므로 자산대장에 등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바, 상기의 경우 금형비 또는 금형상각비의 당해 계약에 대한 원가(직접비) 인정은 불가하다 할 것이며

나. 다만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신규제작 또는 구입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금형비 또는 금형상각비를 당해 계약의 원가로서 인정 불가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자산대장에 필히 등재처리 하여야 할 것임.

재고(완성)품 원가계산에 관한 질의

질 의 : 표원 964.4-8848('82.7.15)

- 군수물자를 '80년 4월 이전에 이미 제조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물량이 감소되어 감소된 물량을 군수업체의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정가격을,
가. '80년 4월 당해 원가에 의하여 작성할 것인지,
나. 아니면 현행 군수물자 원가계산규정 제18조 취지에 의거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을 적용 계산하여 작성할 것인지,
다. “가”, “나”항이 아니면 그 기준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51('82.7.27)

- 위 근거에 의거 질의한 군수물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기준은 원가계산시점 기준가격을 적용 계상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재료의 원(原)단위 및 소요 노무공수는 과거 실적기준(대량생산시)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것임.

교육훈련비의 직접경비 인정여부

질 의 : 표원 964.4-10601('82.8.24)

- 신 규정에서 교육훈련비는 간접경비로 규정됨에 따라 직접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나 금년도 신규사업(○○탄 정비)은 군특 제2283 TRMF 운영방침 통보('81.9.7)에 의거 교육비를 원가에 반영토록 되어있는바, 이를
가. 간접경비로 산정할 것인가?
나. 직접경비로 산정할 것인가?
다. 기타 방안
- 대미지불액(교육비 포함)은 신 규정에서 직접경비로 되어 있는 기술개발

비(해외 기술자 초청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타 방안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76('82.9.2)

-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15조 제1호 및 제20조 제6호의 기술개발비는 당해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직접 지출되고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등으로서 직접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 제15조 제2호의 교육훈련비는 당해 제품과 직접관련이 없는 전반적인 교육훈련비로서 간접비로 인정하고 있는바,
- 따라서 본 질의내용의 교육훈련비 및 대미지불액이 당해 제품에 국한된 비용일 경우에 한하여 위 제2항의 규정 정신에 의거 직접경비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임.

사후원가관리시 수입품 환율적용 시점

질 의 : 표원 964.4-10602('82.8.24)

- 사후 원가관리조건부 확정계약에 따른 사후원가계산 시점은?
 - 가. 사전 원가계산시점 환율
 - 나. 업체 실발생 환율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77('82.9.2)

- 수입품 환율 문제에 대하여는 당초 사후관리를 계약조건으로 명기할 기본정신에 따라 재무관이 판단처리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사후관리조건을 명기할시 수입품에 대한 환율을 계약당시의 환율로 확정하고, 외자표시 가격만을 정산 관리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원가계산시점 환율을 적용해야 할 것임.

사후원가관리시의 수입물자 환율적용 시점에 관한 문의

질 의 : 표원 964.4-11774('82.9.20)

○ 관련근거 : 국방부 원가 964.4-177('82.9.2)

○ 위 관련근거로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에 의하면 “사후원가 조건을 명기할시 수입품에 대한 환율은 계약당시의 환율로 확정하고 외화표시 가격만을 정산 관리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원가계산 시점을 적용해야 할 것임”으로 회신된바, 나. 계약특수조건에 수입품 환율의 적용시점 명기와 관계없이 확정계약에 대한 사후원가 관리는 확정계약시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는 것으로서 특정부문, 특정비목, 불량률 및 노임단가 등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기 회계질의 회신내용과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불가 및 환차손 보전에 대한 특례설정건의 불가회신 등 국방부장관 지시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사전 확정계약시 환율변동은 계약쌍방간 기인식할 수 있으므로 사전원가계산 시점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 1) 계약특수조건 내용과 관계없이 사전원가 계산시점의 환율로 적용 하여야 할 것인지.
 - 2)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환율적용 시점을 사전원가계산 시점으로 명기하였을 경우에만 사전원가계산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 재무관이 계약특수조건에 환율적용시점을 명기할시 원가계산시점과 수입물자 도입시점 중 어느 시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결정방법인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89('82.9.21)

○ 표원 964.4-11774('82.9.21)와 관련임.

○ 위 관련근거에 의거 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후관리조건

부 확정계약은 사전에 그 원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환율은 원가계산시점의 환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사후원가관리시 수입물자 환율적용 시점에 대한 재질의

질 의 : 표원 964.4-12192('82.9.29)

- 관련근거 : 원가 964.4-12193('82.9.29)
- 사후원가관리시 실발생환율이 사전원가계산시점 환율보다 하락했을 경우에도 사전원가계산시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후원가관리조건부 장기계약(2~4년)의 경우 사전원가계산시점의 환율을 적용시 지대한 환차손발생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여도 사전원가계산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 사후원가관리조건부 확정계약(장기계약 포함)분에 대한 정산시에도 사전원가계산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210('82.10.12)

- 사후원가관리에 따를 환율적용 시점에 대하여는 사후원가관리조건시 환율에 관한 특별한 요건이 없는 한 사전원가계산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 것임.

○○○사업 정산적용 기준

질 의 : 표원 964.4-13300('82.10.22)

- 관련근거 :
 - 가. 전관 963-69('80.11.20) ○○○사업

나.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군수심의회의안건 제63호 '79.1.13)

다.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군수심의회의안건 제107호 '81.6.13)

- 위 근거 “가”로 군수조달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후정산조건부 장기상한선 고정계약”을 체결집행토록 지시된○○○사업은 위 지시에 의거 '80년 기준 추정원가를 산출 아래 예시방법과 같이 연도별 지시된 일정 물가상승율을 승한 단가로 계약 체결되었으며 이는 장기계약으로서 일종의 개산계약 개념에 의거 정산토록 계약체결된 바 있음.

- 아 래 -

'80년 추정원가	'81 계약가	'82 계약가	'83 계약가
100원	'80년 계약가 100원 물가상승율 15% 15원	'81년 계약가 115원 물가상승율 10% 11.5원	'82년 계약가 126.50원 물가상승율 10% 12.65%
	계 115원	계 126.50원	계 139.15원

- 본 계약분의 정산적용 기준은 구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신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가.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군수심의회의안건 제62호 '79.1.13 구 규정)을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동 구 규정을 적용 정산시 제잡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연도별('82, '83) 해당 업체가 적용한 제잡비율은?
나. 현행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군수심의회의안건 제107호 '81.6.13)을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218('82.11.5)

- 근거 : 표원 964.4-13300('82.10.22)과 관련임.
- 위 관련문서에 의거 질의한 신, 구 규정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군수물자

원가계산기준규정 등 회계관계 법규의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판단상의 문제임으로 실제계약을 체결한 재무관이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분할납품의 경우 정산원가계산의 시기는

질 의 : 표원 964.4-13301('82.10.22)

- 관련근거 :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28조 제2항
- 정산원가계산은 납기이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일품목을 아래와 같이 두가지 유형으로 분할납품을 실시하도록 계약체결된 바 있음.
 - 가. 장기분할납품(예 : '80. 9월 계약체결 후 '81.1.1~'82.12.31 기간 중 6회 분할납품)
 - 나. 단기분할납품(예 : '82. 1월 계약체결 후 '82.2.1~'82.12.31 기간 중 3회 분할납품)
- 위 항에서 2가지 유형의 계약조건인 경우 정산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정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 중 각각 어느 시기에 하여야 할 것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 가. 매 납기마다 정산
 - 나. 최종 납기를 기준으로 1회 정산
 - 다. 매 6개월마다 정산
 - 라. 매년도 최종납기 1회 정산
 - 마. 기타 방안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210('82.10.12)

- 분할납품계약의 정산시기 여부에 대하여는 매 납기마다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회 분할납품시 정산업무량의 과다로 인하여 분할정산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는 재무관이 적선 판단처리 할 것.

상여금 계산기준에 대한 질의

질 의 : 표원 964.4-13598('82.10.28)

○ 관련근거 :

가.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군수심의회의안건 제107호 '81.6.13)

나. 국방부 원가 964.4-49('82.3.8)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질의에 대한 회신

다.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해설집

- 위 근거 “나”에 의하면 “가”의 상여금에 대하여는 400%를 상한으로 한 과거 3년간의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있고 위 근거 “다”에 의하면 “원가계산시점에서 연간 실지급액의 확인이 불가능시는 지급예정 등의 사유로 인해 과거 3년 평균지급율을 400%를 상한으로 인정 한다”고 되어 있는바, ○○중공업의 경우 ○○양행에서 ○○중공업으로 등기 이전시점이 '80.10.23일이며 상여금 지급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구 분	'79 년	'80 년	'81 년	'82 년
회 사 명	○○양행	○○중공업	○○중공업	○○중공업
지급실적(%)	0 (%)	200 (%)	400 (%)	현재 200 (%)

- 원가계산 적용상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가. 과거 3년간 년 평균 상여금 지급실적 20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나. ○○양행이었던 '79년도 지급실적을 제외하고 '80년, '81년 2년간의 연평균 상여금 실적 30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다. '80년, '81년과 '82년 현재 300% 지급실적을 평균하여 30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라. '82년 현재 상여금 지급액의 확인이 가능한 30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마. 기타 방안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224('82.11.13)

- 근거 : 표원 964.4-13598('82.10.28)과 관련임.
- 위 근거에 의거 질의한 상여금 계산기준에 대하여는 귀 본부의 질의공문 "3"의 "나"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군수물자 원가계산시 기계장치의 직·간접경비 구분

질 의 : 표원 964.4-3125('83.3.17)

- 관련근거 :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제20조 제7항)
-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군수전용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직접경비로 군수, 민수 병용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간접가공비(율)로 적용 계산토록 되어 있음.
- 병용기계장치는 '82년도 간접가공비율 책정시에는 미 반영되어 병용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직접경비로 계산처리 한 바,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가. '83년도 적용 간접가공비율 책정시 병용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82년도와 같이 직접경비로 계산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간접경비로 계산하였는지의 여부?

나. '83년도 적용 간접가공비율 책정시 병용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제외되었을 경우, 병용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직접경비로 계산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69('83.4.18)

- 병용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20조 7호에 의거 직접경비로 인정 불가능함. 다만, 간접가공비 계산시에만 작년도 수준으로 직접가공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임.

국방부 직할 연구기관과의 물품계약시 원가계산

질 의 : 총탄원 953-6050('83.5.23)

- 국방부 관리유지비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방부 직할 연구기관과 계약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기준규정이 아래와 같이 미비되어 원가계산이 곤란하오니 조속 지침을 하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아 래 -

- 가.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의 원가요소별 인정 범위
- 나. 간접가공비율 및 일반관리비율 이익률 설정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90('83.5.31)

- 위 건의한 내용 “가” 원가요소별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재료비와 비용(외주가공비, 운반비, 보험료, 조세공과 등)에 대하여 원가로 인정 가능하며
- 질의내용 “나” 제비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기관은 정부예산에 의해 운영 유지되는 기관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임.

군수업체 통관료의 인정여부

질 의 : 표원 964.4-6074('83.5.24)

- 관련근거 :
 - 가. 군수물자 원가계산기준규정 제12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 나. 관세법 제13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화주 직접 신고요령(관세청 고시 제83-327, '83.4.7)
- 위 관련근거 “가”에 의거 군수물자 원가계산시 통관료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위 관련근거 “나”에 의하면 방위산업용 물자에 대하여는 방위산업체에서 직접 수입신고가 가능함으로 원가계산시 통관료의 인정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90(‘83.5.31)

- 통관수수료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방위산업체는 관세청 고시 제 83-327(‘83.4.7)에 의거 직접신고가 가능하므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보상하는 군수물자 원가계산기준규정의 기본 취지에 입각할 때 원가성을 부인하여야 할 것임.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질 의 : 국방부 원가 964.4-99(‘83.6.4)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계약금액 또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비목의 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 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5/100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를 해석함에 있어

갑설 : “계약금액” 또는에서 계약금액 특정비목(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제1항 1내지 4호) 외의 가격증감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5/100이상 증감되었을 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는 설
을설 : 계약금액의 조정은 특정비목의 증감에 한하여 조정 가능하다는 설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질의내용 “1” 외의 예산회계법 관계법령상 환율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근거와 방법이 있는지?

회 신 : 재무부 회계 1210-2132(‘83.7.7)

- 환율 자체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항 각호의 가격이나 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도 아님.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 등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금액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었을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국방부 지침(원가 964.4-138 : '83.8.20)

가. 계약금액 조정방법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에 의함.

나. 계약금액 조정대상 : '83.4.1 이후 체결한 계약분

군수물자 구입재료의 가격 적용

질 의 : 표원 964.4-8647('83.7.18)

- 군수물자 완성품을 구성하는 구입재료(원자재, 구입부품, 구입완성품)의 가격은 구입재료의 성격과 관계없이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13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의 단위당 가격을 적용하여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완성품의 제조업체(계약상대자 “을”)가 제3자(“병”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재료 중 일부 품목이 군수물자로 지정된 물품인 경우의 원가계산시
 - 가. 구입재료가 군수물자의 지정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6조에 의거 단위당 가격을 적용하여 계상함이 타당한지 또는
 - 나. 구입재료 중 군수물자 지정물품은 거래실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에 의거 구입물품의 원가(“병”업체의 원가)를 계산하여 그 규정에 구입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군수물자로 지정된 만엔진의 직접구매를 위한 원가계산시 장비의 주요부품인 기본엔진은 민수 상용품으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 가.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기본엔진은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고

취부, 탈거 부분만을 별도로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에 의거 원가 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나. 취부, 탈거 부분은 물론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기본엔진까지도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28('83.8.8)

- 위 질의 1에 대하여는 “병”에 대하여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 질의2에 대하여는 군수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나
- 질의 1, 2의 경우 모두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양자의 가격을 비교, 국가의 이익되는 낮은 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건설이자의 원가산입 여부

질 의 : 표원 964.4-11005('83.9.8)

- 군수물자 전용 기계장치 및 치공구상각비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서 인정한 건설자금 이자가 전용 기계장치 및 치공구 취득가액(장부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49('83.9.14)

- 건설자금이자의 원가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의 원가성은 인정하되 해당연도에 건설 또는 산입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배부토록 하여야 할 것임.

방산전용 금형파손에 의한 신금형제작비 원가인정 여부

질 의 : 표원 964.4-15623('83.12.17)

-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20조 7항에 의한 금형 비인정범위는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형을 새로이 제작 또는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에 대한 상각비를 원가로 하게 되어 있음.
- 방산전용 금형을 5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함에 있어서 2년간은 감가상각을 하고 잔여기간은 상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손되었을 경우,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새로 제작 또는 구입한 금형의 상각비를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96('83.12.24)

-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새로 제작 또는 구입한 금형의 상각비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20조 7항에 의거 계상하되, 다만 업체의 부주의 또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방산업체 구분회계 실시여부

질 의 : 표원 964.4-15792('83.12.20)

-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30조 및 제비율 책정하달에 의거 각 방산업체의 '82회계년도 기준 방산, 민수 구분회계 실시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97('83.12.27)

- 방산업체 구분회계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32조에 의거 재무관이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임.

기업합병시 제비율적용 방법

질 의 : 표원 964.4-243('84.1.10)

- 방산업체인 D기업과 T기업은 국방부장관이 하달한 각각의 상이한 제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D기업과 T기업이 흡수병합된 경우의 제비율 적용은 아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2('84.1.17) 대외비 참조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위한 현물변제 가능여부

질 의 : 국방부 이재 1210-892('83.10.12)

- 조달본부는 (주)○○기계의 대공표적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지급이 종료되었는바,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동 업체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였으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2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였던바, 동 업체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으로 현금변제가 불가능하여 현물로의 변제가 가능한 경우, 수요군에서 필요한 소요물량을 감안 현물변제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신 : 재무부 회계 1210-3033('83.10.20)

- 국가에 납부하는 세입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그 납입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채권관리법 등에 정한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됨.

국고금 단수계산 방법

질 의 : 부산시 회계 1210-509('84.2.9)

○ 국고금 단수계산법 시행에 따라 국고금 지출시(계약업무집행) K업자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 징구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가. 각종도급금액 지급에 따라 일반과세자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지출결의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는바,

(사 례)

공급가격이 23,579원, 부가가치세액 2,357원(총액 25,936)인 물품을 구입한 경우

갑설 : 공급가격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 25,936원에서 6원을 절사, 지출금액 25,930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상에는 공급가격 23,579원, 부가가치세액 2,357원 계 25,936원으로 기재

을설 : 공급가격 23,579원 중 9원과 부가가치세 2,357원 중 7원을 각각 절사한 금액 25,920원을 지출액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은 23,570원 부가가치세액은 2,357원, 계 25,927원으로 기재

회 신 : 재무부 회계 1210-434('84.2.16)

○ 지출결의서 작성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는 각각 원단위까지 나타내 되, 그 합계액은 10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금액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각각 원단위까지 나타내되, 그 합계금액란에는 10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고 비교란에 관납으로 인한 단수조정의 표시를 할 수 있음.

직접경비 계산에 대한 질의

질 의 : 방진회 진흥 1000-330호('84.4.16)

- '84년 적용 간접가공비율 책정시 병용기계의 감가상각비가 제외되었을 경우, 병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간접 가공비율과 관계없이 단순 직접경비로 계산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41('84.4.19)

- 원가계산시 병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방산배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간접 가공비율과 관계없이 간접가공비에 가산하여 산정 가능할 것임.

실습생의 실습보조비 인식

질 의 : ○○항공 ○○업무 제77호('84.4.20)

- 신규인력 활용 방안책으로 공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을 활용하는 경우에 실습생의 실습보조비를 직접노무비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52('84.5.10)

- 공전, 공고 졸업예정자인 실습생들을 활용하는 경우 발생한 실습보조비는 현 규정상 교육훈련비로서 간접경비로 인식하여야 할 것임.

중도확정계약에 의한 정산원가계산시점 및 환율적용

질 의 : 표원 964-13769('84.11.21)

- 중도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산원가계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도 확정계약 체결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이행 전까지 획득한 원가자

료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있는바,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시점 즉, 정산원가시점에 관하여

가. “규정” 제28조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개산계약과 동일한 개념의 정산원가계산시점으로 판단함이 타당한지, 또는

나. 계약이행기간 중 계약물량의 일정량 생산 또는 생산계획 기간의 일정기간 경과 후에 정산원가계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경우에 정산원가계산시점의 선정과 관련하여 추정부분의 가격증감이 예상되는바, 적정한 시점 판단기준은

○ 수입품 원가계산시 환율적용시점에 관하여 정산원가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 정산시점 이전 기수입품은 업체 실구매시점의 환율을, 정산시점 이후 수입예정품은 정산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정산시점 이전 기수입품은 업체 실구매시점의 환율을, 정산시점 이후 수입예정품도 정산시점 이전의 기수입된 실적에 의거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다. 정산시점 이전 또는 이후 수입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정산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50(84.12.7)

○ 중도확정계약의 확정시점은 계약이행기간 중 일정량 생산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잔여계약물량의 원가보존이 가능한 시점을 확정계약시점으로 할 것.

가. 확정계약 체결 이전 원가정산시는 업체의 실구입시점의 환율을

나. 확정계약 체결 이후의 수입품은 확정계약체결시점 환율을 적용할 것.

원가절감보상계약 체결 가능여부

질 의 : 아특 제84-12-390호('84.12.11)

- 조달본부와 '84본부 ○○차량을 계약함에 있어 계약특수조건상에 원가절감보상계약조건을 설정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확정 전에 원가절감 보상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54('84.12.17)

- 군수조달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절감보상계약의 활용은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고, 동 규칙 제12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결정이전에 원가절감 제안서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할 경우, 원가절감보상계약 체결이 가능함.

하청업체의 국산화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 대상

질 의 : 방진회 진흥 1000-724('84.12.18)

- 업체에서 구성부품의 일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원가절감한 경우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5('85.1.7)

-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원가절감보상계약은 계약체결시 원가계산이 가능하고 계약이행 중에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와 계약체결시 최근 실적가와 비교하여 원가절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 체결이 가능함.

방산·민수 병용기계 감가상각비 계산

질 의 : 표원 24533-899('85.1.26)

○ 관련근거

가.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나. 국방부 원가 964.4-8('84.12.6) 방산물자 제비율 결정 하달

○ ○○○○(주)으로 부터 '85년도 적용 간접가공비율 제정시 일부 방산·민수 병용기계 감가상각비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원가계산시 단순 직접경비로 계상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가. 동 업체의 간접가공비율 제정시 일부 방산·민수 병용기계장치 감가상각비가 고려되지 않았는지의 여부

나. 위 감가상각비가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방안

회 신 : 국방부 원가 964.4-18('85.1.29)

○ ○○○(주)의 간접가공비율 산정시 간접경비로서 감가상각비를 ○○억원으로 인식하였고, 국방부 원가 964.4-1('85.1.7)호로 송부한 '85적용 제비율 산출자료와 ○○○○(주)의 건의내용을 확인하여 인식 금액에서 제외된 감가상각비는 계약물량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간접가공비율과 관계없이 단순직접경비로 처리 가능함.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보증을 위한 채권보전

질 의 : 조달본부 관리 01701-950('85.1.28)

○ 보증업체 최근 대차대조표 자산총계를 신용보증능력으로 인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20('85.2.7)

- 방위산업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채권보전능력의 판단은 계약대상업체의 경영분석(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석) 및 계약수량, 계약기간, 기타 제반여건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무관이 그 적정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임.

복수업체와 계약체결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질 의 : 조달본부 표원 24533-9989('85.9.4)

- 동일한 방산물자를 제조시설, 경영방법 등이 서로 다른 방산지정된 복수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방법은?
 - 가. 감손율 적용지침에 의거 재료비의 감손율은 복수업체를 비교하여 낮은 율을 적용하고 기타 모든 원가요소(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비율)는 각 업체별로 원가계산을 실시한 후에 낮은 원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 나. 재료비의 감손율과 재료비의 단가는 복수업체를 비교하여 낮은 율 및 단가를 적용하고 기타 원가요소는 각 업체별로 원가계산을 실시한 후에 낮은 원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 다. 기타 방안은?
- 견적가격 적용가능 여부

특수규격품 및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구매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은 원가계산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삼정도)이 예산회계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토록 지시되었으며, 생산량의 100%를 정부에서 구매하고, 다소의 창작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특수규격의 공예품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126('85.9.16)

- 재료비의 감손율은 기 하달된 감손율 적용지침(원가 964.4-9, '84.12.21)에 의거 낮은 율을 적용하고 기타 모든 원가요소는 각 업체별로 원가계산을 실시한 후에 낮은 원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단 재료비 단가는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단가차이 원인에 타당성이 있으면 복수단가 인정도 가능할 것임.
- 견적가격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 가. 정부의 물품제조, 구입시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6조에 의거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 나. 특수규격품으로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또는 생산량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2호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 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 의 : 표원 245333-1824('86.2.24)

- 관련근거
 - 가. 예산회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674호 '85.4.1) 제95조의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나. 계약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1650호, '85.7.15) 제63조의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1201.04-103-4, '84.4.6) 제18조의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방산물자를 방산업체와 확정계약(또는 장기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

자가 그 수행을 위하여 90일 이상 경과한 후 위 근거에 의거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회신 바람.

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열거한 비목만의 가격등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5/100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나. 또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제2항에 규정에서 열거한 비목뿐만 아니라 타 비목(환율, 구입가격, 실노임단가, 제비율 등 모든 비목)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5/100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3-38('86.3.10)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항에 열거된 비목뿐만 아니라 타 비목의 등락으로 전체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5/100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으나,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성격상 물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원가비목에 한할 것이고, 제비율 등 물가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비목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을 것임.

일반수입물품의 원가계산시 통관료 계상여부

질 의 : 국방부 이재 2210-150('86.3.18)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수입물품 구입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당해물품의 외화표시원가, 관세, 통관료 등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세법 제13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화주 직접신고요령(관세청고시 제86-430호, 1986.2.21)이 개정되어 수입물품 통관시 모든 수출입업자가 직접 수출입신고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수입물품의 원가계산시 통관료 계상가능 여부를 질의함.

회 신 : 재무부 회계 2210-920('86.4.8)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료란 당해 물품을 화주 이외자가 통관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물품의 성질, 내용, 통관절차 등을 고려 당해 물품의 통관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적절히 계산하는 것임.

사후원가관리시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 및 요율 적용

질 의 : 비협 제86-107('86.3.19)

- 당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국방부 조달본부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된 세탁비누에 대하여, 주원재료인 수입우지 가격의 하락으로 조달본부의 사후원가관리(자체감사)시 감가 조치당한 바 있음.
- 조달본부에서 사후원가관리시에 수입품(우지) 원가계산 환율적용은 사전 원가계산시점에서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 조합의 견해는 실발생 환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줄 알며, 또한 CIF료율도 실발생금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관세청 요율표에 의거 CIF금액을 환산계상하여 그 중 최저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 가. 사후원가관리시 환율적용은 실발생시 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전원가계산시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CIF료율도 사후원가관리시 실발생금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관세청요율을 적용 환산하여, 실발생비와 관세청 요율적용 산출금액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신 : 재무부 회계 125-954('86.4.10)

- 본 건은 계약당사자가 정한 계약특수조건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는바, 당해 조건을 정한 취지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참고로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자재)의 가격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이 증감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하다고 봄.

복수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방산업체 지정이 변경된 경우 제비율 적용

질 의 : 표원 24533-9567('86.9.27)

- 관련근거
 - 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나. 국방부 원가 24533-126('85.9.16) 회계질의 회신
 - 다.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22조, 제24조, 제26조
- 위 관련근거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 가. 복수 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 한 품목의 방산물자를 복수업체로 물자지정하여 최초로 조달지시를 받았으나, 현재 복수업체 중 한 업체가 생산시설이 미비하여 제조가 불가능한 경우(차후 시설보완 예정)
 - 1) 방산물자 지정은 복수업체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 업체의 제조시설이 미비하여 현재는 제조가 불가능하므로 시설이 완비된 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한지?
 - 2) 방산물자의 지정이 복수업체로 되어 있으므로 제조시설이 미비된 업체를 기준으로 한 원가계산가격과 제조시설이 미비된 업체를 기준으로 한 추정원가계산가격도 산정하여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 기타 방법은

나. 방산업체지정이 변경된 제비율 적용

사전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산물자의 방산업체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시 제비율은 다음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1) 변경 전 업체 제비율 적용
- 2) 변경 후 업체 제비율 적용
- 3) 기타(적용 제비율을 산정 하달 바람)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132('86.10.14)

가. 한 품목의 방산물자에 대해서 복수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업체별로 원가계산을 하여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 업체가 생산시설 미비로 실제로 계약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가능 업체만을 대상으로 원가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도 무방할 것임.

나. 방산물자의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 1) 단순히 방산업체의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비율의 변동은 없으나, 생산시설(공장)을 인수 또는 합하였으나 생산형태의 변화가 없을 경우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의 변동이 예상되고,
- 2) 타 업체의 제조시설을 인수하여 기존의 생산시설과 포함하여 새로운 생산형태를 갖추는 경우는 간접가공비율, 일반관리비율 및 이익률의 변동이 예상된다.

따라서 방산업체의 지정변경 내용여하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제비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임.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질 의 : 감사 24412-10998('86.11.7)

○ 당 본부가 ○○중공업(주)과 '85.12.30일 해군 ○○○ 엔진 20대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85.12.30일 착수금 약 61.7억원을 '86.2.28일 중도금 약 84.1억원을 각각 지급하여, 계약당시의 예상 수입물품대금 136억원을 초과하는 약 146억원을 착,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계약 당시의 환율 ₩368.28/DM이 실제 수입시에는 ₩435/DW로 상승함에 따라 위 ○○중공업(주)는 당 본부에 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물품대금의 증액 수정을 요청하여 왔는바,

가.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적법한지?

나.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수정계약이 불가한지 여부를 문의하오니 회신 바람.

당 본부의 의견

○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갑설 : 조정 가능

1) 환율 자체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각호의 가격이나 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환율의 변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도 아니나,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 등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금액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되었을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재무부 회계 1210-2132 : '83.7.7)

2)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은 물품의 통관시점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재무부 회계 2210-743 : '86.3.21)

나. 을설 : 조정 불가능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는 “환율변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는 없음.

- 2) 환율이 변동되기 전에 이미 조달본부는 수입물품 대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착,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 지급된 착, 중도금을 보유하고 있던 계약업체가 그 후의 환율 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을 요청함은 부당함.

다. 당 본부 의견 : “을” 설이 타당

-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필요예산 부족시 수정계약 가능여부

가. 갑 설 : 수정계약 가능

‘8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을 설 : 수정계약 불가능

본 건 사업은 ‘85 국채와 ‘86 본조의 장기계약으로 그 납기가 ‘86.12.15일 이므로 ‘86년 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배정 없는 지출원인 행위가 되어 예산회계법 제55조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함.

다. 당 본부의 의견 : “을” 설이 타당

회 신 : 재무부 회계 2210-4543(‘86.12.19)

-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자재)의 가격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이 증감되고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봄. 다만, 구체적 조정방법 등은 동법시행령 제95조의 2 제1항 내지 제4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항 내지 제5항 및 귀 부에 회신한 관련 해석 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

질 의 : ○○서특 제190호(‘86.12.11)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 2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 제95조 2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물가변동 요인이 환율변동에 의한 것일 경우도 조정적용 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재무부 회계 125-4468('86.12.12)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환율들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자재)의 가격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이 증감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원가계산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표원 24533-12490('86.12.18)

- 통합원 24533-325('86.12.27) 질의 내용인 방산물자 지정 전제하에 방산물자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특별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사전원가계산시 “을”업체는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을, 특별히 가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병”업체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방산특조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 “을” “병”업체 양자의 공급물품이 동일 시점에 방산물자로 각각 지정된 경우 정산시 “을” “병”업체에 적용할 원가규정에 관하여

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161('86.12.24)

- 계약체결 시점에서 방산물자(업체)로 지정되지 않아 조만간에 방산물자

(업체) 지정을 전제로 하였고, 또한 정산을 요하는 계약형태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계약이행 기간 중에 실제로 방산물자의 지정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에 의거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병” 업체에 대해서도 “국방부 원가 964.4-128(‘83.8.3)회계질의 회신”에 의거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방법

질 의 : 국방부 사전 24130-111(‘87.3.13)

- 당 사업단의 한국형 전차 성능검사시 소요되는 궤도재생비용을 전차생산비 중 시험검사비로 원가 계상하고 있음. 시험검사가 계속됨에 따라 궤도 재생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육군군수사 군공창을 이용하고자 함. 이 경우 당 사업단에서 원가정산시 전차생산비 원가에 궤도재생비용을 인정하여 주고, ○○정공(주)와 육군군수사와의 계약에 의해 궤도를 재생함이 회계처리상 가능한지?

회 신 : 국방부 이재 2210-179(‘87.3.26)

- 군수사 정비창을 이용한 궤도재생 및 비용징수를 위하여는 예산회계법 제9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소요금액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임.

거래실례가격 적용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등 계상

질 의 : 조달본부 설계 24461-4317(‘87.4.27)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예정가격의 결정에 있어 제2항의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의 적정거래가 형성된 경우의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건설공사원가 계산내용중 공사에 직접목적물로 사용되는 비목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정부구매물가 가격정보지)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작성할 때 아래 자재의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가산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비시설(건설공사의 일부분) 계통공사의 일부 소요품으로 완제품이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보일러, 냉동기, 변압기, 발전기 설치공사의 경우

나. 시멘트 가공제품으로 완제품이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시멘트-벽돌 콘크리트관, 조립식 콘크리트 건축자재의 경우

회 신 : 국방부 이재 2210-332('87.5.16)

-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원가계산 비목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질 의 : 표원 224533-13579('87.12.22)

- '87.12.10일 납기로 '87.7.1일 계약을 체결한 군납제품의 가격 구성요인 중 비중이 높은 수입재료가 '86.12.23일부터 '87.9.29일까지 94차에 걸쳐 통관됨으로써, 실발생 환율(\$)이 당초 계약금액 결정시 적용했던 환율보다 낮게 발생되어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하락하여 위 관련 근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가. 물품 구매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이행"은 납품을 의미하므로 "물가

변동일”(87.4.25) 이전에 장비를 제조 완성하여 분할 납품한 실적이 없고, 최종 납기에 전량 납품하므로써 계약금액 총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인식함이 타당한지, 또는

나. 군납장비의 제조기간이 장기소요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이행”은 제조과정을 의미하므로 “물가변동일”(87.4.25) 이전에 기 제조 작업된 부분을 제외한 물가변동일 이후에 제조 작업된 부문에 대해서만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인식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 신 : 재무부 회제 2210-149(88.1.2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 제3항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8조 2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물가변동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은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동 예규 제5조 2 규정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의한 “제조공정 예정표”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특정비목확정계약 정산시 제비율 적용

질 의 : 표원 24533-11195(88.11.1)

- 관련근거
 - 가.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및 동시행령 세칙
 - 나. 국방부 원가 24533-6(88.11.2) '89적용 제비율 하달
- 위 관련근거로 '87년도에 특정비목으로 특정비목확정계약을 체결하고 '88년도에 특정비목을 정산하는 경우의 제비율 적용 기준은?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120(88.11.25)

- 특정비목확정계약전의 적용 제비율은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시행세칙” 제35조 및 ‘89적용 제비율 하달에 의할 것. 단, 이익률은 부가가치액 (기확정 및 불확정 부가가치 포함)을 기준으로 “‘89적용 제비율 하달”의 이익률 및 적용지침” 나의 2호에 의거 인정되는 이익금액을 전체 총원가 (기확정 및 불확정 총원가 포함)로 나누어 산정된 율을 적용할 것.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질의

질 의 : 표원 24533-11544(‘88.11.1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품구매 특수조건의 “제조공정 예정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토록 되어 있는바, ‘86.12.20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87.7.31일이 최종납기로 되어 있는 관성항법 요격장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
 - 가. 계약이행 기간 중 물가변동일에 가격구성 요소 중 비중이 높은 수입 재료가 통관된 실적이 없고 환율도 계속 하락추세에 있음으로써 최종 통관을 기다렸다가 최종 통관직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을 산출해보니 상기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감소조정 금액이 발생하나 사후원가 관리결과 실제 발생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나. “율”의 귀책사유로 “제조공정 예정표”보다 수입물자가 8개월 지연통관된 경우 제조공정표의 각 공정을 기준으로 비목별 물가변동적용대가합계약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 조정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재무부 회제 2210-3296('88.12.8)

○ 귀 질의 “가”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 규정에 의거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아래 유권해석을 참조 바람.

- 아 래 -

질 의 :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86아시아경기 및 '88올림픽경기에 대비하여 건설하는 올림픽 경기장 건설공사 중(토목) 성내천 하류구간의 라바댐(고무댐) 시공에 소요되는 수입자재(일본)에 대한 환율을 334원/100엔('84.11)으로 설계하여 계약('85.6.27) 하였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엔화의 강세로 인하여 자재수입시 환율이 443.64원/100엔('85.11.26)으로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재대 및 관세, 방위세 등의 환차를 정산설계시 반영할 수 있는지의 가능여부를 질의

회 신 : 재무부 회제 2210-2356('86.6.5)

-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변동되어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등락 폭(의 합계액)이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변동 전 가격은 계약체결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며, 변동 후 가격은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사후원가관리시 환율 적용

질 의 : 표원 24533-13101('88.12.21)

- '86년 12월에 ○○○(주)와 장기확정계약으로 계약체결되어 '88.9월에 이행 완료된 바 있는 ○○제조사업의 경우 사후원가를 검토결과 원가 24533-177('82.9.2)등의 회계질의 회신에 따라 사전원가계산 시점의 환율을 적용할 시는 계약금액에 대비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발생환율을 적용할 경우, 예회령 제95조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한도(5/100이상)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30억원 상당의 차액이 추정되는바, 원화가치의 급격한 절상추세에 있는 현시점에서도 상기 회계질의 회신대로 계약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확정계약을 하고 계약특수조건에 사후원가관리에 관한 별도조항의 설정 없이 계약특수조건 제17조(별첨)를 근거로 하여 실발생 환율에 의한 위 차액을 국고환수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141('88.12.30)

- 관련사항은 재무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적의 처리할 것.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 의 : 표원 24533-13100('88.12.31)

- '86.12.20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88.7.31일에 최종납기로 되어있는 ○○장비는 계약금액의 가격구성 요인 중 비중이 높은 수입재료가 '87.9.1일부터 '88.8.5일까지 66차에 걸쳐 통관(대금지불)됨으로써 실발생 환율(\$)이 당초 계약금액 결정시 적용했던 환율보다 낮게 발생되어 "품목조정율"이 5/100 이상 하락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변동 후 가격산정 방법과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가. 예회령 제95조의 2 가격변동(통제가격, 거래실례가격, 정부노임단가, 환율 등)으로 인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 변동 후 가격산출 시 실제발생한 가격 또는 환율을 적용하는지 또는 실제발생한 가격이나 환율과는 상관없이 물가변동일(품목조정율이 5% 증감되는 시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 일반조건 제18조의 2 규정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토록 되어 있는 바, 이때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공정표(재무부 회계 2210-149, '88.1.20)를 기준하는지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실발생가격 및 환율(회제 2210-2356, '86.6.5)을 기준하는지 여부

회 신 : 재무부 회제 2210-519('89.2.27)

-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변동되어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등락을 산정시 수입물품에 대한 계약체결시 가격은 계약체결시점의 환율을 적용,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은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제조공정 예정표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완성장비 유지부품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특례개정 건의

질 의 : 원관 24533-1542('89.2.22)

-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개정에 따른 일반물자 “완성장비 유지부품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특례를 아래와 같이 검토 개정 건의

완성장비 유지부품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특례개정(안)

완성장비 유지부품과 관련하여 동 부품 제조업체와 직접계약이 불가능하여 완성장비 제조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동 부품의 예정가격은 제조업체의 공장도 가격에 수입물품 구입시의 일반관리비율(8%) 및 부가가치(일반관리비) 이윤율(25%)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음.

회 신 : 재무부 회제 2210-1889('89.5.29)

- 완성장비 유지부품 구매계약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귀 협의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 집행함이 원칙임. 다만, 동 부품 제조업체와의 계약이 불가능하여 완성장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 부품의 예정가격 작성(현행 부가가치 비용방식)시 일반관리비는 8% 이윤율은 25%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귀 부 안에 동의함.

자원용역 원가계산 방법

질 의 : 조달본부('89.3.8)

- 대공표적기 지원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계약업체에서 표적기와 부수자재 및 장비일체를 제작하여 수요군에서 실시하는 대공사각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공표적기의 용역비행건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원가계산기준 규정이 없어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이재 22100-119('89.3.17)

- 대공표적기 지원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재무관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95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 및 제6조, 정부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을 중

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외화표시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의 조정

질 의 : 원관 24533-4233('89.5.19)

- 수입물자대의 물가변동 조정대상 포함 여부

답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수입물자대 가격변동 사항은 예회령 제95조의 2 제1항 각호(개정전 예회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제되어야 함.

을설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특정비목의 제한된 가격 및 요금 등에 한정하지 않고 전비목이 해당되므로 당연히 수입물자대의 가격(외화표시가격) 변동도 포함 조정되어야 함.

회 신 : 재무부 회제 2210-2009('89.6.13)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88.4.1 개정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있어 외화표시가격 변동자체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 없으나, 외화표시가격 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요소가격 등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금액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에도 동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방산구입완성품 이익률 적용기준

질 의 : 표원 24533-10032('89.11.16)

- 관련근거

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 및 부칙 2(재무부령 제1765호)

나.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28조, 제38조 및 부칙 2(방산심의회

회건 제164호)

다. 국방부 원가 24533-27, 68('89.2.18, '89.6.5) 방산물자 원가계산시의
구입완성품에 대한 이익률 적용지침 수정통보

- '88년도에 장기개산계약을 체결한 방산물자로 지정된 구입완성품(수입, 국내구입)의 정산원가계산에 적용할 이익률에 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총원가 이익률(3%)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 검토의견의 같이 질의함.

검 토 의 견

《1안》 : 방산구입완성품의 이익률은 방산물자 원가계산기준규정 제38조에 의거 계약사무처리규칙 등을 준용하여 일반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계약사무처리규칙 부칙 2(계약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및 계약시점의 제반조건이 존중되는 계약기본 정신에 따라 총원가 이익률(3%)을 적용

《2안》 : 방산구입완성품의 이익률이 계약사무처리규칙 등을 준용하더라도 방산조치법 및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제비율의 범주에 속하므로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28조(정산원가의 계산), 부칙 2 및 회계질의 회신{원가 964.4-29('82.2.15) 기준규정 적용시점의 판단기준}에 의거 부가가치 이익률(수입 10%, 국내구입 25%)을 적용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165('89.12.1)

- 방산물자 구입완성품 이익률은 부가가치이익율(수입 10%, 국내구입 25%)을 적용

거래실례가격 각호간의 우선순위

질 의 :

- 거래실례가격 각호간의 우선순위

회 신 : 재무부 회계 125-3698('89.11.24)

- 국제칙 제5조 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과 제2호의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어느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없으며 구체적 적용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방산물자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

질 의 : 방진회 진흥 1000-315('90.5.7)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방위산업진흥회는 동법 제12조 제2항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대한 보증과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 보증업무에는 방산물자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포함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와 방산물자 계약보증금을 동 보증에 포함할 때 이를 시행하려면 동회 내에 어떤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되는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62('90.5.8)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물자 생산에 관련된 각종보증업무에 포함되며, 방산물자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행보증업무를 시

행하기 위하여는 방위산업진흥회 사업에 보증업무를 명시한 정관과 세부적인 보증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계좌입금에 따른 입금표 징구

질 의 : 조달본부 관리 01716-11109('90.11.19)

- 지출관사무처리규칙 제14조에 의거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와 입금전표를 징구하고 있으나, 회계예규 제2200.03-119-4에 의거 85년부터 채권자 계좌입금제도 활용방안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지정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그 이행 대가지급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입금계좌와 사용인감을 확인 후 계약상대자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음.
- 위 지출관사무처리규칙에 의거 관행상 징구하고 있는 입금표 징구에 대한 의견 중 당연히 입금표를 받아야 한다는 '갑론'과 계좌입금 제도하에서 갑, 을간의 조건에 의거 '을'이 요구한 계좌에 직접입금을 시키고 있으므로 생략해야 한다는 '을'의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해석 바람.

갑설 : 지출관사무처리규칙 제14조 및 제16조 규정(지출관이 수취인에게 수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영수증 또는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 계좌입금제도인 경우라도 입금표 징구가 필요함.

을설 : 회계예규 제2200.03-119-4에 의한 계좌입금제도에 따라 지출관리 계좌입금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지출결의서 채주 영수증란에 계좌입금 및 영수인 날인을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금표 징구가 불필요함.

회 신 : 국방부 이재 22100-666('90.11.28)

- 지출관사무처리규칙 제14조에 수취인에게 수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서(또는 영수인)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상의 수취인이라 함은 한국은

행 또는 채신관서에 자금을 교부하여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거나 계좌입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관사무처리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 2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 또는 채신관서가 수취인에 해당됨. 따라서 채권자 계좌입금제를 활용하여 대가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출관사무처리규칙 제17조의 2 및 회계예규(2200.02-119-4)인 채권자 계좌입금제도 활용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점(한국은행) 및 채신관서에 수표를 교부하고, 거래점 및 채신관서의 영수증서만을 수령(징구)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의 입금표 징구는 불필요하며 '을'론이 타당함.

갱신공고 및 예정가격 변경

질 의 :

- 갱신공고 및 예정가격 변경

회 신 : 원통 24533-39('91.2.12)

- “새로운 절차에 위한 경쟁입찰”이라 함은 당초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동일하게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며 “당초 예정가격의 변경”이라 함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예정가격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러한 예정가격의 변경에 있어 예정가격 기초금액(원가계산가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검토된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회계질의

질 의 : 원통 24533-1122('91.2.13)

- '90년도에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이행을 위하여 91.1.1일 이후에 원자재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에 대하여 국고회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법
- 업체에서 '90.12.31일 이전에 방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원자재를 '91.1.1일 이후 계약분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업체부담 방위세에 대한 원가인정 여부

회 신 : 국방부 이재 22100-96('91.3.5)

- 예산회계법 제92조상 계약(확정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조정은 (1)물가 변동으로 인한 경우 (2) 설계 변동으로 인한 경우 (3) 기타 계약내용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기타 계약내용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세액의 합산은 원가계산시점에서 당해 연도에 실제부과될 세액만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정업체가 전년도에 방위세를 부담하고 미리 수입한 원자재를 '91.1.1일 이후 계약체결 이행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 할지라도 방위세가 폐지된 이후 원가계산시에는 방위세액을 합산할 수 없을 것임.

개산계약 절차에 관한 질의

질 의 : 방진회 진흥 1000-392('91.7.19)

- 관련근거{○○ 제91-211호(91.7.8) 개산계약 절차에 관한 질의}에 의거 ○○○(주)에서 국방군수본부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3호(방산수의계약)에 의한 개산계약 체결시 계약절차상 의문 사항을 본회

에 문의해 다음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의뢰하니 검토, 회신 바람.

가. 개산계약에 있어서 개산계약(계약금액)결정 방법 및 계약이행 후의 정산금액 결정방법

갑설 : 당해 방산업체에서 제시한 원가자료(개산시에는 견적원가 자료/정산시에는 실발생 원가자료)를 방산물자 원가계산 기준 규정에 의거 조사한 개산원가(정산원가)로 계약금액 결정

을설 : 개산원가(정산원가)를 기초로 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한 제반여건을 고려한 예정가격으로 결정

병설 : 예정가격을 정한 후 계약사후처리규칙 제46조 제1항(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에 의하여 당해 방산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케 하여 업체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범위 안에 들 때 당해 견적금액으로 계약금액 결정

나. 상기 “병”설에 의거 개산계약 금액을 결정할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금액이 계약금액(업체제시 견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되는지 여부

※ 첨부 : 개산계약 관련규정 및 검토의견 1부.

회 신 : 원통 24533-8116('91.9.18)

○ 개산원가계산

개산원가는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제품 생산업체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계산 및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 후 계산하며,

○ 개산계약금액 결정

계약체결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개산계약(원가절감보상계약, 특정비목확정계약 확정분, 유인부 확정계약)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3조 규정에 의거 개산원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며,

○ 정산원가계산

정산원가는 방산물자 원가계산 기준규정 제28조 및 동 시행세부규칙 제 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방산물자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 직접가공비 및 단순직접경비는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가공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정산원가 계산시점에 적용되는 제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 정산계약금액 결정

정산계약금액은 정산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함으로써 정산금액이 개산계약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기술개발비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 : 원통 24533-8352('91.9.30)

- 계약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고도정밀 방산장비의 사업추진 및 기술 도입생산을 위하여 계약 전에 사업추진 전담반을 운영함으로써 첨부내역 과 같이 발생된 사업추진 준비 비용에 대하여 기술개발비로 인정 가능한 지 여부 및 인정 가능시 노무비 및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질의함.

※ 첨부 : ○○○ 사업준비 비용 총괄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124('91.10.2)

- 기술개발비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20조의 2 제6호 및 동 규정 시행세부규칙 제28조의 내용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유인부확정계약 정산시 제비율적용 방안

질 의 : 원통 24533-156('92.5.4)

- 유인부확정계약분에 대한 실제 발생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제비율 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방안”을 건의하오니 검토 바람.

가. 관련근거

1) 방산특조법시행령(제32조 제2항)

- 확정계약 : 일반확정계약, 단가고정계약
- 개산계약 : 원가절감보상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확정계약, 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유인부확정계약

2)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시행세칙

- 제4장 : 개산계약의 정산원가계산
- 제35조 : 간접가공비, 일반관리비, 이윤계산은 정산원가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규정 제21조 내지 제26조를 준용함.

나. 방 안

1) “갹”설 : 정산원가 계산시점 적용(현행 규정 준수)

- 현행 규정상 유인부확정계약은 개산계약의 형태로 분류하고, 개산계약분의 정산원가 계산시는 다른 개산계약분과 동일하게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의 적용가능한 제비율을 적용하여 실발생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이 규정의 근본 취지임.
- 따라서, 유인부확정계약은 개산계약의 일종으로 정산원가계산시점의 제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2) “을”설 : 사전원가계산시점 적용(현행규정 개정 필요)

- 유인부확정계약은 사전원가계산시의 불확정부문 또는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부문 등에 대하여 사후에 실발생 비용을 계상하고 또한 업체 자체의 원가절감을 유인하기 위한 보상에 근본 취지가 있음.
- 따라서 유인부확정계약의 제비율은 계약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이 되는 원가자료가 미흡하거나 원가절감이 예산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원가계산시점의 제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85('92.6.10)

○ 관련근거

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2조제2항(계약 등의 내용 및 범위)

나.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제3조 제8호, 제9호 및 동 시행세부규칙 제4장(개산계약의 정산원가계산)

다. 원통 24533-156('92.5.6) 유인부 확정계약 정산 시 제비율 적용방안 검토 건의

- 위 관련근거 “다”로 검토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유인부확정계약은 위 근거 “가”에 의거 개산계약 형태로 분류되어 있고 개산계약의 정산은 위 근거 “나”에 의거 실발생원가 자료를 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발생원가 계산시 제비율 적용은 정산원가계산시점을 기준하여야 할 것임.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 의 : 장원일 22100-323('92.10.13)

- '90.6.9일 방산물자 A품목 24대를 제조, 납품하도록 ○○○회사와 확정 계약을 체결하여 '91.7.30일 계약이행 완료되어 같은 해 대금 ₩4,999,080,000을 지급하였는바, 위 품목의 당초 원가계산서상의 제조원가에 포함된 원자재 수입에 따른 방위세는 대당 ₩3,438,654원(합계액 ₩82,527,696)이나 실제로는 1990년도에 수입한 5대분에 해당하는 수입원자재 방위세 ₩17,193,270 부담하고 '91년도에 수입한 19대분에 해당하는 수입원자재 방위세 ₩65,334,426은 1991.1.1일부로 방위세법이 폐지됨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미부담 방위세액을 ○○○회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 본 계약건의 미부담, 방위세액은 원자재를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재료비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에 해당되고, 계약특수조건상에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회령 제111조 제1항 1호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그 미부담 세액이 당초 원가계산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액에 미달하므로 회수 조치할 수 없음.

을설 : 본 계약건의 미부담 방위세액은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회령 제113조 ①항 규정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해당되므로 당초 원가계산가격과 계약금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당초 원가에 계상되었으나 부담되지 아니한 방위세 전액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

회 신 : 국방부 이재 22100-737(‘92.11.11)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는바, 동 확정계약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은 동 법 제92조 및 동 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결정시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1조 2항 또는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시행세부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다 별도로 세액(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을 합산하므로 세액의 합산여부는 물품의 가격변동이 아닌 원가계산시의 별도 가산 비목의 증감사항으로서,
- 방위세 폐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은 기획신한 이재 22100-96(‘91.3.5)과 같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에 규정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복합(물가변동,

설계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별로 관계 규정을 적용 처리한 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는 귀부의 견해 중 “을설”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특정비목확정계약분 정산시 이윤율 적용기준

질 의 : 원통 24533-330('92.10.15)

- 특정비목확정계약 체결시 총원가 구성내역을 기초로 이윤율 적용기준(부가가치기준 또는 총원가 기준)을 결정하여 확정부문과 불확정부문에 공히 적용 사전(개산)원가를 계산하고, 불확정부문에 대한 원가를 정산함에 있어서 불확정부문 정산금액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 구성내역의 변동으로 이윤율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경우의 이윤율 적용기준과 확정부문 및 불확정부문의 이윤율 적용시점에 관한 질의

답설 : 불확정부문의 가정산 결과에 따른 총원가 구성내역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사전원가계산시에 결정한 이윤율 적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윤율 적용시점에 있어서 확정부문의 이윤율은 사전원가 계산시점을, 불확정 부문은 정산원가 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하달된 이윤율을 적용

을설 : 불확정부문의 원가정산 결과에 따라 변동된 총원가 구성내역을 기초로 이윤율 적용기준을 새로이 결정하여 적용하되,

이윤율 적용시점에 있어서는

- 확정부문과 불확정부문에 대한 이윤율은 정산원가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하달된 이윤율을 적용함 또는
- 확정부문은 사전원가 계산시점을, 불확정부문은 정산원가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하달된 이윤율을 적용함.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156('92.11.11)

- 불확정부문의 원가정산 결과에 따른 총원가 구성내역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사전원가 계산시에 결정한 이윤율 적용기준(부가가치 기준 및 총원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 이윤율 적용시점에 있어서 확정부문의 이윤율은 사전원가계산시점을, 불확정부문은 정산원가계산시점을 기준으로 국방부에서 하달된 이윤율을 적용함.

개산계약분 원가정산시 재고품 가격적용 시점

질 의 : 원통 24533-385('92.12.1)

-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원가정산시 직접재료비 계산에 있어 단위당 가격은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시행세부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거 “실제 구입하여 소비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규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고,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용자받아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당해 방산물자의 전용재고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적용 방법에 관한 질의함.

답설 : 재고품을 실제 구입한 시점의 가격(외화표시가격 포함) 및 환율 적용가. 시행세칙에서 “단위당 가격은 업체에서 실제 구입하여 소비한 가격을, 수입품의 환율은 업체의 실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계약이행 기간 중 구입한 부품의 가격은 물론 재고품의 실구입한 가격도 해당됨.

나. 개산계약분의 원가정산은 실발생비용을 보상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으므로 재고품의 실제 구입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재고품 관리상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원가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을설 : 개산계약(또는 원가정산)시점의 가격(외화표시가격 포함) 및 환율 적용

- 가. 시행세칙의 “업체가 실제 구입하여 소비한 가격 등”에 관한 규정은 계약체결 후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고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나. 정산원가계산의 일반원칙에서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를 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이행기간 중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다. 재고품의 가격적용에 있어 확정계약시는 원가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개산계약분의 정산원가는 실제구입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재고품이 계약형태에 따라 상이한 기준의 가격을 적용함은 모순임.
- 라. 사업의 특성상 계약 전 발주 등으로 재고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축 원자재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시점의 가격적용이 적절함.

회 신 : 국방부 원가 24533-180(‘92.12.15)

-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원가정산시 수입재고 자재가격(외화 표시가격 및 환율) 적용시점은 개산원가 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개산원가계산 시점보다 계약기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계약이행 최초 시점을 기준 하여야 함. 다만, 개산원가 계산시점 및 계약이행 최초 시점의 수입재고 자재가격이 불명확할 때에는 실구입시점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제비율 산정내역(직접노무비 및 감가상각비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질 의 : 원통 45113-165(‘93.5.4)

-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시행세칙에서 제수당은 해당업체가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650%를 상한으로

업체의 실적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산재평가 결과 증가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제비율(간접가공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적용은 증가된 가액이 제비율에 반영되어 적용될 때까지 재평가전의 가액을 기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항공 ○공장의 경우 하기휴가비, 설날 귀성여비, 생산성 격려금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92년도 적용 제비율 산정시까지 간접가공비율에 포함시켜 왔으나, 93년도 적용 제비율 산정시에는 동 비용이 제비율에 포함되지 않아 '93년 조달계약 체결분에 대한 원가산정시는 동 비용을 직접노무비의 제수당으로 인정해줄 것과 91.1.1일부로 자산재평가한 결과 증가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간접가공비, 일반관리비, 이윤율 계산하여 주도록 업체로부터 건의되어 이에 대한 적용기준을 질의함.

가. '93년도 적용 제비율 산정시 하기휴가비, 설날 귀성여비, 생산성 격려금의 포함여부

나. 이들 비용이 제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직접노무비의 제수당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여금으로 계상하여 업체 실적율이 65% 초과시 불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자산재평가 결과 증가된 감가상각비(기계장치, 공구, 계측기)가 '93년 적용 제비율 산정시 반영되어 간접가공비, 일반관리비, 이윤율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45113-63('93.5.13)

○ ○ ○ 항공(주) '93 적용 제비율 산정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하기휴가비, 설날 귀성여비, 생산격려금

1) 하기휴가비, 설날 귀성여비, 생산격려금을 매년 일정을 또는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의 원가비목 분류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근로소득으로써 개인소득세가 공제될 때는 노무비(급여, 임금)로 계상할 수 있음.

다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계상 가능

- 2) 노무비로써 제수당 또는 상여금의 분류판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당해 비용의 성격과 업체 회계처리방법 및 노사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항공의 '93적용 제비율에는 '91년 이전 발생한 하기휴가비, 설날 귀성여비가 직·간접노무비(제수당)로 반영되었음.

나. 재평가자산 감가상각비

'91.1.1일부 자산재평가로 인한 증가된 감가상각비는 '93적용 제비율 산정시 반영 되었음.

개산계약의 분할납품시 중도금의 지급한도

질 의 : 국과연 행회 400-94('93.5.21)

- 방위산업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정 제5조 제2항 단서조항의 적용방법

가. 개산계약에 의한 분할납품계약으로 체결하고 검사 및 납품이 완료된 분할 납품분에 대한 대가를 확정, 지급하는 경우

갑설 : 개산계약이므로 정산 후 계약금액을 확정치 않고는 총계약금액의 90%를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음.

을설 : 개산계약, 확정계약 구분에 관계없이 총계약금액의 90%를 초과하여 원가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음.

나.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착수금의 정산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45112-73('93.6.1)

- 방위산업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규정은 일반개산계약을 포함 모든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형태에 적용되며, 분할납품계약에 있어서 검사 및 납품

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 5조제2항에 의거 그 대가의 전액을 중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 분할납품분에 대한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8조에 의거 분할 납품분의 대가에서 동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기 지급된 중도금 중 당해 분할납품분에 해당되는 중도금 정산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함.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방법

질 의 : 조달본부 예계 33424-301('93.7.7)

- 자금사용계획에 의해 1차로 지급되는 금액은 착수금이나 2차 이후는 중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만약, 2차이후가 중도금이라면 제4조 제2항에 의거 자체자금사용증빙서 또는 검사공무원의 검사, 납품이 완료된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1, 2, 3차 합하여 착수금이 78%를 상회하지 않았을 시 중도금 포함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차수별 내용에 상관없이 총계약금액의 78%까지만 착수금이고 78%이후는 중도금으로 보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45112-103('93.7.20)

- 방위산업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제4조에 의거 착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지급하는 금액을 착수금이라 하고, 중도금 지급요건의 충족되어 지급하는 금액을 중도금이라 하며, 규정 제5조에 의한 지급비율 한도 내에서 차수에 관계없이 각각 지급할 수 있으므로 착수금으로 1차 지급한 이후에는 중도금으로서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2차년도 이후의 착수금을 지급할 때에는 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기 지급 착수금을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중도금 지급에 대한 중도금 지급총액의 합계가 계약금액의 90%라는 것은 착수금 지급 총액과 업체자체 자금지출에 대한 중도금 지급총액의 합계가 계약금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임. 착수금 지급총액이 계약금액의 78%를 초과하지 않는 한 차수에 관계없이 착수금을 포함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음.

- 착수금과 중도금은 서로 상이한 지급요건에 따라서 각각 지급할 수 있으므로 최초 지급분부터 계약금액의 78%에 달하기까지 지급하는 금액이 착수금이고, 그 이후로 지급하는 것은 중도금이라고만 볼 수 없음. 예시하면, 현재 착수금 지급총액이 계약금액의 40%, 중도금으로서 실제 지급한 총액이 계약금액의 20%에 달한 경우에 추후에 착·중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으로서만 지급하든지 착수금 및 중도금을 합하여 지급하든지 어느 경우에도 계약금액 30%를 초과할 수 없음.

생산공정도급비용의 회계처리

질 의 : 일부 생산공정 도급비용에 대한 회계질의

회 신 : 국방부 원가 45113-25('94.2.3)

- 방산업체가 외부 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도급업체 인원을 생산공정의 일부에 직접 투입하여 계약목적물 생산에 종사하도록 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도급비용은 외주가공비로 처리함이 타당

하기휴가비 등 적용기준 질의

질 의 : 원통 45113-129('93.7.9)

- 국방부 회계 질의, 회신 내용('93.5.13)에 의하면 「하기휴가비, 설날 귀성여비 및 생산격려금(이하 “하기휴가비” 등 이라 한다.)의 원가비목 분류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개인 소득세가 공제될 때는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고,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계상 가능하여, 노무비로서 제수당 또는 상여금의 분류 판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당해비용의 성격과 업체 회계처리방법 및 노사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기휴가비 등을 제수당,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로의 분류에 대한 원론적 사항만 언급하고 있어 유권해석이 불명확하고 사실 판단이 곤란하여 아래와 같이 재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갑설 : 제수당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

하기휴가비 등은 지급방법이 상여금과 비슷하나 미리 그 지급율이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수단과 생산능률 향상 및 노사합의에 의거 매년 특정시기에 지급되고 있으며, 성과급상여금과 달리 전직원에게 일정율로 근로시간 또는 입사기간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성격의 제수당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상여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

하기휴가비 등은 지급기준 및 방법이 상여금 지급사례와 동일하고, 고유명절에 지급하는 추석여비(100%)는 상여금으로, 설날 귀성여비(100%)는 제수당 또는 복리후생비로의 판단은 회계처리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되며,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일시, 일정율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 복리후생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

하기휴가비 등은 평균임금과 성격이 비슷하나 종전에 현물로 제

공 해오던 하기휴양소 운영, 일정액의 선물비용 지급 등을 같음 하여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사기진작 등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업체의 회계처리기준과 제비율 산정의 일관성 유지 차원을 고려할 때 복리후생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신 : 재무부 회제 45101-808('93.8.3)

- 하기휴가비, 귀성여비, 생산격려금 등(이하 “하기휴가비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원가비목 적용기준은 하기휴가비 등의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업체가 지급목적, 지급성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 사항은 조정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아 래 -

- 가. 하기휴양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 업체의 경우로서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실비 상당금액일 때는 복리후생비로,
 - 근로의 대가로서 작업상 통상적으로 발생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일 때는 제수당으로 분류하되 업체가 상여금으로 분류한 경우는 그 적합성을 판단 적용
- 나. 하기휴가비 등을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임금일 경우는 상여금으로 적용
- 다. 생산격려금/장려금 등의 명칭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후에 배분 지급하는 성과급 성격의 임금인 경우는 상여금으로 적용
- 라. 하기휴가비 등의 합리적 회계처리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처리기준의 계속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질의한 ○○항공의 경우도 위 하기휴가비 등의 원가비목 적용기준에 의거 적의 판단 적용하시기 바람.

공장이전에 따른 제비율 적용

질 의 : 원통 45113-263('93.8.9)

○ 관련근거

가. 국원가 24533-2('92.11.23) '93 제비율 적용 지침

나. 장원일 45113-248('93.8.3) 제비율 적용에 대한 질의

○ 당본부와 ○○○(주)과 계약 예정인 ○○용 T/M생산 공장이 창원공장에서 울산공장으로의 이전에 따른 '93 확정계약시 적용할 제비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 바람.

가. '93년도 ○○○(주) 창원공장 기준 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 '93년도 제비율 적용지침 3항 적용방법 중

1) 불산정 업체로 인정하여 전방산업체의 최하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2) 신규 지정업체로 인정하여 개산원가 계산시 유사제품의 제비율 또는 전 방산업체의 평균율 중에서 합리적인 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45113-116('93.8.16)

○ 질의하신 내용은 “원가 45113-71('93.5.29) ○○○(주) T/M공장 이전에 따른 제비율 검토”에 의거 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로 귀 부서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 2의 “나”항은 신규로 방산업체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생산공정 도급비용에 대한 비목적용

질 의 : 원통 45113-31('94.1.21)

○ 방산업체가 외부 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도급업체 인원을 생산공정의 일부에 직접 투입하여 계약목적물 생산에 종사토록 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도급비용의 경우에 있어서 직접노무비와 외주가공비 중 어느 비

목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회 신 : 국방부 원가 45113-25('94.2.3)

- 일부 생산공정 도급비용에 대한 비목 적용은 외주가공비로 처리함이 타당

방산물자의 수입관세 계상기준

질 의 : 장기확정계약 체결예정분의 관세계상은

회 신 : 조달본부 법무 45113-494('94.9.15)

- 업체에서 제시한 생산계획서 등의 자료에 의해 수입신고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면 그 확정되는 시점을 수입신고시점으로 보아 관세를 계상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결여되어 수입신고시점으로 보아 관세를 계상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결여되어 수입신고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면 원가계산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되 계약이 체결된 후 수입신고시기가 원가계산시 반영된 시점과 달라 관세부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제령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

관급재료의 감손분 원가인정 여부

질 의 : 조달본부 기원 45113-68('95.3.13)

-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재료관급시 정미량만을 지급하여 업체가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감손량을 사급으로 구입하여 제조 납품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체의 사급분 구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원가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원가 45101-378('95.7.5)

- 부품, 구성품 등을 포함하는 재료의 소요량 중 감손량을 제외한 정미량만 관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급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당해 감손량을 직접 구입하므로써 발생하는 감손비는 고시된 감손율 범위 안에서 재료비로 인정할 수 있음.

원가계산시 적용할 거래실례환율

질 의 : 기획 45113-439('94.5.25)

- 외국환 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래실례 환율은 거래은행별로, 거래시점, 거래규모, 은행에 대한 기여도 및 신뢰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어느 일정시점의 거래실례환율을 파악하여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이에 대한 방안은?

답설 : 외국환은행의 장이 정하여 일간신문에 고시하는 『외국환 대 고객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의 본문은 확정계약의 사전원가계산시 또는 개산계약분 개산원가계산시 적용하고, 『다만,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래실례환율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실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개산계약분의 정산원가계산 등 당해 품목에 대하여 실거래환율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함.

을설 : 『다만,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래실례 환율은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실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확정계약분의 사전원가계산은 물론 개산계약분의 개산원가계산 및 정산원가계산의 경우에 모두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에 있어서 거래실례환율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와 거래실례 환율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회 신 : 국방부이재 45101-341('94.6.21)

-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가격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원가계산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은행의 장 이 고시하는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환산 하여야 하나, 외화의 매입규모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래실례환율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원가계산시 적용할 거래실례환율은 외국환 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시장평균환율)과 동 규정 제1-13조의 외국 환은행 대고객매매율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 견해이고,
- 또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시 모든 원가는 원가계산담당자가 원가계산 시점에서 획득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는 것인 바, 원가계산시 적용할 거래실례환율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전일의 시장 평균환율인 매매기준을 변동사항과 외환거래 규모별 및 각 외국환 은행 별 실거래 평균환율 등을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소관 사항이라 사료됨.

농어촌특별세 원가적용 방법

질 의 : 원통 45113-225('94.6.17)

- 농어촌특별세법이 제정공포(법률 제4743호 '94.3.24)되어 '94.7.1 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부칙 제7조에 의거 관세감면을 받은 방산물자 위한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되는바 방산물자 원가계산시 농어촌특별세 적용기준 및 방법은

가. 적용기준

갑설 : 관세 등 수입제세로 별도 계산

을설 : 외부부대비용으로 재료비에 계산

나. 적용방법

갑설 : '94.7.1 이후 계약체결분에만 적용

을설 : '94.7.1 이후 계약체결분에 적용하고, '94.7.1 이전 계약체결한 품목의 수입품이 '94.7.1 이후에 통관할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 인정

회 신 : 국방부원가 45113-96('94.6.25)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에 따른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시 수입원·부자재 농어촌특별세의 원가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적용기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거 수입품 수입가격 계산의 수입제세로 분류

나. 적용방법

농어촌특별세의 신설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3조 “기타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거 수정계약 사유에 해당함.

개산계약의 계약금액 결정 방법

질 의 : 장특 33432-450('94.7.14)

- 개산계약의 정산시 정산된 금액을 예정가격과 같이 보아서 가격투찰을 시킬 것인지 여부

회 신 : 법무 33432-428('94.8.18)

- 특정비목 확정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방법에 대해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원가계산이 불가능한 비목에 대하여는 ----- 원가자료에 의하여 계약금액

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가격투찰을 시킨다는 규정은 없음.

결국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산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하여도 무방하리라 사료됨. 다만, 예산상의 필요성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정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의동의 형식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방산물자의 수입관세 계상방법

질 의 : 장원일 45113-183('94.9.2)

- 장기 확정계약을 체결 예정분의 수입품 수입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 '93년도에 개정된 관세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수입제세인 관세의 계상여부('94.12.31까지는 관세 100% 감면, '95년도는 관세과세액의 90% 감면, '96년도는 관세과세액 80% 감면, '97년도는 관세과세액의 70% 감면, '98년 이후는 관세 전액과세)

회 신 : 법무 45113-494('94.9.15)

- 관세를 원가계산함에 있어서는 관세의 특성상 수입신고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는 업체의 수입신고시기를 어떻게 정하여 또 수입신고시기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원가를 산정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는데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우선 업체에서 제시한 생산계획서 등의 자료에 의해 수입신고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면 그 확정되는 시점을 수입신고시점으로 보아 관세를 계상하고,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결여되거나 그러한 자료에 의해 수입신고시기가 확정될 수 없다면 원가계산시점(관세 면제)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계약이 체결된 후 수입신고시기가 원가계상시 반영되었던 시점과 달라지게 되어 관세부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회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관급재료의 감손분 원가인정 여부

회신1 : 국방부 원가 45113-30('95.3.22)

- 방산물자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량을 관급으로 구매하여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경우 정미량에 감손량을 포함한 재료소요량을 관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신규개발품의 재료소요량 산출시 감손량 산정이 불가하여 정미량만 관급 조치하는 경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양산제품의 부분적 사급재료에 대한 원가인정은 불가하오니 원가계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회신2 : 국방부 예회 45101-374('95.7.5)

- 국방부원가 45113-30('95.3.22)로 기 회신한 관급재료의 감손분에 대한 원가 인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 통보
 - 부품, 구성품 등을 포함하는 재료의 소요량 중 감손량을 제외한 정미량만 관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급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당해 감손량을 직접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손비는 고시된 감손율 범위 내에서 재료비로 인정할 수 있음.

착수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질 의 : 조달본부 기획 33401-649('95.7.19)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지급규칙 제9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착수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기간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에서 그 사용기간, 금융기간의 연체이자율 및 이자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

- 동 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장기계약에 있어서의 사고이월의 경우를 제외할 수 있다.”에서 단기계약에 있어 납기 내 납품이 완료되지 못하고 기지급된 착수금을 계약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착수금 잔액 및 이자 회수방법에 대한 질의
- 동 규칙 제10조 1항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착수금의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에서 약정이자의 의미(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이란)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01-505('95.8.25)

-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사용기간은 당해업체의 은행계좌 입금일부터 착수금의 회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하여, 연체이자율은 당해업체 주거래은행에서 당해업체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함.
- 동 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다른 방산업체나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는 때에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착수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지급조건에 동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당해 착수금 전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다고 명시한 때에는 당해 착수금에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즉시 그 반환을 청구하고,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서 처리함(지급조건에 착수금의 반환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대금 지급시까지 그 반환을 강요할 수 없을 것임). 이 경

- 우 규칙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동 규칙 제10조 제1항에서의 약정이자상당액이란 동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어음대출금리수준은 해당업체 주거대출은행에서 적용하는 어음대출금리를 말하는 것임.
 - 단기계약에 있어 지급된 착수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고 이월되는 경우에는 착수금 잔액을 회수할 필요가 없음.

○○함 자산재평가 관련 감가상각비 인정여부

질 의 : 해군 기편 45112-2085('95.10.6)

- 계약체결 후 기업합병으로 인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당해계약 조항에 의하여 재평가에 의한 증액분을 불인정, ○○함 재평가차액과 관련한 감가상각비 인정 여부?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2-625('95.10.16)

- 계약상대자가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계약조항의 내용은 현행규정과 배치되고, 이중장부의 작성, 일관성 없는 회계처리 등의 곤란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므로 2차 사업에도 자산재평가를 인정함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은 1차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임.

R.B.S 사업종료에 따른 미감가상각액 처리 방안

질 의 : 조달본부 기원 45113-346('95.11.8)

- '89~'94기간 동안 ○○중공업 R.B.S 사업관련 전용장비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기준한 정액법에 의하여 산출된 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 생산계획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으나,
- R.B.S 사업이 '9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97년도 이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744('95.11.29)

- 방산물자 전용장비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기준한 정액법에 의하여 산출된 기간 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 생산계획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왔으나, 96년도 사업이 종료되어 97년도 이후 잔존 내용연수에 대한 미감각상각액은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할 것임. 이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연상각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비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임.

방산물자의 이윤율 산정기준

질 의 : 조달본부 기원 45113-339('95.10.26)

- 방산물자 원가계산시 이윤은 부가가치기준 이윤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그 이윤금액이 총원가를 기준하여 8.5%미만의 품목을 8.5%를 적용하고, 15.5%를 초과하는 품목은 15.5%를 적용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사항으로 표준차량의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기준 이윤금액이 총원가를 기준하여 8.5% 미만의 품목에 해당되어 총원가기준 이윤율(8.5%)을 적용하였음.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45('96.1.23)

- 새로운 이윤산정제도 시행시까지의 현행 산정기준을 계속 적용하기 바람.

개산계약 정산시 제비율 적용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617('95.12.18)

- 납기가 '95.9.30인 개산계약의 정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95제비율에서는 실제 발생한 직접비가 간접비로 반영되었고, '96제비율에서는 실제대로 반영된 바,
- '95적용 제비율과 '96적용 제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46('96.1.23)

- 계약의 조건, 계약의 특수성 및 이행기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9조 등의 규정을 적용, 적의처리 사항임.

방산전용장비 및 개발비 미보상비용의 원가인정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351('96.6.5)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방산물자를 조달함에 있어, ○○사업(40mm함포) 시제(91년 ○○○과학연구소)시 투입된 비용 중 미보상비용을 양산시 원가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461('96.7.2)

- 당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전용장비 및 기구, 공구의 감가상각비는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0조 제1호 다목 및 동 시행세칙 제2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연상각비 초과금액 및 제비율에 미반영된 93년 당기상각분은 제비율(간접가공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임.

- 기술개발비는 당해 계약이행과의 관련성(기여도), 비용의 성격, 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1조제6호 및 동 시행세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할 것임.

일반개산계약 이행 중 개산계약 금액의 변경

질 의 : 국방과학연구소 행내 410-355('96.6.26)

- 개산계약 이행기간 중에 계약범위의 일부 변경사항(항목취소)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동 계약범위 삭제를 위한 수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삭제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개산원가를 개산계약금액에서 감액 처리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2-480('96.7.9)

- 일반개산계약체결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9조,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32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산계약금액을 지급가능한 계약금액을 상환으로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한다는 특약규정을 정하였다면 계약품목들의 당초가격이 얼마이든 사후 정산원가에 의하여 재산정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지급 가능한 계약금액의 상한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품목의 일부 취소로 인하여 개산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당초의 지급가능한 계약금액상환(본 질의의 경우 당초의 개산계약금액)도 따라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정한 지급가능한 계약금액 상환도 변경하는 것은 일반개산계약의 취지 및 계약특수조건의 설정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방산전용자산 및 기술개발비의 상각방법

질 의 : 조달본부 기원 45113-372('96.10.17)

- 내용연수로 상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미가동 전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정여부?
- 전용구축물의 자본적 지출금액(감가상각대상)을 기술개발비로 인정할 것 인지의 여부
- 위의 금액을 전용구축물로 처리할 경우의 상각방법
- 방산전용자산 및 기술개발비를 장기계획물량이 아닌 법정내용연수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736('96.10.24)

-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때에는 실제 생산기간에 대해서만 배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술개발을 위한 용도가 아닌 생산전용 구축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기술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 전용구축물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법정내용연수에 의하여 상각하되 그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승인을 얻어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여 특별상각하거나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 방산전용자산 및 기술개발에 대하여 법정내용연수로 상각하는 것이 어느 경우에는 합리적이라 볼 수는 없으며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0조제1호 다목 및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개발비 원가계산의 적용

질 의 : 조달본부 기원 45113-388('96.11.22)

- 조달본부가 감사원으로부터 기술개발비는 규칙(국방부령)보다 시행세칙(조달본부제정)을 적용하여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술개발비만 인정함이 합리적이 아니냐고 질문설을 받고, 상위법인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 조달본부 원가담당자는 감사 수감 중 차후 원가정산시에는 시행세칙을 적용하여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술개발비만 계상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이행 또는 취소할 근거를 설정하고자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807('96.11.27)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 시행세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시행을 위하여 동 규칙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이를 원가계산에 적용하여 예정가격 등을 결정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재무관이 적의 판단, 조치하여야 할 사항임.

직업훈련생 현장투입 비용의 회계처리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757('96.12.27)

- 주식회사 ○○○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용 예정인 직업훈련생을 한시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직업훈련생 관리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11('97.1.8)

- 방산물자의 생산현장에 투입된 직업훈련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제품별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직접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동 비용이 임금 성격의 비용이 아니므로 직접노무비가 아닌 직접경비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위의 비용을 제품별 원가계상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경비로 인식하여야 하며, 다만 비용·효익 측면에서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일지라도 업체의 편의에 따라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을 것임. 또 직업훈련생의 노무공수는 그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간접비(예 : 감가상각비 등)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외주정비 원가정산시 제비율 적용

질 의 : 조달본부 장원일 45113-335('96.12.24)

- ○○○ 장갑차 외주정비 원가정산시 제비율은 계약특수조건상의 중도확정시기에 적용 가능한 '96 적용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건의 중도확정시기인 '96.10.30 당시 '96 적용 제비율은 '96 감사원에서 통보된 제비율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되어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43('97.1.17)

- ○○○ 장갑차 외주정비에 대한 정산원가계산은 동 사업이 계약특수조건 제33조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지 못한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중도확정일의 제비율을 적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96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동 사업을 포함한 주요 방산업체의 '96 적용 제비율을 시정하도록 조치되었다면 동 사업에 대한 제비율 적용문제는 감사결과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기 통보된 심사의 결과는 별도로 고

려될 수 있을 것임.

개산계약금액 초과분과 지체상금의 상계여부

질 의 : 국방과학연구소 행내 410-28('97.1.21)

- 개산계약금액 범위 내 정산조건의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 후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정산원가가 개산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산계약초과분과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65('97.1.28)

- 정산원가가 개산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특수조건에 의하여 개산계약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지체상금은 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미납품분 해당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하여 '을'로부터 납부받거나 계약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음.

수리분석비 원가인정 여부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31('97.1.23)

- 해군에 납품한 ○○○레이다 장비의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시 정비불가능한 품목은 원제작사인 미○○사에 정비 의뢰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미○○사의 정비견적단가가 해군의 신품구입실적단가의 60%를 초과하여 정비불가판정을 받았음. 미○○사는 정비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입한 인건비(수리분석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동 비용의 원가인정 여부를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66('97.1.28)

- 계약특수조건에 의하여 ‘갑’이 증거서류,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적정원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해 장비를 생산, 납품한 방산업체가 당해 장비의 정비를 위한 점검,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정비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재검토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

계약의 범주 및 사후원가관리시의 임의적용

질 의 : 국방부 감일 45113-33(‘97.2.6)

- 해군중앙경리단에서 ‘94.10.21 일반경쟁으로 계약체결한 잠수함 정비장비 수중흡음체 제작, 설치 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종류

갑설 : 일반경쟁계약으로도 계약당사자들의 특약내용인 계약특수조건에 계약금액 전액을 한도액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고, 시방서특수사양에 의거 계약시점에서 주재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계약 건은 개산계약임.

을설 : 일반경쟁계약이고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상에 개산계약이라고 명시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본 계약은 확정계약임.

나. 정산시 노무단가 계산방법

갑설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사후 정산시 노무단가는 회계 964.4-378 (‘81.10.22) ‘회계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거 “사후 원가관리시 임의적용 방법”대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 산정하여야 함.

을설 : 노무비 산정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후 정산시 노무비는 정부 노임단가가 아닌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95('97.2.11)

- 계약체결시 예산회계법 제89조의 규정에 개산계약의 특징을 그대로 계약 조건에 포함하고 있어 입찰방법 또는 계약금액의 상한설정여부와 관계없이 개산계약의 범주에 속하는 계약으로 판단됨. 만약 확정계약이라면,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정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 후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비목만 특정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의 계약특수조건을 설정해야 합리적임. 그러나 전체 비목을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사후정산토록 약정하였다면 계약상대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방법을 이용하였을 뿐,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 확정하는 개산계약으로 볼 수 있음.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의 사후 정산시에도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토록 운영하여 왔음.

일반관리비 산출시 관급재료비 처리방법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72('97.2.14)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 부칙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산정시 관급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는바, ○○○사업의 FMS관급재료와 관련하여 일반관리비 산출시 문제점이 있어 관급재료비 처리방법을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104('97.2.15)

- 1996.12.31 이전에 체결하고 1997.1.1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특정계약(개산계약)의 관급재료비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반관리비율 및 일반관리비의 산정이 크게 왜곡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 특정계약의 관급재료비만 배제한 후 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율 및 일반관리비를 산정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부칙 제2항은 상황변동에 따라 적정한 제품원가를 산정한다는 측면에서의 예외규정이며, 동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규칙의 계산방식이 부적정한 제품별, 계약별 원가산정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비용추세분석이 요구됨. 특수한 경우란 사급보다 관급의 비중이 크고 일반관리비와 관급재료비간에 관련성 또는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대형사업 계약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반관리비와 관련성이 깊은 정상적인 여타 계약에 일반관리비가 과소 배부되는 경우를 말함.

노무비 단가의 원가 인정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167('97.4.4)

- 노무비단가 계산시 월 4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의 원가인정 방식에 의문점이 있어 그 처리방법을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243('97.4.17)

- 노무비단가의 산정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 시행세칙 제21조 제4항제1호에 의하되, 노무비를 사전에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년도에 실제 발생한 노임과 노무량에 당해 계약기간 중의 임금상승분을 고려하여 노무비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발생한 노임과 노무량에 의하여 노무비 단가를 산정하여야 함.
- 직접노무비를 산정하는 때에는 노무량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 시행세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업체의 과거 실적, 학습효과, 조업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함. 다만 노무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총노무량을 노무량으로 적용하여야 함.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는 근로시간의 구분, 근로시간의 제한과 휴식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동법 제 42조의 근로시간을 1주간 12시간이 아닌 월간 48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하여 연장근로는 주 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집계하도록 정한 규정으로서,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배한 근거로의 대가를 제한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금지한 규정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음.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시 제비율의 적용

질 의 : 국방과학연구소 행원 410-64('97.4.16)

- '96.6.30부로 계약이 완료된 개산계약을 '97.4 현재 원가정산하는 경우 계약완료시 적용되는 '96적용제비율(국방부 예회 45113-736, '95.11.27)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96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이 요구하여 수정한 수정 제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260('97.4.21)

- 계약기간이 '97.1.1 전에 완료되었으므로 계약완료시 시행된 구규정(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443호, '94.2.28) 제29조제3항에 의거 정산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97적용제비율('97적용 방산물자 제비율 통보, 국방부 예회 45113-37, '96.12.17)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96.12.17에 통보된 제비율은 감사원 처분요구를 반영하여 산정한 제비율임.

관급재료비에 대한 운용지침

질 의 : 관급재료비에 대한 운용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391('97.6.9)

- 관급재료비라 함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제13호의 관급재료로서 제조과정에 투입되어 가공, 조립되는 관급재료의 금액을 말함.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4조에 의한 일반관리비 계산시 일반관리비의 산정기간과 적용시점에서 관급재료의 물량 또는 금액차이가 커서 원가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관급재료의 금액을 일반관리비율과 이에 대응되는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관급재료비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관급재료와 사급재료의 상호 전환으로 인한 관급재료의 금액변동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반관리비율 산정시 관급재료비 제외가능 여부

질 의 : 해군기편 45112-1029('97.6.23)

- 해군조함사업의 경우 사업의 대부분이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장기계약 사업으로서 고가인 관급장비가 특정시점에만 투입되어 제비율 산정 및 적용시 서로 대응되지 않아 원가왜곡이 예상되는바, 일반관리비율 산정시와 적용시 관급재료의 금액을 모두 배제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동 관급재료비에 이윤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503('97.7.16)

- 관급재료비에대한운용지침(국방부 예회 41341-391, '97.6.9) 제1항에 의하면 “관급재료비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 제13호의 관급재료로서 제조과정에 투입되어 가공, 조립되는 관급재료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4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의 산정기간과 적용시점에서 관급재료의 물량 또는 금액차이가 커서 원가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관급재료의 금액을

일반관리비율과 이에 대응되는 제조원가 포함되는 관급재료비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관급재료와 사급재료의 상호전환으로 인한 관급재료의 금액변동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관급재료비에대한운용지침 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가왜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원가왜곡을 입증할 수 있는 비용추세분석이 요구됨.
- 관급재료비에대한운용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급재료비의 정의에 부합되는 관급재료의 금액은 관급재료비로서 이윤산정기준및제비율적용지침에서 규정하는 이윤이 지급되어야함. 동 관급재료의 금액이 관급재료비에대한운용지침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윤은 지급되는 것임.

업체부담 투자비의 사후보상 문제

질 의 : 국방부 획이 33520-118('97.7.7)

- ○○○연구개발사업비는 총사업비의 70%를 정부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30%는 업체에서 선투자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후, 업체투자분은 양산시기에 환급해 줄 것을 전제로 국가 주요정책사업으로 결정('97.7.3 : 한국우주개발정책심의회)되었는바, 업체투자분인 30%의 보상방법에 있어서 업체투자분의 원금만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금과 이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510('97.7.18)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약시 보상하지 못한 업체부담 투자비를 차후 양산계약시 보상하도록 하는 계약방법은 정부관련부처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미보상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의 보상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함.

제비율 적용기준 및 계약조건 해석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367('97.7.28)

○ ○ ○정밀은 K사업의 주 계약업체인 ○ ○ 항공과 방위산업관계법령을 적용하기로 하고 일반개산계약형식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는바, 원가정산시 제비율의 적용기준과 계약조건 중 상한가 정산방식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91.12.28에 개산계약으로 체결하여 '96.9.10 계약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본 계약의 경우 '을'과 '병'간 원가정산시 적용할 규칙

나. 동일 계약서상에 포함된 세가지 품목의 상한조건 해석시 세 품목의 합계액을 상한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품목별로 상한금액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562('97.8.1)

○ 동 계약은 96년 9월에 납품이 완료되었으므로 당시 시행된 구 규정(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443호, '94.2.28)에 의거 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29조 제3항에 의거 '97적용제비율('97적용방산물자 제비율 통보, 국방부 예회 45113-37, '96.12.17)을 적용하여야 함.

○ 품목별로 지급금액의 상한을 설정한 계약조건은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었으므로 그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함.

개산계약 정산시 적용할 환율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395('97.8.12)

○ 개산계약 정산시 해군에서 B/L 도착 후 3일째 되는 날의 환율과 업체의 실결제환율을 비교하여 선택적으로 정부에 이익되는 환율로 정산하고 있음.

구분	결제금액 (DM)	수금 일자	B/L 도착일	실결제기준		B/L 도착 3일 기준		정산 환율
				일 자	환 율	일 자	환 율	
1	32,448,000	'90.5.22	'90.5.13	'90.6.7	424.15	'90.6.2	420.65	420.65
2	27,680,170	'93.6.16	'93.6. 1	'93.6.7	495.91	'93.6.3	504.36	495.91

- 본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의 “업체의 계약상대자의 환어음결제환율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람.

회 신 : 국예회 41341-610('97.8.22)

-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시는 실제 결제된 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지체로 인한 수수료 등은 원가에서 부인하여야 하며, 실제 결제된 환율이 부적정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환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단순히 환율의 유·불리만을 가지고 실제 결제된 환율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교육훈련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적용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395('97.8.12)

- 해군과 ○○중공업(주)가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사업의 DDS(Deep Diver System) 교육훈련비를 정산함에 이견이 있음.

구 분	대우중공업	해 군	비 고
재 료 비	-	-	
경 비	1,904.262	1,094.262	
일반관리비	54,713	-	5%
이 윤	5,471	-	10%
계	1,154,446	1,094,262	

- 당초계약시 DDS교육훈련비는 함건조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 가. 재료비에 포함된 DDS 교육훈련비의 성격을 용역으로 구분하는데는 상호 동의하나
- 나. 교육기관이 당사가 아닌 외국교육훈련기관이며, 교육의 대상도 해군인 관계로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구예회 41341-395('97.8.22)

- 별도의 계약조건이 없는 이상 본 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재무관은 당해 교육훈련용역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재검토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유형자산 관련 투하자본 인정여부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406('97.8.18)

- 토지매입과 관련된 공장부지가 '91년 진사지방공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단지정 전 매입조성부지는 유형고정자산으로 투하자본계산시 인정받고 있음.
-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한 공장부지에 대하여 선수협약서에 의거 대금을 이전 받아 등기할 예정임. 그러나 97년 현재는 기업의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재무재표에도 토지항목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투하자본으로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611('97.8.22)

- 업체가 특정 유형자산에 대한 대금을 이미 지급하고 동 자산을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된 금액을 투하자본금액 및 원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착·중도금의 지급한도

질 의 : 조달본부 기원 33401-379('97.8.29)

- 장기계속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방산물자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 당해연도의 연부액, 계약서상 계약금액 또는 총부기금액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답설 : 당해연도 연부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착·중도금의 총지급률은 연부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을설 : 총부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착·중도금의 총지급률은 총부기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예산전액을 지급할 수 있음.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675('97.9.10)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방산물자의 조달계약은 장기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착·중도금의 지급한도를 판단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함.
- 또한 장기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차연도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부기금액(예산을 확보하여 장기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계약금액이 되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착·중도금의 지급한도를 판단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방법

질 의 : ○○중공업 항공31126-268('97.8.18)

- ADD의 방위력 개선사업에 있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시기를 경과한 후에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방법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728('97.10.10)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발행한 지체상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함.
- 이건의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를 경과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정계약체결시 단순히 납기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므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계약보증금상당액을 한도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설정방법

질 의 : 공군 기관재 45110-2737('97.9.23)

- 공군은 ○○○ 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설정 및 지체상금의 부과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계약체결(개산계약)시 계약금액의 설정방법

- 1) 사업비용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정부가 70%, 업체가 30%를 부담하고 양산단계에서 업체부담분을 정부가 보상해 주기로 정책 결정하였으며, 2차년도 이후의 예산은 아직 미 확보된 상태임.

2) 계약형태 : 장기계약/장기계속계약

3) 장기계속계약형태로 계약시 총부기금액의 설정방법 : 총사업비(100%) / 체계개발시 정부 부담금(70%)

나. 분할납품되는 품목의 지연납품시 지체상금 징수방법

납품품목의 납기가 품목별로 사업기간 내에 서로 상이하나 정산은 전체사업 종료시까지 유예됨.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731('97.10.14)

- 2차년도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본 '○○○ 체계개발사업'에 대한 계약의 경우, 발생한 총사업비용 중 일부를 업체가 먼저 부담하도록 하고, 동 업체 부담분을 차후 양산단계에서 보상하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한 관계로 어떠한 금액을 부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음. 따라서 재무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거 사업의 특성과 계약상대자간의 합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행사관련비용의 원가보상 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 : 조달본부 기원 33451-475('97.11.4)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시 원가로 인정되는 공식행사 관련비용의 범위 및 동비용의 보상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국방부가 적극 참여를 권유하여 업체가 각종행사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한 업체의 비용을 방산물자의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비용을 원가로 인정하여 보상할 경우 그 보상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809('97.11.12)

-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행사(진수식 등)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만을 직접경비상의 공식행사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광고선전비나 접대비 성격의 비용은 엄격히 부인하고 있음.
- 에어쇼 등과 같이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업체의 광고선전비나 주관 정부단체에 대한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원가항목에 해당됨.
- 곧, 방산물자의 생산, 조달과 관련이 없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원가로 볼 수 없음.

관급품 납품시점 관련 질의

질 의 : 조달본부 기획 33572-1050('97.11.5)

- 관급품 생산업체에서 최종조립업체에 관급품을 납품할 경우 행정처리기간이 불필요하게 소요되어 방산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음.

<문제점>

- 계약조건상 현지 물품 인도시점을 납품일자로 인정하지 않고 서울에 상주하는 품연소 물품출납관의 납품조서 원본 확인시점을 납품일자로 봄으로써 동 기간만큼 납기가 늦어진 것으로 간주됨.
- 물품 인도전에 검사관의 검사를 받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낮은 상황임.

이러한 실태의 개선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안을 건의함.

<대안>

- 품관소 물품출납관을 현지에 파견·상주시켜 확인토록 함.
- 관급품 납품업체는 물품 인도 후 FAX로 사본을 송부하고, 품관소 물품관리관은 처리 후 사후에 원본을 송부 받아 대조 확인하도록 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809('97.11.12)

- 현행 계약제도 관련규정상 각 대안의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음.
대안 2의 경우 현지의 실제 납품시점을 납품일자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되, 대가는 원본 조서를 확인 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음.
- 경직된 행정관행으로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업체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함.

감가상각비 특례적용 수출품의 범위

질 의 :

- 감가상각비 특례적용 수출품의 범위에 대한 의견

회 신 : 국방부 획협 33500-646('97.11.17)

- 방산특조법의 제규정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방산물자로 지정한 물자 외에도, ①방산특조법 제4조의2에 의하면 무기체계로 채택되지 않은 물자라도 기본적으로 군용이 목적인 물자는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②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는 방산물자의 지정대상 범위를 포괄되는 것이므로 ③국방부가 지정하는 방산물자의 경우로 국한하여 수출품의 범위로 한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방산물자로 지정된 것 외에도 수출되는 물자가 군용이거나, 국제적으로 무기품목 및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된 물자(통산부 고시 97-108호, '97.6.20)로서 수출용으로 생산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출 허가 대상이 되므로 이를 전용 방산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하였다면 특례적용의 대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임.

방산물자 정비계약시 하도급 관련 질의

질 의 : 육군관기 37554-318('97.12.16)

- 정비기술 보유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직접계약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방법
- 전자전장비 모듈은 방산업체인 ○○정밀이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밀은 정비능력이 없고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주)○○이 정비능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육군과 계약을 체결한 ○○정밀이 동 정비용역 전량 (주)○○에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재무관이 하도급 계약조건으로서 불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이 임의로 (주)○○에게 하도급 후 정비 완료 납품하였을 때,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의 정산방법
- 위 3항의 문제로 인하여 원가계산보고서의 작성이 지연되어, 금년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모듈 정비예산의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 계약조건을 위배(하도급 불가조건에 불구하고 임의로 하도급하여 정비)한 경우의 제재방법 및 관련규정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905('97.12.19)

-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정비)능력을 잃었다면 재무관은 사실 확인 후 능력이 있는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와 동 물자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국방부(군수국)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임.
- 방산물자와 일반물자 모두 해당 계약목적물 자체의 하도급은 불가함.
- 이 건의 경우 계약의 목적이 방산물자의 정비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계약형태가 아닌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형태가 잘못되었더라도 계약자체는 유효하므로 잘못된 계약체결의 책임문제는 별개로 하고 계약조건상 규정된 방식으로 원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임.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명백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조건 위배시 계약금액의 지급방법이나 원가 인정방법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다면 이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고이월 여부는 재무관이 판단할 사항임.
- 방산업체가 부정당행위를 하였을 경우의 제재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불가항력적 사유와 계약자의 귀책사유 관련 지체상금

질 의 : 국방과학연구소 행내 410-1299('97.12.19)

- 계약체결시 특정부품은 국내 조달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가 해외업체로부터 동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조립하여 계약목적물을 납품하려 하였으나, 계약이행기간 중 해외업체로부터 동 부품이 단종 되었음을 통보받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대체품을 수배하고, 새 부품의 특성을 고려한 회로를 재설계한 후, 이를 다른 해외업체에 발주하여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납기를 지키지 못하였음. 이러한 사유를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보아 지체 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921('97.12.24)

-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등 제3자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사유를 말하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라 함은 계약자의 귀책사유(고의, 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

목적물의 내용, 특성, 계약조건 및 당해 사유의 정도,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수출품의 정의

○ 관련근거

가. 방산물자의원가계산규칙(제22조 별도 2호 나목)

나. 회신 : 국예회 41341-845('97.11.27)

○ 지침내용

「규칙」에서 규정하는 수출품은 수출되는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와 국방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은 물자로서 주요 방산물자와 유사한 물자를 말함.

※참고

- 지정된 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 수출품으로 인정
-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 주요 방산물자와 유사한 물자를 수출할때 국방부장관의 허가(동의) 절차를 밟은 물자 → 수출품으로 인정
 - * “유사한 물자”란 구매국의 요청에 따라 사양이나 규격 등을 변경하였으나 방산물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의 허가(동의)”에 초점을 두어 판단하여야 함.
 - 일반 방산물자와 유사한 물자를 수출할 때
 - 수출품에서 배제
- 수출시 주계약업체 외에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동규정 적용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 의 : 국방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회 신 : 재정경제원 41301-177('98.1.23)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출하는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찰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 전에 노임, 수입원자재가격 등의 변동된 때에는 변동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요건(계약체결 후 12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요건 충족)을 준수할 경우 계약이행이 어려운 유류 등 특수한 품목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함.
- 지수조정방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경비(공사에 한함)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 썸의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기준시점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 당시의 동 가격 평균치를, 비교시점의 지수는 물가변동 당시의 동 가격 평균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중 외화로 표시된 기계가격의 경우에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 초 환율을 적용하되, 연도 중에 환율변동이 5%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질 의 : 국방부

- 계약기간연장 및 관급자재 대체

회 신 : 재정경제원 41301-177('98.1.23)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바, 최근의 환율급등, 은행의 L/C개설정지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올 경우 계약목적물의 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아 당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간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할 수는 없으나, 특히 환율상승 등으로 인하여 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올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질 의 : 조달 장일기 33450-27('98.1.15)

- 환율변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지
- 환율변동이 조정대상이 될 경우 물가변동의 기산점은
-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경우 환율 적용시점은
- 본래 계약기간은 120일 이내였으나 납품지체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이미 납품대금 지불이 완료된 부분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지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72('98.2.10)

- 환율변동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임. (국제령 제64조)
- 물가변동의 기산점은 계약체결시점과 통관시점임.
-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국제규칙 제74조 제5항)
- 다만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최근의 환율급등, 은행의 L/C개설 정지 등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금액 증액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전제조건이므로 납품대금 지급이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납품대금 지불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중도확정계약의 체결 및 운영시 유의사항

- 관련근거 : 국방부 예회 41341-225('98.4.15)
- 중도확정계약의 체결요건
 - 가. 연구개발 및 시제 생산후의 품목에 대하여
 - 나.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지만 다. 계약이행의 중도 또는 일정량의 생산 후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 중도확정계약의 체결방법
 - 가. 계약은 개산가격에 의하여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에 그 때까지 획득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확정함.
 - 나. 중도확정시기 : 계약이행 중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현 중도확정계약 운영상의 문제점
 - 가. 중도확정계약의 중도확정시기가 너무 늦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 확정시기보다 늦게 계약금액을 확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일반 개산 계약과 같거나 유사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나. 일반개산계약은 연구, 시제생산 또는 초도생산을 위한 계약체결시에만 가능한 계약형태이므로 현실적으로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함.
 - 다. 또한, 중도확정계약시에는 일반개산계약보다 더 많은 이윤금액을 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경우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게 됨.
- 개선 지시사항

중도확정계약 체결시에는 중도확정시기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규정된 중도확정시기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원가정산방법상 일반개산계약과의 차이를 명백히 할 것.

사전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수입품원가계산시 환율적용 기준

질 의 : 기원 33434-301('98.6.11)

- 방산물자의 사전품질보증 활동(지시)에 의거 업체가 당해품목 생산을 위해 계약체결이전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자재를 도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확정계약 원가계산시 적용할 외화표시가격 및 환율은
 - 갑설 : 원가계산시점의 외화표시가격(또는 국내구입가격) 및 환율 적용
 - 을설 : 실발생 외화표시가격(또는 국내구입가격) 및 결제 환율 적용

회 신 : 국방부 예회 45113-385('98.6.24)

- 사전품질보증활동지시에 의거 계약 전 생산활동으로 발생된 수입자재(또는 국내자재)의 외화표시가격(또는 구입가격) 및 환율에 대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확정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시
가. 원가계산시점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는 실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나. 미 발생분은 원가계산시점의 구매가능 가격 및 환율을 파악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임.

Banking Charge의 수입부대경비 인정여부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407('98.7.13)

- 독일의 ○○사로부터 방신장비 수입시 발생한 인지대, 전신전화료, 서류 운송료 등의 은행수수료(Banking Charge)에 대한 원가 인정 여부질의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481('98.8.8)

- 방산물자 제조용 부품의 해외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Banking Charge는 수출업자가 자국 내 거래은행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서 현행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수입부대경비”로 볼 수 없어 원가로 인정이 불가함.

사업종료 후 잉여자재의 원가인정 여부

질 의 : 항공전 39932-347('98.9.5)

- 항공기 생산 종료 후 일부 잉여자재 발생시 원가 인정 여부

회 신 : 국예회 41341-601('98.9.25)

- 사업종료 후 발생하는 잉여자재분은 현행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15조 제2항,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 시행세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볼 수 없고, 같은 규

칙 제28조 제3항 및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발생원가로 인정 곤란

- 그러나 KFP사업이 기술도입생산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측의 지침에 의거 계약생산물의 소요자재를 일괄구매하였고 업체에서 대금을 공급자측에 기지불한 점을 감안, 사업종료 후 발생하는 잉여 자재분에 대한 처리지침을 수립·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가계산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사업관리기관에서 판단 처리할 사항.

제조에 직접 투입된 실습생의 노무비 원가인식 방법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597('98.10.7)

-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방산물자원가계산에관한규칙제16조②)”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 예회45113-17('97.1.8)에서도 “방산물자의 생산현장에 투입된 직업훈련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제품별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이라 답변되어 있는바, 당사의 경우처럼 우수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실습생에 대하여 수습채용으로 인사발령 조치하고, 정규채용인원과 동일한 임금Table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일정기간 교육훈련 후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일보를 작성함으로써 제품별 투입 M/H 파악이 가능한 점, 더구나 '99적용('97실적)제비용 산정 자료 작성시 실습생에 대한 인건비(M/H)를 직접노무비로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습생의 노무비를 직접노무비(M/H)로 인식이 가능한지 직접노무비(M/H)인식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특정년도가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실습채용 하였으나 '97년의 경우, 국가적 어려움(IMF)으로 당사는 '98물량감소를 예측하여 부득이 '97.12.31 퇴직조치 하였음)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630('98.10.12)

- 제조업체가 정규사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한 실습생을 직접 제조현장에 투입하여 발생하는 인건비를 직접노무비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또한 '99적용('97실적) 제비율 산정자료 작성시 노무공수(M/H)를 직접 파악하여 제품별로 구분하였다면, 실적 작업시간 집계표 및 관련자료에 대한 원가담당자의 실질적 검토를 통해 실습생의 직업이 단순보조작업이 아닌 계약목적물 완성을 위해 직접 작업에 투입된 노동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KFP 2차사업의 중도확정시 제비율 적용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619('98.10.10)

- 원가관련 규칙에 따르면 중도확정계약의 경우 중도확정 시기 이전에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당해 계약의 중도확정 시기에 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98년 6월까지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계산되는 금번 중도확정계약의 경우에 98년 제비율을 적용해야 타당하지 않는지 여부
- 동 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대 납품분으로 중도확정토록 한다면 97년 12대 납품분만으로 잔여 대수 포함된 총 계약 물량(○○대)의 가격을 확정해야 되는지 여부
- 원가 관련 규칙에도 불구하고 금번 중도확정 원가 계산시 직접비 발생 실적은 98년 6월까지 실적을 적용하면서 제비율만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12대 납품분 해당년도인 97년 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690('98.11.2)

- 중도확정계약은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후의 품목에 대하여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이행의 중도 또는 일정량의 생산 후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목적물의 성질 및 계약이행중의 사전변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등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로 중도확정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금액 확정이후 초과발생비용 내지 비용절감에 따른 손익위험부담은 계약형태의 특성상 당연히 계약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임.
- 또한 '갑', '을' 간 계약 및 '을', '병' 간 계약은 각각 유효하게 성립한 별개의 계약으로서, '을'의 중도확정시점에 '병'의 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을', '병' 간 체결한 중도확정계약의 계약금액 결정기준이 되는 중도확정시점 및 적용 제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을', '병' 간 체결한 중도확정계약의 원가정산은 방산물자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8조제3항(중도확정계약 정산원가의 계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중도확정계약 계약금액의 결정)의 규정에 준거하여 계약특수조건에서 정산중도확정기준에 따라 하여야 할 것임.

KFP 2차 사업수행에 따른 국내 기술개발비 및 시제개발비의 이윤산정 기준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736('98.9.15)

- '93년 8월 11일 국방부 조달본부와 중도확정계약 체결되어 정산중인 KFP 2차사업의 연구개발비인 국내 기술개발비 및 국산화 시제개발비용에 대한 이윤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갑설 : KFP 2차사업의 국내기술개발비 및 시제개발비용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2조(직접경비) 별표 8항 연구개발비에 해

당되므로 발생비용 전체에 대하여 16%를 적용해야 함.

을설 : KFP 2차사업의 국내 기술개발비는 기술도입비 성격으로 간주하여 계약수행노력보상을 5%를 적용하고, 시제개발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각각 5%, 9%, 8% 적용해야 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762('98.11.30)

- 국내기술개발비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KFP 2차 계약이행계획서'의 일부분인 기술관리 문서의 작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동 기술관리문서의 작성이 방산원가계산규칙, 동 시행세칙 및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한 연구개발활동이라 볼 수 없어 연구개발비로의 인정은 불가하나, 계약조건의 이행과 관련한 국내발생비용으로서 이윤산정시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국산화 시제개발비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특정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인 경우에는 방산원가계산규칙 별표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음.

중도확정계약시 제비율 적용방법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619('98.10.16)

- “갑”, “을” 및 “병”간 계약형태를 중도확정계약으로 하여 각각의 중도확정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중도확정시점이 “을”의 경우 '98년, “병”은 '97년이 됨에 따라 “병”의 원가정산을 “을”의 중도확정시점에 할 경우 적용할 직접비 원가자료 및 제비율 적용에 관해 질의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690('98.11.2)

- “갑, 을간 계약” 및 “을·병간 계약”은 각각 유효하게 성립한 별개의 계약으로서 “을”의 중도확정시점에 “병”의 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을·병”간 체결한 중도확정계약의 계약금액 결정기준이 되는 중도확정시점 및

적용 제비율은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 “을·병”간 체결한 중도확정계약의 원가정산은 방산물자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3항(중도확정계약 정산원가의 계산) 및 계약 사무처리규칙 제22조(중도확정계약 계약금액의 결정)의 규정에 준거하여 계약특수 조건에서 정한 중도확정기준에 따라 하여야 할 것임.

설치시운전비 및 시스템체계장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원가적용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793('98.12.12)

- '98. 11. 19일 지시된 방위력개선 ○○○2사업 관련하여 주장비의(H/W와 S/W) 설치 및 성능시험과 시스템 체계 장비에 필수적인 S/W 개발에 관련된 노무비 및 경비의 원가계산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답설 : 설치 및 성능시험비는 주 장비(H/W와 S/W) 제조의 일련과정이므로 제조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S/W개발은 용역활동이므로 개발기간은 용역원가계산 후 제조원가의 직접경비(연구개발비)로 반영하여야 함.

을설 : 설치 및 성능시험비는 용역활동의 업무수행이므로 용역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842('98.12.30)

- H/W 및 S/W로 구성된 지휘통제장치 등은 그 특성상 함상에서 체계결합 및 함정사의 제장비(레이다, 미사일 등) 등과 연동이 이루어지고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평가를 통해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하자 없음이 입증된 후 수요군에 납품되어야 할 것인바,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시스템체계장비를 생산한 제조인력에 의해 설치 및 시험평가가 이루어지고, 설치시운전비 등의 비용을 용역활동(ILS, 교육훈

련)비용과 구분하여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합상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체계장비의 설치 및 시험평가는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제조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또한 시스템체계장비의 설치 및 시험평가는 주변장치와의 연동 및 체계 종합의 수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특성상 H/W 및 S/W의 결합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S/W의 H/W 주입 및 성능평가는 결과적으로 시스템체계장비의 설치 및 시험평가의 일부로서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제조행위 보아야 할 것임.

퇴직금 계산대상 급여액의 범위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179('99.3.16)

- IMF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하에서 위기극복시까지 한시적으로 자진 반납 감액하고 급여는 감액 후 급여, 퇴직금은 감액 전 급여로 설정 회계 처리한 경우 방산원가계산의 퇴직금 계산 대상 급여액 산정 방법

회 신 : 국제회 45113-220('99.4.9)

- 규칙(제16조)에 정하고 있는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 실제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계 질의 사례의 경우 총급여 중 상여금 일부에 변동이 있을 뿐 이외 기본급, 제수당 퇴직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 형식으로 감액하면서, 퇴직금은 감액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노사 합의(내지 업체의 사규) 사항은 퇴직급여 산정 대상금액 결정기준이 될 수 있음.
- 공적 효력이 인정되는 업체 사규 내지 노사 합의사항에 퇴직 급여 계산

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퇴직자에게 퇴직 급여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된다면, 회계질의 사례의 경우 퇴직금 계산대상 급여는 감액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방산물자 원가계산시 실 발생비용보상에 부합됨.

퇴직금 대상급여액 산정방법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179('99.3.16)

- IMF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으로 발생된 급여삭감시의 퇴직금 대상급여액 산정방법

답설 : 재정경제부 예규(소득 46073-13, 1998.04.01)의 상담 사례로 보아 회사결산 퇴직금 설정 및 퇴직자에게 지급시 계산 대상 급여액인 감액전의 급여 33백만원을 퇴직금 계산 대상 급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을설 : 회사가 실 퇴직자에게 지급 및 설정하여도 방산원가규칙의시행 세칙 제17조(퇴직급여)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금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어 지급되지 않는 노무비는 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실지급액인 30백만원 대상 급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회 신 : 국방부 계예 45113-220('99.4.9)

- 방산물자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16조에 정하고 있는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 실제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계질의 사례의 경우 총 급여 중 상여금 일부에 변동이 있을 뿐 이외 기본급, 제수당, 퇴직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여금 일부를 자진반납 형식의

로 감액하면서, 퇴직금은 감액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노사합의(내지 업체의 사규)사항은 퇴직급여 산정대상금액 결정기준이 될 수 있음.

- 공적 효력이 인정되는 업체사규 내지 노사합의서에 퇴직급여 계산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퇴직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된다면, 회계질의 사례의 경우 퇴직금 계산대상급여는 감액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방산물자원가계산시 실발생 비용보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수입품의 원가정산시 환율적용 및 계약금액 조정

질 의 : 방진회 진흥 800-84('992.3)

- 개산계약으로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품의 원가정산 시 환율적용 방법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가. 수입재료비에 대한 회화결제환율 적용방법
나. '을', '병'간 계약에 있어서 환차 보상 여부
다. 구입완성품에 대한 이윤계상 방법

회 신 : 국방부 예회 41341-326('99.5.24)

- 거래규모에 따른 우대환율의 파악이 가능하고 또한 업체에서 결제한 실결제환율에 대한 부적정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시행세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시에는 실제 결제된 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을', '병'간 계약은 '을'이 계약수행을 위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체결한 계약으로서 동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갑'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함으로, '을', '병'간 체결한 확정계약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차

손이라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6조' 및 '국방부 예회 41341-72('98.2.10)'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이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영업이익률 산출시 제조원가가 아닌 일반관리비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때 이는 이윤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이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라는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3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영업이익률이라면 이윤율 적용대상 금액이 아닌 재료비는 이윤율 산정시 제외시키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임. 또한 결산서상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산서상 영업이익으로 이윤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윤율 산정방법이 아닐 것이므로 업체의 특성에 맞는 다른 방법으로 이윤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방산업체간 합병 및 인수에 따른 제비율 적용 및 산정방법

질 의 : 조원 33451-168('99.5.27)

- '99적용 제비율은 '97년도의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투하자본이윤율(이하 "사업장별 제비율")은 사업장별로 산정하고 일반관리비율은 업체별로 산정하였는바, 각각의 사업장이 합병이전대로 유지되며 단지 법인만 합병된 경우, 사업장별 제비율은 제비율을 적용할 제품이 생산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존의 사업장별 제비율을 적용하고, 일반관리비율은 새로운 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회 신 : 국제회 41341-518('99.8.26)

- 제비율을 산정하고 적용하는 절차의 기본적인 논리는 과거의 원가구조로부터 장래의 원가구조를 유추하는 것임. 따라서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각각의 공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법인만 합병된 경우, 공장별 제비율(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투하자본 이윤율)은 원가구조의 변동이 없으므로 그대로 적용 가능하나, 업체별로 단일율을 산정하는 일반관리비

율은 법인의 통합으로 인하여 원가구조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동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반영 후 일반관리비율을 재산정,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질 의2 :

- 위 질의1과 관련하여 '99년도에는 어떤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 합병이후 존속법인의 일반관리비율을 적용

- 제비율 산정의 방법론상 현상이 비율에 반영되는 데에는 2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고 합병 후의 법인은 존속법인의 일반관리조직의 관리를 받음.

을설 : '99년도에 적용하려는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합병 전에 속해 있던 법인의 일반관리비율을 적용

- 제비율 산정의 방법론상 현상이 비율에 반영되는 데에는 2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99년 현재, 비록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된 법인이 있을지라도 제비율 적용상으로 법인이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

병설 : 합병대상 법인의 일반관리비율 중 가장 낮은 율을 존속법인의 일반관리비율로 적용

- 제비율 산정의 방법론상 현상이 비율에 반영되는 데에는 2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고 합병후의 법인은 존속법인의 일반관리조직의 관리를 받음.

정설 : 새로운 일반관리비율을 산정하여 적용

- 갑 내지 병설의 경우에는 제비율 방법론의 기본가정(원가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음)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함.

회 신2 :

- 회신 1의 내용과 동일함.

질 의3 :

- 위 질의 2에서 정설이 옳은 경우에,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새로운 일반관리비율을 계산하려면 존속법인의 원가 실적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추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합병대상 법인들의 '97년도 총원가와 일반관리비 금액을 합하여 새로운 일반관리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회 신3 :

- 일반관리비율에 대한 원가구조의 변동을 추정하고 동 추정치를 일반관리비율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병이전 각각의 법인의 원가를 합산하여 일반관리비율을 산정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질 의4 :

- 사업장별 통합도 수반되는 합병의 경우에 위 질의2와 3을 고려하여, 통합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제비율을 새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사업장들의 원가요소를 합산하여 사업장별 제비율을 새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회 신4 :

-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공장별 통합까지 이루어진 경우, 생산설비의 이전·증설·감축·보수 등과 조직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동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비율의 산정 및 적용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임.

질 의5 :

- 위 질의1 내지 4와 같은 상황에서 합병법인의 2000년도 적용 제비율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신5 :

- 위 질의 1부터 4까지의 회신내용을 토대로, 인수·합병 업체의 조직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비율을 산정·적용하여야 할 것임.

용역원가계산기준 적용가능 여부

질 의 : 국과연 원가 410-103('99.5.28)

- 수행하는 용역의 내용이 엔지니어링 활동이라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비영리 연구기관과의 계약 체결시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국제회 41341-358('99.6.3)

- 계약당사자가 비록 비영리기관이라도, 수행하는 용역의 내용이 엔지니어링 활동이라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과기부의 유권해석을 고려할 때, 수행용역의 실질이 엔지니어링 활동 정의에 부합된다면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3조 제2항 및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28조 제1항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적용이 가능

질 의2 :

질의 1에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중 기술료 산정시 적용되는 기술료율에는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바, 비영리 연구기관과의 계약시에도 이윤이 포함된 기술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2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기준이며, 이윤을 영업이익으로 규정하고 학술용역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적용을 배제하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술료율은 이윤보상이 최소화 되도록 결정되어야 함.

환율변화에 따른 가격산정 방법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709('99.9.13)

- 국방부조달본부와 계약체결한 ○○○사업은 계약금액을 상한가로 한 개 산계약형태이지만, 해외지급분에 대한 환율은 상한가로 제한받지 않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되어 있음.

답설 : 계약특수조건 제39조의 2항의 문구해석상 환율만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므로 환율차이에 따른 순수물자대만 계산의 대상이 되어야 함.

을설 :

- 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국방부령 제474호) 제14호(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에서는 수입품의 수입가격에는 물자대, 수입제세, 기타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18조(일반관리비) 및 제19조(이윤)에서는 기업의 유지와 투자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및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액으로서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인정하고 있음.
- 나. 환율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자대, 수입제세, 기타 수입부대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변화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환율의 변화를 순수물자대의 변화로만 국한시킬 수만은 없음.
- 다. 환율의 변화에 따라 순수물자대의 변화만 인정하고 나머지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는 것은, 환율변동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감되

는 국세인 관세 등도 부과하지 않아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

- 라. 현행 국방부 조달본부는 국산화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산출시 해당 품목의 계약금액 산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직구매가격의 일정액을 기준으로 1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기하여 이를 실제 적용하고 있는데, 이 직구매가격 산정시 수입품의 물자대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입부대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약금액 산출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아래 관련근거 참조)

<관련근거 : 법무 33450-271('98. 5)>

“국산화 미 이행시 위약금산정의 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이와 같이 위약금을 추정할 때는 문구를 확대 해석하고, 비용을 인정할 때는 축소 해석하는 것은 명백하게 모순적이며 위법적인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법규 또는 규정 해석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 마. 이런 면에서 볼 때 환율의 변화에 따른 가격산정을 할 경우에는 순수물자대 뿐만 아니라 수입제세, 수입부대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연히 계산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41-743('99.11.16)

- 질의내용이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계약특수조건 내용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관련규정 해석의 논란 등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계약특수조건 설정취지에 맞도록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이윤 및 잉여자재 정산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709('99.9.13)

- '93년 개산계약 체결한 ○○사업의 이윤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계약특수조건은 모든 규칙(규정)에 우선하므로 방산물자원가계산에관한규칙(이하 "원가계산규칙"이라 한다.)의 개정 또는 제정과는 무관하게 관련근거 1의 "가" "나" "다"에 따라 이윤을 계상하여 정산한다는 의견

을설 : 계약 당시 동 사업의 계약특수조건 제7조 제3항의 근거 규정인 원가계산규칙 제25조 제2항이 현행 방산물자 원가계산규칙(국방부령 제474호('97.1.30) 제26호 제1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근거 2의 "가" "나" "다"에 따라 이윤을 계상하되, 그 금액은 수정계약시 상호 합의한 총원가의 0%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병설 : 동 사업의 계약특수조건 제7조 제3항의 근거 규정인 계약당시의 원가계산규칙 제25조 제2항이 사문화된 관계로, 관련근거 2의 "가" "나" "다"에 따라 방산업체의 최소 이윤보상율인 총원가의 9%로 이윤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면 현행 원가계산규칙 제26조(이윤의 계산), 부칙②(경과조치), 이윤산정기준및제비율적용지침 제3조(이윤의 산정 방법)와 동 사업의 계약특수조건 제7조(정산) 제3항에 명기된 계약 당시의 방산물자원가계산규칙 제25조(이윤의 계산) 제2항과의 상호법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동사업의 해외재료비를 정산함에 있어 계약특수조건 제5조의 단서조항, 원하도급계약서 2.1에 명기된 ○○계약가를 ○○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사는 본 함 건조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과의 정산은 당사가 ○○사에 지불한 대금지급건별 B/L 결재환율로 하고 있으나, ○○사가 당사에 공급한 자재 중 잉여재 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 계약은 개산계약이나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원가도급계약서 2.1에 의거 당사의 ○○사 간의 계약금액은 확정되어 있으므로 원하도급계약서에 명기된 해외재료비에 한해

서는 확정계약임. 따라서 확정계약서에서 잉여재가 발생된다고 하여 그 잉여재를 외자재료비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

을설 : 당사와 ○○사 간의 계약은 확정계약이나, 정부와의 본 계약은 개산계약인 관계로 계약특수조건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원하도 급계약서 보다 본 계약서가 우선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동조건 제7조에는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외자재료비는 원가계산규칙 제 11조 및 동 세칙 제7조에 따라 본 함에 투입되는 재료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그 잉여재는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외자재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41-743('99.11.16)

- 과거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89.12.30)의 제25조제2항은 이윤의 산정 방법이 아닌 이윤의 상·하한에 대한 규정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현행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97.1.30) 및 이윤산정기준및체비율적용지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행규정의 부칙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임.
- 사업종료 후 발생한 잉여자재는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15조제 2항 및 동 시행세칙 제13조제1항에서의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재료나,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발생된 원가로 볼 수 없어, 이를 직접재료비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 와 ○○사와의 원하도급계약이 정부의 승인 하에 체결되었으며, 자재가 확정된 금액으로 일괄구매되고, 그 대금이 이미 지급된 점을 감안하여, 잉여자재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총원가외에 따로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을 것임.

파견인력의 산업공수 인정기준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772('99.10.5)

- 함상 전투체계 SYSTEM 체계 결합시 파견 인력에 대한 산업공수 계산기준은?
- 교범, 교보재 작성 및 교육훈련시 발생된 계산기준은?

답설 : 계약품목으로 구분 계약되어 납품되고 있으므로 계약 이행을 위한 제반 공정상의 공수는 용역원가계산에 의거 직접노무비로 계상하되 간접노무비와 상호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함.

간접비(간접노무비, 간접경비)는 산출된 직접노무비에 제비율자료의 용역부문에 반영된 율을 적용하여 계산

을설 : 계약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발생 업무가 간접부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제비율에 직접으로 분류된 인원이라도 조직상 간접부서에 소속되어 있다면 직접노무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간접부서에서 발생된 직접노무비는 부인), 해당 작업이 직접 부서에서 발생되더라도 직접노무비만 계산하고 간접비(간접노무비, 간접경비)는 배제

회 신 : 국방부 계획 45113-747('99.11.19)

-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 상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효력은 방산물자원가계산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 계약목적물인 전투체계시스템 결합을 위해 현장에 파견된 인력의 산업공수가 방산물자원가계산에 관한규칙의시행세칙 제21조에 정한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정상적으로 소요된 작업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된 노무량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용역수행을 제조직접부서에서 한 경우에는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 관한규

칙 제29조에 따라 직접노무비만 계산하고 간접비(간접노무비, 간접경비)는 비용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계산하여야 하고, 제조간접부서에서 수행한 경우에도 제조원가의 간접노무비로 처리하지 않고 용역원가로 별도 구분 반영하였다면, 용역원가 직접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투하자본금액 인정여부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898('99.11.20)

- 투하자본이윤율 계산에 있어서 방산투하자본금액 산정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한 신설법인의 감정평가된 토지분에 대한 인정범위

답설 : 포괄적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폐업되고, 보유했던 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되어 납입자본금(상법 295조 제1항 주식인도)으로 전액 자본전입된 것이며,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재산가액을 기준 할 수밖에 없으므로(명료성의 원칙) 그대로 인정해야 함.

을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라 하더라도 재평가법에 의한 토지분의 평가차액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불인정해야 함.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41-790('99.12.31)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목적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목적이 상이하며, 현행 법률상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폐업 후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며, 소득세법·지방세법 등에서는 현물출자를 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의 투하자본금액 불인정시 기존의 토지외의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현물출자가액을 감가상각비 및 투하자본금액으로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시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은 자산의 재평가액이 아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신규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방산투하자본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

예산부족에 따른 개산계약 금액의 확정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65('00.1.17)

- 본조/국채로 개산계약 체결('98)되어 최종납품 완료 후 정산원가로 계약금액을 확정할 경우, '98본조 분에서는 계약금액을 초과하고 '98국채 분에서는 계약금액에 미달할 때 '98국채분의 잔액으로 '98본조 분으로 전용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98국채분의 경우 물량조절에 따른 수정계약 체결시 예산증액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부족액 만큼 개산계약 금액을 감액하였으나 최종 정산원가 확정금액이 예산에 미달하였을 경우, 수정 계약시 감액한 금액을 최종 정산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41-2106('00.3.14)

- 계약 이행기간이 2회계연도에 걸치는 장기계약이면서 일반개산계약으로 체결된 본건 질의의 경우 본조예산으로 지급한 금액은 개산계약의 정산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착·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정산시에는 기지급 금액에 대한 과부족분을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물량조정에 따른 수정계약 체결시 예산부족으로 개산계약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도 최종 정산시에는 전체 실발생원가를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계약체결당시가격, 제조공정표 적용)

질 의 : 조원 33451-14('00.2.8)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제조원가계산) 결정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품목조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국제법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의 “계약체결당시가격”을 해석함에 있어서

갑설 : 계약체결당시 가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작성한 원가계산 가격으로 해석

[이유]

-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원가계산, 예정가격 결정, 입찰(계약가격 확정), 적격심사, 계약서류 구비 등 요인에 의하여 행정일수가 필요하므로 원가계산 일자와 계약일자는 반드시 시차 발생
- 계약가격에는 계약일자의 환율 등 제 변동 요소 미 고려
- 원가계산 일자와 계약일자 간 시차가 발생하여 계약가격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원가 재산정 곤란
 - 가. 원가 재산정의 경우 예정가격의 변경으로 새로운 계약절차에 의하여 업무 수행
 - 나. 현행과 같은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매일 원가 재산정 결과 초래다. 재산정 원가인력이 현행보다 2배 소요
 - 라. 계약가격을 계약일자 기준 원가 재산정시 계약가격의 증감이 있더라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제로 증감될지 여부는 예측이 곤란하므로 계약일자 기준 원가를 재산정하는 것은 불합리
 - 마. 계약이행 기간 중 물가변동을 감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 시행
- 계약가격에 반영되지도 않은 계약체결일로 재작성한 원가계산 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모순 사례 발생
 - 환율이 상승하였는데 감액조정은 모순

(원가계산환율 < 물가변동일 < 계약일 환율)

- 환율이 하락하였는데 증액지급은 모순

(계약일환율 < 물가변동일환율 < 원가계산환율)

- 국제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등락폭에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가격 자체가 예정가격 기준으로 결정되었고, 예정가격은 원가계산 가격을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최초 원가계산 가격을 계약체결 당시 가격으로 처리함.

을설 : 계약체결당시 가격의 기간을 특정일(계약체결일)로 해석하여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재 작성한 원가계산가격으로 해석

[이유]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시점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행정 소요기간동안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가격변동이 발생하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재 작성한 원가계산가격을 “계약체결당시 가격”으로 해석함이 타당

회 신 : 국제회 41301-2074('00.3.2)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 제조 구매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품목조정을 방식에 의하는 경우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해당 비목의 계약체결당시가격과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바, 이 경우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당해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등을 말함.

질 의2 :

- 국제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의거 국내 구입품은 제조공정예정표에 따라 품목조정으로 물가변동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물가변동 시점에서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제조공정 예정표 내에서 국내 구입재료비는 물가변동 시점에서

구입(입구)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노무비, 경비는 물가변동 시점에서 실제 투입 여부에 따라 완료되어야 할 부분 여부를 결정함.

[이유]

제조는 공사와 달리 제조공정 예정표상 전계약 물량에 대한 총 이행 일수만 표시되어 있으며, 원재료 구입, 노무비 투입, 경비발생은 매일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업체가 정부와 계약체결을 한 후 자체 생산계획에 따라 원자재(국내구입품, 국내원자재, 수입부품 등) 생산업체에 발주하게 되고, 원자재 생산업체는 발주처로부터 납품요청을 받은 후에 생산을 시작하여 발주처에 납품하게 되므로 이 원자재 생산납품기간을 고려한 원자재 입고시점을 물가변동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수입물품의 통관시점을 물가변동 시점으로 보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노무비, 경비는 제조공정예정표 내의 물가변동 시점에서 실제 투입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국내구입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제조공정표상의 총이행일수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당시(조정기준일)까지의 일수로 안분하여 완료되어야 할 부분 여부를 결정함.

[이유]

제조공정 예정표에서 완료되어야 할 부분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제조공정 예정표 기간 중에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기간 동안 안분하여 물가변동 시점에서 완료되어야 할 부분 여부 판단

회 신2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그 조정금액은 동법률 시행규칙 제 7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중 제조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제조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는바, 동 조종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제조공정예정표 및 이행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방산물자 감가상각비 계산기준

질 의1 : 원관 45113-34('00.3.21)

- 방산물자원가계산규칙의시행세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99.1.1이후 신규 취득자산과 '98.12.31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내용 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신고내용연수)만 신·구 법인세법 관련규정을 구분 적용하라는 의미인지 또는 내용연수 뿐만 아니라 모든 감가상각방법(취득가액, 잔존가액, 잔존내용연수 등)을 신·구 법인세법 관련규정을 구분 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 가.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상각 완료 후 잔존가액은 종전 법인세법 기간 중 3년 이상을 선택하여 상각하는지 아니면 개정법인세법령(대통령령 제15970호, '98.12.31)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지
 - 나.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시 종전 법인세법령에 따라 잔존가액을 고려하는지, 아니면 고려하지 않는지
즉 (취득가액-잔존가액)×상각율 인지, 취득가액×상각율 인지
 - 다. 1998.12.31 이전 취득자산을 1999.1.1 이후에 자산재평가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령에 따라 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인세법령에 따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기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등

회 신1 : 국제회 41341-2172('00.4.10)

- 질의 1에 대하여
 - 가. 내용연수 개정 취지 및 '94.12.31 이전 취득자산의 내용연수 구분 적

용을 고려하여 '9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잔존가액은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하여 5년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선택하여 상각하여야 하며,

나. '94.12.31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시에는 잔존가액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 '98.12.31 이전 취득자산의 '99.1.1 이후 자산재평가시에는 취득당시의 법인세법령에 따라 내용연수를 수정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질 의2 :

- 방산물자원가계산규칙의시행세칙 제22조 제3항에서 '99.1.1 이후 신규취득자산과 '98.12.31 이전 취득자산을 구분 적용함에 있어서
가. '99.1.1 이후 신규취득자산/ '98.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 구분(2원화) 적용하라는 의미인지
나. '99.1.1 이후 신규취득자산/ '95.1.1 ~ '98.12.31 취득자산/ '9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 구분(3원화) 적용하라는 의미인지

회 신2 :

- 질의 2에 대하여 국방부계획 45113-2115('00.3.17)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시행세칙 중 수정통보에 따라 '99.1.1 이후 신규취득자산, '95.1.1 ~ '98.12.31 취득자산, '9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 구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생산공정 일부에 대한 외주처리 비용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351('00.5.9)

- 직접노무비에 대한 생산공정 일부를 외주가공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노무비의 연결비용으로 인식, 불확정비목의 원가산정시 인정하여야 함.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41-2307('00.5.30)

- 회계적으로 계약목적물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주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및 감가상각비와 원가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설정한 불확정비목(외주가공비)에 대한 원가 인정 여부는 계약이행 내용의 실질을 고려하여 재무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개산계약정산시 상한가로 제한된 비용보상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512('00.7.20)

- ○○○ 기술직도입사업은 조달본부와 주 계약업체간의 물품공급계약을 근거로 하고, 그 부속계약으로 주 계약업체와 협력업체간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바, 동일사업에서 주계약과 부속계약에 동일한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해외 수입재료비 인상율을 일괄적용하며 기타 비용은 조달본부가 인정한 비용을 포함 이를 상한가로 정산함에 대한 타당성 여부
- 상한가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조달본부와 ○○항공간에 '94 고정가 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부품 국산화업체의 부품별 상한가 산정기준도 상기 '94 고정가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바, 국산화 계약금액을 달러로 환산하여 주 계약업체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상한가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협력업체의 통제 불가능한 해외 자재비의 환차손 보상은 상한가 산정기준과 별개의 사안으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계약이후의 법령개정으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농특세, 관세 등)은 상한적용기준에서 제외하여 추가적으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른 전용장비의 미상각 잔액이 발생 조달본부 회계내규에 의거 보상케 되어있는바, 미상각잔액은

상한가 적용기준에서 제외하여 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계획 45113-2509('00.8.12)

- ○○항공(을)과 협력업체(병)간 사후정산 관련 계약조건 해석과 관련하여
가. ○○○사업을 위해 “갑”·“을”간 체결한 일괄계약에 따라 체결된
“을”·“병”간 계약은 “갑”의 통제 하에 있다 할 수 있으며,
나. 사업의 특성상 협력업체(병)도 주계약업체(을)와 마찬가지로 발생원가
의 대부분이 계약 체결시 달러로 해외에 지불하도록 확정된 금액이고,
다. “갑”·“을”간 사후정산 조건의 개산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정산조건
에 미달러기준(94고정가) 금액을 제시한 취지 및 국제법령상 계약상
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을
금지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을”·“병”간 계약은 “갑”·“을”간 계약과 연계된 계약으로 “병”이
납품하는 물품대금은 “을”·“병”간 체결한 일반개산계약의 취지에
따라 확정하고, 사후정산 관련 조건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병”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갑”·“을”간 정산조건과 연계하여 해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계약이후 법령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계약
의 경우도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는 국제법령의 취
지를 고려할 때 상한가 정산조건이 설정된 개산계약이더라도 계약상대자
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체결이후 법령개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상한가와는 별도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완성품 이윤정산 및 조세공과금에 대한 질의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624('00.9.5)

- 완성품 이윤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특수조건과 방산물자의 관계법규와 상호 법적 지위에 관한 질의
나. 총원가의 정의 등에 관한 질의

○ 조세공과금에 관한 사항

가. T/A 이용에 부과된 관세 및 농특세에 관한 질의

나. 설계도면, 기술도서, 해외교육훈련비 등 순수 재료비가 아닌 기타
비용에 부과된 관세 및 농특세에 관한 질의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14-2651(00.10.14)

- 총원가라 함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조원가라 함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함.

본건 질의의 경우 완성품성질의 품목이 계약서 중 일부인 산출내역서상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가관련규정에서 인정하는 재료비라
보기에는 곤란하며 계약당시 완성품성질의 품목에 대한 영문화된 특약
이 없는 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3차사업(7번함) 원가정산심사시 제시된 “MP(수입재료비)내의 실제적 성
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원가정산과 관련된 자명한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고는 볼 수 없음. 또한, 이를 계약수량·이행기간·예산 등 기타 제반
계약여건을 참작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 이행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불가하
다고 판단됨.

- 교육도면, 기술도서 등 순수재료비가 아닌 기타 비용에 대한 관세 및 농
특세 부과여부는 관세법 등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S/W 교체작업과 시험국산화에 투입된 작업자의 원가계산 방법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631('00.9.8)

- ○○사와 중도확정 계약을 체결하여 정산하면서 S/W 교체작업과 시험국산화에 투입된 제조직접작업자에 대해 방산물자원가계산에 관한규칙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검사작업으로 인식하여 수입완성품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54-2706('00.11.3)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 관한규칙의시행세칙 제4조(원가계산기준의 구분적용)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생산(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활동과 용역활동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에 대하여는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을, 용역활동에 대해서는 용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본 건 질의의 경우가 생산활동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유형고정자산 및 연구개발비의 투하자본 인정여부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712('00.10.6)

- 유형고정자산 중 '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으로서 '99사업년도부터 매년 내용연수가 완료된 자산이 발생할 경우, 10% 잔존가액을 당해 연도의 투하자본으로 계산 여부
- '99. 1. 1 이후 연구개발비는 제품판매년도부터 5년간 균등상각하고 상각이전에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는 투하자본으로 계산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41-2764('00.11.23)

- 내용년수가 완료되는 사업년도의 잔존가액에 대하여 이를 매각에 의한 회수가능비용으로 보아 투하자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잔존가액 상각년도부터 투하자본으로 인정함은 잔존가액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나 업계실상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 전제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내용년수 완료년도에도 잔존가액을 투하자본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각을 전제로 한 투하자본에서의 배제는 실제 매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방산관련 회계제도에서 규정하는 투하자본 이윤보상제도는 방산업체가 방산에 투입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임. 한편, 상각시점의 이연의 의미는 원가배분 시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투하자본에 대한 이윤보상제도와는 별개의 문제임. 따라서, 방산업체가 방산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에 자본을 투입하였다면 상각시점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경우처럼 투하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은 보상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품국산화 개발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827('00.10.26)

- 확정계약 체결 후 부품국산화로 인한 원가변동사항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의 물가변동, 설계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01-2699('00.10.31)

- 업체의 부품 국산화 개발은 국제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제7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절감, 계약이행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설계변경을 한 때에 해당되는바, 이때에는 계약금액 조정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임.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대한 경비 인정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916('00.12.5)

- 회계 및 구매관리 등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회계처리를 '99년 이전에는 기타의 유형자산(공구기구와 비품) 계정으로 처리한 후 내용년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일반관리비로 산입하였고, '99년 이후는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무형자산(소프트웨어 개발비)으로 정액법 상각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현행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및 시행세칙은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한 원가 인정항목이 없음.
- 제비율(일반관리비) 산정 시 경비로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41-2016('01.1.4)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에 의한 제조원가계산시의 “일반관리비”라 함은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동규칙 제3조의 비원가항목을 제외한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의 감가상각비에는 “무형자산 상각비”도 포함된다 하겠음.

농특세 비과세 관련 계약금액 조정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101('01.2.14)

-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의 관세 감면액에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01.1.1부터 비과세됨에 따라 '01.1.1 이후 생산하는 납품물량에 사용될 경우 농특세의 원가 인정 여부
 - 가. '01.1.1 이후 농특세가 비과세됨에 따라 '00.12.31 이전 확정계약건의 경우 농특세 감면 수정계약 대상 여부
 - 나. 수정계약의 경우 당초 원가와 계약가 차이에 해당하는 낙찰(계약)을 반영 여부
 - 다. '01.1.1 이후 원가계산시 재고품 사용 경우 농특세 인정 여부
 - 1) '00.12.31 이전에 확정계약 후 '01.1.1 이후 납기물량 중 '00.12.31 이전 수입품을 사용하여 납품된 경우 농특세에 대한 원가 인정 여부
 - 2) '00.12.31 이전에 확정계약 후 '01.1.1 이후 납기물량 중 '00.12.31 이전 수입품을 사용하여 납품할 경우 농특세에 대한 원가 인정 여부
 - 3) '01.1.1 이후 계약 후 납품하는 물량에 대하여 '00.12.31 이전 수입품을 사용하여 납품할 경우 농특세에 대한 원가 인정 여부

회 신 : 국방부 계획 45113-2197('01.3.13)

- 관련근거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 나.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0조, 동시행세칙 제10조 및 제20조
 - 다.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회계질의 회신(국방부 이재22100-96, '91.3.5)
- 확정계약의 경우, 계약의 이행기간 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변경이 있다면, 관련근거 '가'호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의 이의없이 인수처리된 기성·기납부분과 정상적인 생산일정 및 수입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 이전에 이미 도입된 수입자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계약체결 전에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고 미리 수입한 자재에 대해서는, 관련근거 '다'호로 기 회신한 내용과 같이, 그 자재가 관련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개정 이후 계약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할 수 없을 것임. 다만, 관련근거 '나'호 제10조제1항에 의거 방산특조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사전품질보증활동 지시에 따른 계약 전 생산활동을 위하여 수입된 자재로서 원가계산시점 이전에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와 달리할 수 있을 것임.

폐기물 회수 · 처리비용의 예치금 원가인정 여부

질 의 : 원관 33451-24('01.3.10)

- 방산물자 리튬전지 폐기물 회수 · 처리비용의 예치금 원가인정 여부

답설 : 예치금 본래의 정의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비용이 아니며, 예치금이 부담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환경정책 목적에 반하여 자체 또는 위탁처리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과하는 비용이므로 벌금, 과태료의 성격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법 21조의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또한, 환경유해물질 생산에 따른 업체의 사회적 의무비용으로 보아 원가를 부인하여야 함.

을설 : 리튬전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을 자체 또는 위탁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성이 있음. 리튬전기 제조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반환받지 못하므로 예치금은 부담금(세금과공과)적 성격을 갖게 됨.

또한, 리튬전기 제조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으므로 예치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벌금, 과태료의 성격으로 보기는 무리임.

- 원가성이 인정된다면 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중 어느 비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41-2007('01.7.25)

○ 관련근거

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정의) 제2호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

- 위 관련근거 “나”호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 회수·처리 예치금은 제조업체가 폐기물 회수·처리 의무를 이행할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금 성격의 항목으로서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로 볼 수 없음. 한편, 향후 폐기물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실발생비용은 계약물량과 관련하여 업체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예치금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업체의 폐기물 회수·처리의무이행 회피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임.

합 건조 전용시설의 미감가상각액 계상 범위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269('01.4.9)

- ○○합 건조사업 관련 전용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기준한 정액법에 의하여 산출된 감가상각비를 해당년도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생산이 진행된 ○○합별 생산량 비율로 원가를 정산하여 왔으나,
- 2001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02년도 이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최종 계약분의 정산원가에 일괄 계상하고자 하며, 이때 일괄 계상할 미감가상각액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답설 : ○○합 건조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될 미감가상각액을 2001년도에 종료되는 최종 계약분의 정산원가로 일괄 계상하고자할 때 그 대상은 ○○합 건조에 전용으로 사용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치공구, 선박 등 모든 자산의 미감가상각액을 모두 포함하여

일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을설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2조 별표1'의 직접경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금형 및 전용 구축물에 대한 미감가상각액만을 일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41-2391('01.5.17)

○ 관련근거

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17조(경비), 제22조(직접경비)

나.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시행세칙 제22조(감가상각비) 제1항

- 관련근거 '나'호에서 정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용도로의 대체 사용이 불가하거나 사용가능하더라도 대체비용의 과다로 경제성이 없는 당해 계약목적물만의 생산을 위한 전용고정자산인 경우로서, 잔존내용년수 동안 생산물량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범위는 미상각잔액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과잉투자부분 및 당해 자산의 처분 등에 의한 순실현재가치가 배제된 금액에 한함.
- 간접경비로 처리해 온 건물 등의 미상각잔액에 대한 일시상각은 간접경비의 본질상 계약목적물과 직접적 인과성이 부여될 수 없으므로 일시상각은 불가함.

계약보증금 면제 범위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488('01.6.15)

- 수의계약에 의한 방산장비의 부분품을 납품하기 위한 계약 시 계약보증금 면제 범위 여부

답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6항 다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한 방산장비의 부분품을 납품하기 위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5호'에 의거 계약보증금 면제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설 : 이미 도입된 외자 장비의 부분품에 대해서만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사유가 된다는 견해(이는 국산품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01-2548('01.7.09)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나, 국내 생산시설 등은 동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및 임시 상근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원가인정 여부

질 의 : 국방부 감삼 16130-77('01.11.30)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임시상근자 포함) 업무만 수행한 경우 이들 노조전임자(임시상근자 포함)에게 지급된 급여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방산물자 생산/조달에 관련되는 비용 여부
다. 방산물자 생산/조달 관련 원가성 여부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41-2101('02.1.25)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2호의 '지정기부금'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재정자립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본건 질의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지원한 급여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그 조직 및 활동이 보호되고 있는 단체로서, 노조전임자(임시상근자 포함)에 대한 급여지원은 동법 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는 한 노사간의 극단적 갈등 없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해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당해 비용발생이 산업전체와 비교하여 노동조합원당 전임자의 수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상상태의 비용이라고도 할 수 없음.

한편, 방산업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등의 규정상 노동조합과의 유효한 단체협약 내용에 기속되므로 노조전임자(임시상근자 포함)에 대한 급여지원이 회피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주기관에는 미치는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방산원가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실발생비용보상의 취지상 이 사실만으로 원가를 부인할 충분조건이 된다 할 수 없음.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적 검토해 볼 때,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임시상근자 포함)에 대한 급여지원은 그 원가성이 인정되므로,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조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산재환자 및 불법파업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원가성 여부

질 의 : 국방부 감삼 16130-88('01.12.19)

- 사용자가 산재환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원가성 여부와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상에 위법되는 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원가계산시 개근으로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비용의 원가성 여부
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산재환자에게 사용자

가 지급한 생계보조금(통상임금 40%) 및 상여금과 재해발생 사실 미신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산재환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한 생계보조금(통상임금 110%) 및 상여금을 직접노무비로 반영하여 제조원가로 반영한 비용의 원가성 여부

나.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위법되는 방산업체의 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지급한 임금과, 연·월차 휴가일수 계산시도 개근으로 판단하여 원가계산에 반영한 비용의 원가성 여부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41-2201('02.2.25)

- 산업재해는 생산을 위한 근로행위 제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가능하며,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의 휴업기간에 사용자가 지급한 생계보조금 및 상여금은 종업원의 복리후생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에 관해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에서 퇴직급여, 초과근무수당 등과는 달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방산물자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 원가산정의 기초자료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서 합의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금액이 아닌한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정한 최저 휴업보상급여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해서 원가성을 부인할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해발생 사실을 신고한 후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생계보조금 및 상여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 처리하였을 경우보다 전체적인 국방예산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로 인해 초과계상되는 부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가성이 부인되어야 할 것임.

- 방산업체의 파업기간을 연·월차 휴가일수 계산시 개근으로 간주하여 원가계산에 반영한 부분은 비록 연·월차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소정의 근로일수가 소정근로시간에관한지침(근기 68207-862, '94.5.27)에 의거 소

정근로시간을 노사가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했을지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에 의해 쟁위행위가 금지된 방산업체의 경우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불법성이 있는 부분을 방산원가로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또한 그 파업기간에 정상 지급한 임금도 방산원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착·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 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 : 국방부 감삼 45113-2051('02.7.22)

- 방산 착·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의 내용 질의

회 신 : 국방부 계획 45113-2732('02.8.20)

- 방산 착·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 '다른 방산업체 등'의 관련범위에 일반업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계약상대자가 방산착·중도금지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착수금 청구시 일반업체분을 포함하여 청구하였다면 동 규칙 제9조의 '다른 방산업체 등'의 범위에 당해 일반업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일반개산계약 체결사업의 계약금액 정산

질 의 : 공군 중앙관리단 특계원 33520-44('02.8.16)

- 개산가격 결정을 위해 작성한 개산원가 계산기준 및 개산원가 계산서가 계약서의 일부인지의 여부
갑설 : 개산원가 계산기준 및 계산서는 개산가격 산출의 근거이므로 계약의 일부임.
을설 : 개산원가계산 기준 및 계산서는 개산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인

개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계약 시 계약서 부속서류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의 일부가 아님.

- 일반계산계약의 정산원가 산정 시 계약당시의 원가계산기준의 변경 가능 여부

갑설 : 개산원가계산 기준은 상호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의 변경이 없는 한 정산원가계산 시에도 개산원가 계산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을설 : 개산원가 계산기준이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등 원가계산 관련 법규의 원가규정과 상이하여 실발생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산원가계산 기준은 변경되어야 함.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01-2940('02.11.1)

- 국제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항 및 방산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에 의거 체결하는 개산계약의 경우 계약가격산정을 위해 작성한 개산원가계산기준, 개산원가계산서 등은 계약의 성격상 계약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계약문서의 일부라고 할 수 없으며
- 개산계약 이행후 계약금액의 정산은 국제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는 국제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인 국방부장관이 정한 “방산계약사무처리규칙 제32조에 따라 방산물자 원가계산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실발생원가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및 관련 법규 해석 질의

질 의 : 해군 기편41341-149('02.9.11)

- 복수지정업체의 경우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방법

※ 관련근거 : 국원가 24533-132('86.10.14) 복수 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

기준 및 방산업체 지정이 변경된 경우 제비율 적용

가. 위 관련근거와 관련하여 “복수 지정업체 중 일부 업체가 생산여건 미비로 입찰참가 불가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방법”

나. 위 관련근거와 관련하여 “업체별 원가계산 시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방법”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등의 해석

가. 기초예비가격 산출에 대한 원가계산 시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1조 및 제2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무공수의 구분(직접노무/외주공수) 적용

나.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6조와 관련 경쟁/확정계약 시 계약조건에 원가자료 제출 의미의 범위

다. 방위산업의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제9조의 해석

위 규칙 제9조의 내용은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발췌 및 인용한 것으로, 동법률의 경우 그 적용범위를 하도급 거래로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 생산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위 규칙 제9조를 적용하여 착수금 지급비율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한, 위 규칙 제9조의 “다른 방산업체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방부 질의회신 “국방계획45113-2732(‘02.8.20)”은 일반업체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 규칙 개정 공청회(‘00.2.10)시 “방산업체”로 국한하여 설명하였다고 일부 업체에서는 주장하고 있어, 동 조항을 일반업체까지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01-2917(‘02.10.25)

○ “복수지정업체의 경우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방법”과 관련

가. 재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후 회신 예정

나. 1개의 방산물자에 대해 2이상의 복수업체가 지정된 경우, 각 업체별 원가계산에 의거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함.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등의 해석”과 관련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기초

예비가격 산정시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원가계산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활용하여야 하며, 노무비 계산을 위한 노무공수 산출에 있어서 자작공수와 외주공수를 구분하여 적정원가가 산출되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

나.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방산원가규칙을 적용받는 계약상대방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

다. “국방부 계획45113-2732호(‘02.8.20) 착·중도금 지급규칙에 대한 질의 회신 및 지침”에 명시된 공문을 참조할 것.

시제생산계약의 원가정산 범위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990(‘02.12.24)

- 시제개발을 특정비목불확정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원가정산 대상기간
- 시제개발기간 중 “갑”측 사업부서의 추가 요구에 의해서 제작된 시제품 관련 원가의 정산 범위
- 사장품 납품 여부

회 신 : 국방부 계획 41301-2003(‘03.4.4)

-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24조에서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개산가격으로 정한 비목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한 시제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완료일’은 계약상 의무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날로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시제생산계약은 그 특성상 양산계약과는 달리 “갑”의 검수만으로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검수이후 각종 시험평가 및 보

완활동도 계약이행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갑”의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 설계가 변경된 점, 계약체결 시 원가계산이 곤란한 재료비를 개산금액으로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설계변경과 관련된 원가도 정산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 사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가. 국방부 회계 964.4-364('80.10.12)

나. 재경부 회계 41301-1498('97.6.9)

다. 재경부 회계 41301-227('03.2.27)

- 매각가치 등을 평가할 수 없는 사장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 동시행세칙 9조에 따라 “갑”에게 납품되어야 하며, 매각가치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장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13조 및 동시행세칙 9조에 따라 사장품가격을 계산하여 보상한 후 납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사장품의 납품여부는 매각가치 등의 존재여부, 계약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중고 관급재료 평가액의 산정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257('03.4.3)

- 해군과 체결한 ○○○함기관체계훈련장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중고 축전지를 관급재료로 지급받아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으나 방산물자의 이윤산정및제비율적용지침 제3조 제3항에 의거 관급재료비 이윤을 계산하기 위한 관급재료 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신품가격 또는 실구매가격을 평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 중고품이므로 그 잔존가치를 평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 신 : 국방부 계획 45113-2004('03.4.29)

- 관급재료의 계약수행노력보상액은 이윤산정기준및제비율적용지침 제3조 및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관급재료액을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관급재료가 중고품일 경우에는 시중거래가격, 잔존가액, 사용가치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평가함으로써 관급재료의 계약수행노력보상액이 과다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조립·시험비용의 원가계산기준 질의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857('03.11.10)

- ○○○사업의 협력업체("병") 생산품목은 자체생산시설에서 생산 후 "을"의 공장에서 조립/시험할 경우 조립/시험비용 원가계산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협력업체("병")에서 생산한 품목의 체계완성을 위하여 "을"의 공장 이전 후 조립/시험을 하더라도 협력업체("병")의 이행활동은 체계완성을 위한 제조의 일련과정이므로 제조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 "을"의 공장에서 조립/시험을 하더라도 협력업체("병")의 제조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용역활동으로 간주하여 용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회 신 : 국방부 계획 45113-2773('03.11.15)

- 관련근거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

나. 국방부령 제552호(‘03.7.1)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정의), 제22조(직접경비) [별표] 11.설치시운전비

다. 국방부 예회41341-842(‘98.12.30) 설치시운전비 및 시스템체계장비의 소프트웨어개발비 원가적용기준 질의

- 조립·설치 및 시험평가는 제조공정의 일부이므로 위 관련근거 “다”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제조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간의 계약은 위 근거 “가”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업체간 계약금액은 거래실례가격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나, 방산물자의 경우 거래실례가격이 없으므로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원가계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된 성과급 등의 원가계산 적용기준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55(‘04.1.29)

- 노사합의에 의해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 시 지급한 노사화합장려금, 생산격려금, 특별상여금, 성과급에 대한 방산물자 원가계산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임.

답설 : 노사합의 해당년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생산격려금 및 성과급 등은 방산제비율 산정 시 간접경비(복리후생비)로 산정이 불가하며, 방산원가 규정에서 인정 되더라도 노무비(상여금)로 계상되어야 함.

을설 : 성과급 등의 평균임금 산입여부가 노사간 별도 합의사항으로 매년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일관성 있게 간접경비(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였다면, ‘93.8.3일자 재무부 회계 45101-808의 회신 “가”, “라”항에 의거 회계처리기준의 계속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간접경비로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

회 신 : 국방부 계획 45113-2001(‘04.2.17)

○ 관련근거

가. 국방부령 제552호(‘03.7.1)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16조(노무비), 제17조(경비), 제37조(공시보고)

나. 원가 45113-122(‘93.8.23) 하계휴가비등 적용기준 질의 회신

○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에 의거하여 지급된 성과급 등은 위 근거 “가”와 “나”에 의하여 방산물자 원가계산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산정되어야 함.

○ 다만 당해 성과급 등을 결산서상 계속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고, 방산물자 원가계산시에도 공시보고서에 따라 현재 복리후생비(간접경비)로 원가보상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간접경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임(이 경우 직접비와 간접비가 이중 보상되지 않도록 함).

일반개산계약의 정산기준일 및 상여금의 원가인정 여부

질 의 : 특계계 33520-18(‘04.2.20)

○ 개별 납품별(항목별) 단위로 납품일이 각각 구분 명시되어 있는 일반개산계약의 경우, 신·구 방산원가규칙 제28조 제2항의 “당해 계약의 납품일 현재 시행되는 제기준”과 신 방산원가규칙 부칙 제2항의 “계약이행의 기간”, “이윤산정지침”의 부칙 제2항에 명기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이라는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답설 : 계약서상 개별 납품별(항목별) 단위로 납품일과 계약기간을 해석하여 신 방산원가규칙 시행일 이전(‘03.6.30)에 납품을 완료한 납품물에 대해서는 변경전 구 규정을 적용하고, 신 방산원가규칙 시행일 이후에 납품을 완료한 납품물에 대해서는 변경된 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계약서상 최종 납품일(납품일 중 최종일) '03.8.31일을 기준으로 납품일과 계약기간을 해석하여 신 방산원가규칙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주계약업체가 지급한 과거 미지급급여 명목의 비정기급여 소급 지급액이 노사합의서에 따라 지급되었다고는 하나, 방산원가법규(규칙 제21조 제2항 및 세칙 제21조 제5항) 규정 및 회계질의·회신 내용(국방부 계획 45113-220, '99.4.9)이 본 건의 노사합의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어 질의함.

갑설 : 주계약업체가 과거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비정기급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에는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액을 법인통합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동 비용은 방산원가규칙 제3조제7호에서 규정한 “기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정산원가 산정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주계약업체가 과거 미지급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비정기급여는 공적 효력이 있는 정성적인 노사합의서에 따른 것이고, 방산원가규칙 제21조제2항, 방산원가세칙 제21조제5항 및 회계질의·회신(국방부 계획45113-220, '99.4.9)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산원가법규의 실발생비용 보상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 체계개발사업의 정산원가 산정시 모두 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신 : 국방부 계획 45113-2148('04.3.9)

-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17824호('02.12.30)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나. 국방부령 제551호('03.7.1)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다. 국방부령 제552호('03.7.1)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라. 계획 41301-2467('03.7.1)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시행세칙

마. 계획 45113-220('99.4.9) 퇴직금 대상급여액 질의회신

바. 계획 45113-2001('04.2.17) 하기휴가비, 성과급 등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 일반개산계약의 정산기준일

위 근거 '가'의 제32조 제1항 9호 및 '나'의 제32조에 일반개산계약은 계약이행 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또한 계약의 품목별 납품일을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다'의 부칙 제2항과 상충되므로 동규칙 제28조 제2항의 "당해 계약의 납품일"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최종 납품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노사합의로 지급한 상여금의 원가 인정여부

위 근거 '라'의 제21조 제5항 및 유사 회계질의 회신사례(위 근거 '마', '바')에 노사합의서에 의한 임금을 원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노사합의로 지급한 당해 상여금은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계약체결전 교육경비의 원가인정 여부

질의 : 해군 예산편성과-54('04.5.11)

- ○○○사업 계약체결전 관련업체들의 전투체계 통합시험 국외교육 소요 경비를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 : 국방부 회계관리담당관실-285('04.5.24)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17조에 의거 직접경비는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설계비 등이 해당되며, 간접경비는 2종 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등이 해당하는 바, 함정건조 계약체결전 전투체계 장비들의 함정설계, 설치시험, 검사 등에 대한 미해군 교육과정에 방산지정업체 기술요원들의 교육참여시 소요경비(과정비 제외)에 대한 원가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것임.

민·방산공용 시설을 방산전용으로 사용시 감가상각비 계산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355('04.5.12)

- 민수·방산공용으로 사용하던 시설을 민수사업 중단으로 인해 방산물자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한 질의

답설 : 민·방산공용 사용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민수사업이 중단되었더라도 민수부문에 배부되던 감가상각비를 전액 방산부문에 배부 계상함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을설 : 방산전용공장 내에서 적정가동율 유지를 위하여 민수사업을 유치·생산하던 기간에는 민수제품에 감가상각비를 배부계상 되었으며, 민수사업의 중단 후 민수부문 사용시설을 방산시설로 개량하여 방산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조 1호 및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시행세칙 제2조 제2항에 근거하더라도 방산전용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음.

회 신 : 국방부 회계관리담당관실 - 287('04.5.24)

-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자산이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연구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당해 자산이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조 제1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가상각비 계산시 반영하기 바람.

협력업체 원가산정 관련 노무비단가 적용기준

질 의 : 육군 비용원가관리실-38('04.6.24)

- 협력업체에서 생산하는 구성품의 원가산정시 일반물자에 의한 원가산정 방식에 의거 제반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임률만은 실발생임률을 적용하였을 경우 타당한 임률 적용을 위한 원가계산기준 질의

회 신 : 국방부 회계관리담당관실 - 907('04.7.13)

- 국가의 계약상대방인 주계약업체와 그 협력업체의 계약관계는 국가계약법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님. 따라서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산정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협력업체의 임률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시중노임단가를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님.
- 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의 계약은 다른 사법적용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므로 민법, 상법 및 일반적인 상거래 질서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내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임. 이 경우 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의 계약시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원가계산기준에 의하도록 합의하고 임률에 대하여는 실발생임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실발생임률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급여산정체계 등 업체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임률 산정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연구개발비 이연상각 관련 질의

질 의 : 방산지원담당관-238('05.1.17)

- 연구개발계획 승인시 개발비용은 수출용에만 반영한다는 조건이었으나 수출 무산 이유로 군납물량에 이연상각한데 대한 방산원가규칙 위배여부 질의

회 신 : 국방부 회계관리담당관-369('05.1.29)

- 원가와 관련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은 당해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선행 조건이나 제약사항이 없는 경우 당해 물품제조를 위해 투입된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기준임.

- 따라서 본 건은 연구개발계획 승인시 개발비용을 수출용에 한정해서 반영한다는 조건을 계약내용에 반영했는지 여부의 문제로서 국가계약법령 및 원가규칙 적용 위배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됨.

학술연구 용역원가 기준 관련 질의

질 의 : 기술개발관리담당관-2144('05.6.30)

- ADD 특화연구센터 수행과제에 용역원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현행 국가계약법에 의한 보상기준이 계약상대방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상 애로가 있음.
- 연구개발관실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보상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용요건이 애매하여 자체판단이 곤란하여 질의함.

회 신 : 국방부 회계관리담당관-2700('05.7.28)

- 국가계약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함에 있어 학술용역에 관한 업무범위와 원가산정기준을 설정하였으므로 모든 국가계약은 원칙적으로 동기준을 적용해야 함.
- 다만 용역활동 등 다른 법령에서 정산 원가계산기준이 있는 경우도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하도록 하고 있음.
- 학술용역이라도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준칙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 특례를 설정하여 적용 가능함.
- 따라서, ADD 특화연구센터의 원가기준 개선을 위한 가능한 방안은 첫째, 국가계약법상 원가준칙을 적용함에는 인건비 적용특례를 설정하는 방안과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원가준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 방산원가규칙 설정취지상 상위법인 방산특조법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적용이 불가함.

업체투자금 환급방안 질의

질 의1 : 기획조정실-575('05.12.9)

- 계약쌍방이 합의에 의해 계약이행 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개발비)을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업체가 일정부분 부담하고 양산 시 이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체투자금 및 금융비용의 보상방법

회 신1 : 국방부 회계관리담당관-4877('05.12.28)

- 업체부담분에 대하여 정부부담분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기업회계기준서상 개발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이를 개발비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발생비용은 양산시 직접경비로서 보상받게 되고, 금융비용은 개발기간 중이라도 개발비가 투자자본에 해당되므로 이윤의 항목인 투자자본 보상율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보상받게 됨.
- 따라서 업체투자 원금과 금융비용 전체를 개발단계에서 업체의 개발비로 인식하였다가 양산 시 환급하는 방법은 현행 규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정책적인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질 의2 : 기획조정실-575('05.12.9)

- 금융비용 자본화 가능 시 자본화 기간 설정방법

회 신2 : 국방부 회계관리담당관-4877('05.12.28)

- 회신내용 1 참조

질 의3 : 기획조정실-575('05.12.9)

- 장기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용 일부를 업체에서 부담할 경우 업체투자금은 계약금액과 총부기금액 모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계약

금액에서는 제외하되 총부기금액에는 포함 가능한지 여부

회 신3 : 국방부 회계관리담당관-4877('05.12.28)

- 총부기금액의 범위에 업체부담금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특성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료비 직, 간접 구분 회계처리 질의

질 의 : 방위사업청 함정원가팀-635('06.4.5)

- ○○○ 사업 원가계산함에 있어 자재목록(BOM)상 재료비(페인트, 시너, 볼트/너트, 소켓, 각종 명판류, 플러그, GAS 등)의 회계처리 질의
갑설 : 함건조 특성상 방산물자의원가계산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제품의 생산에 직접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당해 제품에 직접부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하여 직접재료비로 처리
을설 : 일반적인 처리기준에 따라 방산물자의원가계산규칙 제15조 제3항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간접재료비로 처리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552('06.4.12)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15조(재료비) 및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세칙 제13조(재료비)에 따라 재료비의 직, 간접 구분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임.

직접경비 인정 여부 관련 질의

질 의 : 방위사업청 함정 원가팀-622('06.4.3)

- '톤수인증서 발급비' 직접경비 인정 여부
 - 함 함건조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과 관련 수요군에서 순항훈련 시 수에즈 운하 또는 파나마 운하 통과 시 해당국 요구사항인 '톤수인증서' 발급(발급기관 : 한국선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함건조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톤수인증서' 발급비용을 제조원가의 직접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관급장비조립보험료'의 직접경비 인정 여부
 - 함건조시 탑재되는 관급장비를 담보로 하는 '관급장비조립보험료'는 해당 관급장비에만 발생하는 원가로 추적이 가능하며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선업체에 대한 제비율(간접경비율) 산정시 관련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조선소 제공 각종 지원비용'의 직접경비 인정
 - 함 및 기타 함건조 계약특수조건에는 계약상대자("을")가 현장 원가요원, 현장관리요원, 인수단을 위한 사무실 및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함 원가산정과 관련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 업체 측에서 직접경비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비용들을 직접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해당업체 제비율(간접경비율)에 지원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558('06.4.12)

- 관련근거
 - 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정의)
 - 나.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6조(원가구성요소)
 - 다.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세칙 제5조(원가구성요소)

라.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2조(직접경비)

- 톤수인증서 발급비 직접경비 인정 여부 관련

제조원가라 함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완성된 계약목적물이 수요군에 인도된 후 발생비용은 제조원가로 볼 수 없음.(위 근거 '가', '나', '다', 참조)

- 관급장비조립보험료의 직접경비 인정 여부 관련

(주)○○와 '03년 계약된 ○○○함의 원가산정시 직접경비로 계상된 관급장비조립보험료는 '05결산년도에 발생되어 제비율은 '07적용분에 반영될 예정임.

- 조선소 제공 각종 지원비용의 직접경비 인정여부 관련

○○○함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비품류는 위 근거 “라”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비율 산정시에는 소모성일 경우 간접경비의 소모품비로 반영되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등재한 것에 대하여는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반영됨.

설물 폐기처리비용의 적용비목 질의

질 의 : ○○ 제06-135호('06.9.25)

- ○○○재료의 가공공정에서 발생된 설물 폐기처리비용의 적용비목 문의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1860('06.10.23)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2조 별표 9호(외주가공비)에서 외주가공비는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에 사용될 재료를 외부에 위탁가공시키는 경우 그 가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17조(경비)3항에서 2종이상의 제품 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폐기물처리비는 간접경비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폐기물처리비가 위 제품과 같이 특정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

고 특정제품에 직접부과가 가능한 경우에는 방산물자위원회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2조(직접경비)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접경비로 처리가 가능함.

연구개발비의 원가 인정 질의

질 의 : 육군본부 기술관리과-87('07.2.7)

- 체계개발 계획 재승인 연구개발비 산정에 관하여
 - 가. '00.0.0(재승인시점) 이전 발생한 연구개발 관련 비용(시제품제작비, 인건비, 기타용역비 등)에 대하여 업체에서 증빙자료(물품구매영수증, 용역계약서, 기타영수증 등)를 제출시 원가 산정시 연구개발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 나. 육군의 체계개발계획 승인서('05.9.7)상에 명시된 “시제품제작기간(업체자체 개발 승인서 교부일로부터 6개월)” 항목을 근거로 업체자체 개발승인서 교부일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으로 부인하는 것이 회계기준상 적합한 것인지
 - 다. 군수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납품을 위한 초도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적합성 시험 비용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가?
- 방산물자 수출품목 연구개발비 이연상각 적용 기준
 - 가. 방산물자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인 '05년 6월 국방부 획득개발심의회에서 승인한 조건에 근거하여 규칙 개정 이후 발생하는 수출물량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이연상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 나. 연구개발비 이연상각이 적법하다면 개정된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가 간접노무비율 및 일반관리비율에 합산되어 적용됨에 따른 중복계상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360(07.2.28)

- 체계개발계획 재승인시 연구개발비 산정에 관하여
당해 제품생산에 직접 투입되고, 그 지출 근거가 명확할 경우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라 할지라도 당해 시제품만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인정 원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방산물자 수출품목 연구개발비 이연상각 적용 기준에 관하여
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 적용대상은 방산전용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방산부문 간접노무비 전체, 방산부문 일반관리비 중 임직원급여, 상여금 및 퇴직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는 대상이 아님.

사업장간 자산이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대상금액 인정범위

절 의 : ○○ 중사관 2007-16호(07.5.3)

- 회사내 사업장간(민수공장 → 방산공장) 자산이관에 따른 설치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여 자산가액이 증가된 경우, 방산물자 적용 공통 원가 산정시 이관 설치비용의 원가성 인정 여부

갑설 : 민수공장에서 방산공장으로 자산을 이동하여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 오고 있으나, 장비의 취득가액에는 장비가격과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치 관련비용 중 미상각부분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조(비원가항목) 1호 및 7호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을설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시행세칙 제21조(감가상각비)에 의하면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격”이라 함은 ②항 1호 내지 2호에 의거 외부도입 및 자가제작시 자산의 설치완료까지 발생한 부대비용(설치비 등)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②항 4호에는 법인세법에 의거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가치의 증가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관자산에 대한 기존 장부가액은 인정하고 설치비용은 비원가로 간주하여 원가성을 부인 시, 방산원가규칙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이관으로 인해 신규자산 취득시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이루었고, 공장간 자산 재배치는 생산합리화를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원가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1088('07.6.8)

- 민수공장에서 방산공장으로 이전자산의 취득가액 원가인정범위
방산원가는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투하된 자산에 대하여 원가가 인정되므로 민수공장 취득시 자산화된 부대비용은 최초 의도한 민수부문의 목적을 다하였으므로 방산원가로 인정될 수 없고, 부대비용을 제외한 세트 장비의 순수 취득가액 중 방산부문으로 이관된 실 잔존가액 만이 방산원가로 인정(취득가액조정)되어야 할 것임.
- 민수공장에서 방산공장으로 이전간 발생비용(민수공장 설치자산 철거비용, 운반비용, 상하차비용, 방산공장 철거비용 등)의 원가인정여부
민수공장 철거비용은 민수부문 폐지로 인한 민수관련 비용이므로 비원가로 처리하고, 운반비, 상하차비용, 방산공장 철거비용은 방산부문원가로 인정은 되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도 아니고 자산 취득시 발생한 비용도 아니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에 의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방산공장 신규설치비용 원가인정여부
방산공장으로 이전된 자산자체로는 기본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LPG 방식에서 LNG방식변경에 따른 전체노즐 변경, 노후버너 신폼버너교체, TUBE 50%신폼교체, 소음저감용 판넬 추가 등의 신규설치비용을 통해 성능수준이 향상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산공장 신규설치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회사내 사업장간 자산이전관련(민수→방산) 설치비용의 원가성 인정여부는 실제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실발생 비용에 대한 방산관련성을 판단하여 방산원가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국외원자재(M/P) 관련비용 및 신규지정업체의 원가계산 기준

질 의 : 방위사업청 함정원가탐-2059('07.7.19)

- 국외원자재(M/P)를 관급계약체결 하면서 정부측의 사유로 국외원자재 관리업무(자재통관지원/도면공사/입고검사/자재분류/전산화 및 하자관련처리 등)을 국내업체에 위임하고자 할 경우, 원자재 관리관련 비용을 국내분 계약 시 원가(직접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방산물자 생산업체가 복수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방산업체 외에 신규업체가 지정될 경우 신규지정업체의 직접노무비 단가 및 감가상각비 단가 등 구체적 원가계산 기준은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1488('07.7.30)

- 질의한 원자재 관리 관련 비용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17조에 의거 원가의 발생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원가는 이를 제조직접비로 2종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경우에는 제조간접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업체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 관한규칙 제4조 및 시행세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신규지정업체의 원가계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지정업체의 제조시설, 생산가능여부, 과거생산실적, 회계자료 및 기타획득가능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신규지정업체의 실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사례를 대상으로 질의하시기 바람.

제비율 자료 미제출 업체의 제비율 적용 방안

질 의 : 방위사업청 항공기원가팀-2508('07.8.24)

- '07년도 ○○○원가산정 시 업체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04년도 및 '05년도 방산물자 납품실적이 없어, '06년에 제비율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의 '07년 제비율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임.

갑설 : '07년 적용 제비율 자료 미제출로 전 방산업체의 제비율 중 가장 낮은율 적용

을설 : '07년 적용 제비율 산정 기준년도('04, '05년)에 방산물자 납품실적이 없어 제비율 산정 불가로 유사한 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의 평균 제비율 적용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1776('07.8.31)

- 이윤산정기준및제비율적용지침 제5조(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산업체의 제비율 적용)와 제6조(신규업체의 제비율 적용)의 적용 대상 여부는 제비율 산정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이윤산정기준및제비율적용지침 제5조 및 제6조의 제비율 산정년도('06년)에 과거 1년간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한 실적치나 유사물자를 생산한 실적 없이 제비율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는 신규업체에 해당하므로 이윤산정기준및제비율적용지침 제6조(신규업체의 제비율 적용)를 적용하여야 함.

복수 방산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질 의 : 방위사업청 합정원가팀-2941('07.10.8)

- 복수의 방산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비협조 또는 계약수행 능력 부족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동 업체에 대한 원가계산을 실시하지 않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원가계산 결과만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

- 복수 방산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대하여 국방부 원가 24533-132('86.10.14) 회계질의 회신(복수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방산업체 지정이 변경된 경우 제비율 적용)에 의하여 기 회신되었으며, 질의한 원가자료 미제출 및 계약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는 입찰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질의 대상이 아님.

직접노무비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방위사업청 합정원가팀-3015('07.10.12)

- 사업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 있는 방산수의계약(확정계약) 건의 원가계산에서 2년차('08년) 직접노무비 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임.

답설 : 최근 수년간 해당업체 및 제조업 분야 임금인상을 실적 추세 고려시 다음연도(2년차)에 임금변동(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변동 노무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 사업년도가 2개년에 걸친 방산수의계약(확정)에서 변동 노무단가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체결 다음연도(2년차)에 변동 노무단가 적용 곤란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2120('07.10.22)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동 시행세칙 제20조 제5항에서 노임단가는 원가계산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방산물자의 계약이행기간중에 노무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노무비단가를 가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계산담당 공무원은 확정계약시점의 선 생산에 따른 실제적인 생산기간의 변동 추정, 예상노무비 단가의 변동가능성, 계약의 특성 및 납기,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수체감율 적용 문제 등 원가산정상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변동노무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임.

관급보험료의 직접경비 인정여부

질 의 : 방위사업청 함정원가팀-3046('07.10.15)

- 함(정) 건조 원가산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을 위해 관급장비조립보험료의 직접경비 인정여부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2181('07.10.29)

- 보험료는 2종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7조(경비) 제3항에서 간접경비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관급보험료의 경우 당해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직접부과가 가능한 경우에는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2조(직접경비)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접경비로 처리 가능함.

파견비의 직접경비 인정여부

질 의 : 방위사업청 함정원가팀-3644('10.12.7)

- 국내 독자개발 예정인 ○○○함의 기본설계 용역원가 산정시 파견비의 직접경비 인정가능 여부

답설 : 파견비는 업체소재지가 아닌 부산에서 용역 수행 시 업체가 설계 인력들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이며,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직접경비로 반영하여 원가계산이 가능함.

을설 : 파견비는 업체소재지가 아닌 부산에서 용역수행 시 업체가 설계 인력들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이며,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파견비의 성격상 설계용역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비 성격으로 간접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2536('07.12.11)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6조(원가구성요소)에서 원가의 발생이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원가는 직접비로, 2종이상의 제품에 배부하여야 하는 원가는 이를 간접비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직접추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비로 처리 가능함. 다만, 직·간접 구분을 위하여 발생비용의 특성, 당해 용역과의 관련성 및 직접추적 가능성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원가계산담당 공무원이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6조, 제29조, 제31조 및 동 시행세칙 제39조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수입물품의 환율적용 시점

질 의 : 방위사업청 특수무기원가팀-2462('08.8.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환율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답설 : 수입통관시점 환율 적용

을설 : 생산납품공정계획표상의 입고시점과 실제 통관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낮은시점 환율 적용

병설 : 생산납품공정계획표상의 입고예정일 환율 적용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1812('08.8.13)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기간요건(계약체결일부터 90일 경과) 및 조정율 요건(품목조정율이 3/100 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시점(조정기준일)에서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적용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를 말함.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품목조정율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 당시가격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 위 질의와 관련하여 재무부 회제2210-519('89.5.27)와 재무부 회계41301-2342 ('97.8.20)를 참조하시기 바람.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정산원가시 이윤적용 기준

질 의 :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3606('08.8.13)

- 특정비목불확정계약(외주정비)의 정산원가 산정시 계약위험보상액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 갑설 : 계약체결시점에서 판단한 보상을 적용
- 을설 : 정산시점에서 판단한 보상을 적용
- 병설 : 개산계약시 확정부문+정산부문 비중에 따른 전체 보상을 산정하고, 정산부문은 최종보상율을 감안하여 최종원가에 최종보상율을 적용한 금액수준으로 환산한 보상을 적용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1863('09.8.20)

- 개산계약의 정산원가계산시 제비율 및 이윤적용기준은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8조 ②항부터 ④항에 명기되어 있음.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8조 ②항은 일반개산계약의 정산시, ③항은 중도확정계약시, ④항은 “특정비목불확정계약에 있어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해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때에 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윤산정항목인 계약위험보상액은 계약시점의 보상율을 적용하여야 함.

복수지정업체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질 의 : 방위사업청 물자원가팀-2978('08.8.18)

- 한 품목의 방산물자에 대해서 복수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A(20년간 실적업체), B(신규 방산지정업체) 두 업체중 A업체가 현재 부정당업자제재중에 있어 신규 방산지정업체인 B업체 원가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게 타당한지

답설 : 한 품목의 방산물자를 복수업체로 지정된 경우 각 업체별 원가계산을 하여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게 합리적이며 또한, 원가대상품목에 대한 재화적 가치 및 원가통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록 실적업체가 부정당업자제재중이라 하더라도 현재 수의협상 대상인 신규 방산업체만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것보다 두 업체의 원가를 산정하여 낮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 예산집행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봄.

을설 : 방산품목인 경우 수의협상 대상업체의 원가를 대상으로 원가를 산정하여 예가를 결정해야 하나 현재 부정당업자제재중인 업체의 원가를 포함하여 예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1941('08.8.28)

- 원가담당자는 방산원가시행세칙 제3조(원가자료의 수집분석)에 따라 가능한 모든 최근 가격정보 및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야 함.
- 한 품목의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복수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업체별로 원가계산을 하여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방산업체 지주회사 분할시 공통원가 및 제비율 산정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59('09.1.29)

- 방산업체 ○○○(주)가 '08.7.1 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각 사업장의 조직, 인원 및 생산제품의 변동은 없으나, 방산원가산정을 위한 실적자료가 분할 전·후로 구분되어 집계되고 있음. 따라서 분할 전·후의 재무제표를 합산한 '08년 연간 실적자료를 측정하여 방산 공통원가 및 제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391('09.2.20)

- 방산 공통원가 및 제비율 산정 · 적용 절차의 기본적인 논리는 과거의 원가구조로부터 장래의 원가구조를 유추하는 것임.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하여 각 사업장의 조직, 인원 및 생산제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법인만 분할되었다면 원가구조의 변동이 없음.

따라서 방산원가는 공장별로 실적자료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장별 공통원가 및 제비율은 분할 전·후의 실적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일반관리비는 회사별로 집계되므로 분할 전의 일반관리비를 분할 후의 회사별 일반관리비 발생구조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배분하고 분할 후 회사별 일반관리비와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공장통합에 따른 중도확정계약 정산원가의 제비율 적용

질 의 : 방위사업청 특수무기원가팀-420('09.2.10)

- A, B, C, D 4개 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08.1.1부로 A공장과 B공장이 통합되고, '08.8.16 정산시점이 도래함으로써 정산시 A와 B공장은 통합에 따른 통합제비율과 각 공장별제비율이 2개 존재하여 공장통합 후 생산물량은 통합제비율을 적용하면 되나, 공장통합 전 A와 B공장의 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446('09.2.27)

- 간접비는 특정제품에 대하여 직접추적이 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방산원가규칙에서는 과거 2년 이상의 원가자료에 근거하여 직접비에 대한 간접비의 비율(제비율)을 산정하여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산원가규칙 제28조 제3항의 중도확정계약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해 계약의 중도확정시기에 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은 정산기준일에 통보되어 시행하고 있는 최근 제비율을 의미하고, '08년 4월 공장이 통합됨에 따라 과거 공장별 발생비용 및 제비율 산정규정에 근거하여 통합제비율이 산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중도확정계약의 원가정산시에는 정산기준일에 통보되어 있는 최근 통합제비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특정비목불확정계약 품목의 정산원가 산정

질 의 : 방위사업청 합정원가팀-556('09.3.2)

- 함 건조는 한도액이 설정된 직접재료비 특정비목불확정 계약을 체결한 품목으로 정산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비목만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와 연관된 비목(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을 함께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설 : 계약서상에 명시된 직접재료비를 대상으로 정산을 하며 이에 연관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을설 : 계약서상에 정산대상 비목으로 직접재료비가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원가는 직접재료비 및 이와 연동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산시에는 직접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569('09.3.16)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4조(일반관리비의 계산)에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재료비는 제조원가 구성항목에 해당하여 불확정 비목(직접재료비)이 정산되어 조정됨에 따라 제조원가가 연동되어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규칙 제24조에 의한 일반관리비 계산시 적용될 제조원가는 정산 후 금액임.
- 계약서상 정산대상 비목으로 직접재료비가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원가는 직접재료비 및 이와 연동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산시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제비율은 당해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민군겸용 기술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원가반영 여부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391('09.5.26)

- 방산원가 산정시 민군겸용 기술개발과제로 개발된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체투자 연구개발비 및 민군겸용기술협약서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의 방산원가 적용대상에 관하여
- 민군겸용 기술개발과제로 개발된 ○○○는 군수용 △△△사업에만 사용되며, ○차사업 이후에는 물량 및 민수사업 전망도 없으므로 ○○○(주)에서 투자한 연구개발비가 방산원가 규정의 연구개발비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 협약서상 제품 등의 매출액 발생시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한 협약에 따라 ○○○매출과 관련하여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납부를 결정한 기술료를 방산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1178('09.6.2)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시행세칙 제26조, 제20조의2 에서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개발비 및 기술료를 방산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군겸용기술 개발비 및 기술료가 당해 방산물자 생산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자체투자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는 방산원가에 반영 가능함.
- 다만, 민군겸용기술개발의 경우 민수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개발비 및 기술료의 방산원가 반영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서,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감면취지 및 실태, 육군·업체간 비용산출 방식/기준 검토회의 결과, 당해 계약특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민수와 방산에 배부되어야 할 것임.
- 위 조건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에 따라 방산으로 배부된 개발비 및 기술료는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시행세칙 제26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적의처리 하시기 바람.

과거 무형자산 등재 후 손실처리한 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배부방법

질 의1 : 방위사업청 항공기원가팀-1817('09.6.8)

- 기술료를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시행세칙 제26조에 따른 개발비로 원가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설 : 기업회계에서 개발비로 처리하므로 개발비로 반영

을설 : 기술개발 성패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매출액 발생을 요건으로 하므로 면허료로서 시행세칙 제20조의2의 제2호의 적용을 받음.

회 신1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1281('09.6.18)

- 방산원가세칙 제26조에서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개발비) 개념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군겸용 기술개발 협약서상 매출액 발생시 상환이 약정된 보조금(기술료)이 기업회계기준 및 금감원 2002-046(회제일8360-00187)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회신에 따라 개발비로 회계처리 된 경우 방산원가 반영시 개발비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다만, 협약서상 개발실패시 상환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비 중 상환이 약정된 보조금(기술료)에 대한 방산이윤은 기술료에 해당하는 이윤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질 의2 : 방위사업청 항공기원가팀-1817('09.6.8)

- 당기중 과거 자산의 환원처리를 한다면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설 : 자산 증감에 대한 회계결산을 거쳐야 무형자산 인정

을설 : 과거 무형자산 처리하였으므로 환원 즉시 무형자산으로 인정

회 신2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1281('09.6.18)

- 기업회계기준은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을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 환입으로 처리 하도록 하고 있음.

과거 비용발생시 무형자산으로 결산처리를 하였고, 회계결산은 다음연도 3월말에 확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감액된 무형자산은 회수가능가액을 판단하여 회계기간 중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감액손실환입 회계처리된 경우 결산서가 확정되지 않아도 무형자산으로 인정 가능할 것임.

질 의3 : 방위사업청 항공기원가팀-1817('09.6.8)

- 개발비는 계획물량에 따른 물량상각을 하려하는데, '05년부터 '08년까지를 상각물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설 : '05년 양산 개시 시점에서 자산 환원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업체 귀책사항이고, 개발이후의 모든 생산물량에 기여하는 기술이므로 과거물량을 포함하여 배부하여 원가 배제

을설 : 기술료 면제사항으로 판단하다가 '09년 납부를 요청받았고 '09년부터 자산 처리되므로 '09년 이후 물량으로 배부

회 신3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1281('09.6.18)

- 방산원가세칙 제26조 제4항에서 개발비는 생산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 생산물량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이 개시된 '05년 양산시부터 5년간의 총생산물량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임.

무형자산 환입 미처리 및 기술료 미납부 등으로 '05년 ~'08년 미 반영된 개발비 상각액이 '09년 이후 물량에 배부될 경우 원가왜곡을 초래하므로 '09년 원가산정시 과거 미반영 원가는 배제되어야 할 것임.

중도확정계약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조정 환율적용 기준

질 의 : 방위사업청 항공기원가팀-2696('09.8.28)

- 중도확정 정산계약 후 국가계약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

런 수입물품 환율 변동에 따른 등락률 산정시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 가격의 적용환율은

갑설 : 경과기간 요건은 중도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약체결당시 가격 산정시 적용환율은 정산원가에 적용된 6근무일 최저환율을 적용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조정기준일의 해당일 환율을 적용해야 함.

을설 : 경과기간 요건은 중도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약체결당시 가격 산정시 적용환율은 중도확정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조정기준일의 해당일 환율을 적용해야 함.

병설 : 경과기간 요건은 중도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약체결당시 가격 산정시 적용환율은 정산원가에 적용된 6근무일 최저환율을 적용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계약체결당시가격 산정시 적용한 방법과 동일한 조정기준일 전후 6근무일의 최저환율을 적용해야 함.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1894('09.9.11)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될 때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조정률 산정을 위한 등락률은 입찰당시가격(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등락률은 물가변동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계약체결일 당시 및 물가변동기준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적용하여 등락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중도확정 정산계약 후 국가계약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수입물품 환율변동에 따른 등락률 산정시 계약체결당시 가격은 중도확정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물가변동당시 가격은 조정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착수금 미사용액 반환시 약정이자 상당액 징수에 대한 질의

질 의 : 해군 군수사령부 계약과-5480('09.10.20)

-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세칙」 제8조(반환) 2항에서는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약정이자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3개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3개 조항 이외에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약정 이자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2301('09.11.3)

-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제11조 제1항은 착수금 및 중도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 경우에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지급세칙」 제8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약정 이자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동 지급세칙」 제8조 제2항 각 호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는 관련 증거 서류를 기준으로 「동 지급세칙」 제8조 제2항에 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및 환율적용 기준

질 의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2280('09.10.30)

- 질의1
수입물품의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시 판례의 내용을 적용하여 통관시점 환율이 아닌 실결제 환율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이행, 미이행) 판단 기준은

갑설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을 동시에 충족하는 수입통관일을 조정기준일로 하고,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단,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시 수입통관일 이전 결제분에 대하여는 실결제 환율을 적용하고, 미결제분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함.

을설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을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 결제일을 조정기준일로 하고,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입물품대금의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질의2

질의 1의 갑설 적용시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은 중도확정일로부터 90일 경과 후에 통관되었으나, 중도확정일 전에 해외공급업체에 선금 및 중도금으로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를 결제한 경우 중도확정일 전에 해외공급업체에 결제한 수입물품의 계약금액조정 해당 여부는?

갑설 : 중도확정일 전에 해외공급업체에 결제한 수입물품대금의 일부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통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을설 : 『수입물품의 변동 전 가격은 계약체결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며, 변동 후 가격은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회계 41301-2342, 회계 41301-3581)』는 것은 수입물품의 결제시점과는 상관없이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과 이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통관일전에 해외업체에 결제한 수입물품대금도 미이행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시 포함해야 함.

선금공제의 취지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조정금액에서 공제하는 것(회계 41301-2501)』이므로 미통관된 수입물품대금 전체를 계약금액 조정대상으로 포함한 후 선금공제를 하면 되는 것임.

○ 질의3

질의 1의 갑설과 질의 2의 을설을 적용할 경우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

당시가격 산정에 적용할 환율 기준은?

(환율적용 질의내용 요약)

구 분	수입물품대금 결제 여부	적용환율("예시" : 원)		비 고
		입찰당시가격	물가변동가격	
갑설 (판례적용)	중도확정일전 결제	실결제(1000)	실결제(1000)	실결제 환율로 계약금액조정 에 따라 이득 미발생
	중도확정일후 결제	중도확정일(1100)	실결제(1200)	
	미결제	중도확정일(1100)	수입통관일(1300)	
을설	중도확정일전 결제	실결제(1000)	수입통관일(1300)	중도확정일전 결제분은계약 금액조정으로 이득 발생
	중도확정일후 결제	중도확정일(1100)		
	미결제	중도확정일(1100)		

갑설 : 중도확정일과 수입통관일 전에 해외공급업체에 지급한 수입물품 대금은 판례에 따라 실결제 환율을 적용하여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고, 미결제된 수입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중도확정일의 환율과 통관시점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입찰당시가격 및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해야 함.

중도확정일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조정기준일인 수입통관일 사이에 해외공급업체에 결제한 수입물품대금의 입찰당시가격은 중도확정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물가변동당시 가격은 실결제 환율을 적용함.

을설 : 중도확정일 전에 해외공급업체에 결제한 수입물품대금은 중도정산시 확정분으로서 실결제 환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입찰당시가격도 실결제 환율을 적용해야 하고, 미결제된 수입물품대금은 중도정산시 추정분으로서 중도확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입찰당시가격도 중도확정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며, 물가변동당시

가격 산정은 모두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함.

입찰당시가격의 실결제 환율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의 통관시점 환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선금공제를 통하여 조정됨.

○ 질의4

질의 1의 갑설과 질의 3의 갑설을 적용할 경우 선금공제방법은?

갑설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은 총계약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모든 선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정금액에서 선금을 공제해야 함.

※ 선금급률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한 모든 선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회계 41301-2501, 98.10.14)

을설 :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공제하기 위함(회계41301-2501, 97.9.8)』으로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시 수입통관 전에 해외 공급업체에 지급한 실결제 환율을 반영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금사용에 따라 이득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선금을 공제하지 않아야 함.

회 신 : 기획재정부-1881('09.11.12)

- 수입물품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통관일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판례의 내용과 같이 대금지급조건(결제일)이 확정되어 환차익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를 대상으로 산출됨. 또한 동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의하면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서 정한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당해 산식에서 선금급율은 조정

기준일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모든 선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다만 방위사업법에 의한 중도확정계약이나 착수금·중도금과 관련된 사항은 동법의 소관부처인 귀 기관에서 중도확정계약이나 취지나 특성, 착수금·중도금의 지급조건 및 정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도급장비의 비순환비용 상각방법

질 의 : 방위사업청 함정원가팀-3714('09.12.15)

- ○○함에 탑재되는 주요 도급장비인 감속기어와 가변추진기 NRC비용(비순환주기 비용) 상각방법(일괄 또는 분할)에 대한 질의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2753('09.12.24)

- NRC비용 중 기술도입비는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시행세칙 제20조 제2호에 따라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부하여 계산하되 기술제휴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 하는 것임.

착·중도금 지급 관련 질의

질 의 : 방위사업청 함정계약팀-572('10.2.3)

- 기납된 부분의 착·중도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90%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착·중도금 추가 지급가능 여부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345('10.2.19)

-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이하 “규칙” 이라함) 제5조제4항

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한도액은 계약금액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이미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경우에도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 총액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특별한 사유로 지급한도액 90%를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음. 따라서 사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에 추가로 착·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수입품 국산화 개발에 따른 수입가격 인정여부

질 의 : 방진회 진흥 101-213('10.3.10)

-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방산물자원가계산에관한세칙 제19조의 2(국산화시 수입가격 인정 등)에 의해 원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답설 : 부품제조를 개발업체에서 직접제작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하여 외주제작 하였으므로 국산화로 인정할 수 없으며,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관계 법규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인정 등)에서 “외국에서 수입하던~원가를 산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적용하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제기함.

을설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시행세칙 제19조의2(국산화시 수입가격인정 등)에서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인정의 의미는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제27조(국산화 인증심사)에서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인증조건에 부품제작 시 외주제작 하여도 자체 설계 및 전체 공정도작성 등이 개발 주관업체에서 수행되면 국산화인정이 부여됨으로 외주업체를 통한 제작도 원가산정이 가능함.

회 신 :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345('10.2.19)

- 방산원가 계산 시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국산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외업체에 지급 할 금액의 일부를 국내개발업체에 지급하여 국산화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성격임. 외국에서 수입 하던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국산화 여부는 개발관리기관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으로 판단)한 경우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및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시행세칙 제19조의2 (국산화시 수입가격의 인정 등)에 따라 수입가격 인정이 가능 할 것임.

방산 계약·원가 회계질의 사례집

(2010년 7월 15일 발행)

- 발 행 인 : 류 우 식
- 편 집 인 : 김 병 환
- 작 성 자 : 김 정 환, 송 기 대, 허 명 령
- 발 행 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부
- 인 쇄 처 : 대한인쇄기획(T. 754-0765)

- ▶ 이 책자의 무단전제 및 복제행위를 금합니다.
- ▶ 본 책자 내용 중 오류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부(T.3270-6030/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